



이론에서 실무까지 알기 쉽게 풀이한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

물품구매계약



- 해당 교재(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는 조달전문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재배포, 2차 변형, 상업적 이용 등)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 또한, 이 책자를 저작권자[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허가 없이 불법복제·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교육 등의 이용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위반 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울러, 해당 책자는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조달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상기 책자가 민원 및 소송 등의 자료로는 활용될 수 없고, 교육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 / 간 / 사

공공 조달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 주체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국내 공공조달의 총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서 GDP의 10% 수준에 달하고, '24년 기준 관련 공공기관 수는 약 7만개, 조달 기업 수는 약 60만개를 넘어서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구매력과 시장 참여자의 확대는 공공조달과 관련한 법, 제도,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공공조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과 깊이있는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공공조달의 기본개념과 원칙, 법적 제도적 기반 및 실무 적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를 2020년에 출간하였으며, 이번에 4차 개정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공공조달의 혁신적인 변화에 발맞춰 최신 법령과 제도 사항을 반영하고 실무적 활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 이번 개정 본은 총 5편 5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5년에 새롭게 선보이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활용 안내와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및 단가계약 실무매뉴얼, 혁신시제품 및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본 개정본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피드백과 제언을 반영하여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힘써주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기본서가 대한민국 조달제도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2월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전 연 수

물품구매계약

1. 물품구매계약 일반	1
2. 물품목록정보 및 종합쇼핑몰 활용	45
3. 예정가격작성 실무	69
4. 물품구매계약 공고서 작성	101
5. 물품구매계약 적격심사	133
6. 유권해석과 감사사례	167
7. 검사·검수 대금지급	209
8. 계약일반(계약체결·관리·보증금)	233

1

물품구매계약 일반

| 담당교수 | 박수천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공공조달역량개발원

INFORMATION

1. 정부계약의 개요	5
2. 구매계약 입찰·낙찰제도	11
3. 입찰집행 절차	31
4. 계약체결, 이행 및 관리	39

1. 정부계약의 개요

□ 정부계약의 의미(意義)(일반적인 계약의 의미)

- ①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유언, 권리의 포기) 및 합동행위(사원총회의 결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 ② 복수당사자가 제시하는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로
- ③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질권설정행위, 지상권 설정행위), **채권계약**,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함
- ④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됨
⇒ 정부계약은 정부가 사인(私人)의 지위(사경제주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며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용역·공사계약 등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

□ 정부계약의 법적 성질(性質)

- ①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 ② **국가가 사인의 지위**(사경제 주체)에서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
- ③ 매매, 임차, 도급 등 민법상 각각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전형계약**(유명계약)
- ④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給付)를 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자신도 그 대가로서 교환적으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쌍무계약**

□ 정부계약의 적용원칙

(정부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법상 계약원칙 적용)

- ①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한다는 원칙
- ②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 원칙
- ③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체결 당시의 사회사정이 계약 체결 후 현저히 변경되면, 계약은 그 구속력을 잃는다는 원칙
- ④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신의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권리가 남용되면 이에 대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

(정부기관의 특성상 지켜야 할 원칙)



□ 정부계약의 특징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절차를 중시

민간	과정보다 결과 를 중시
공공	결과보다 과정 을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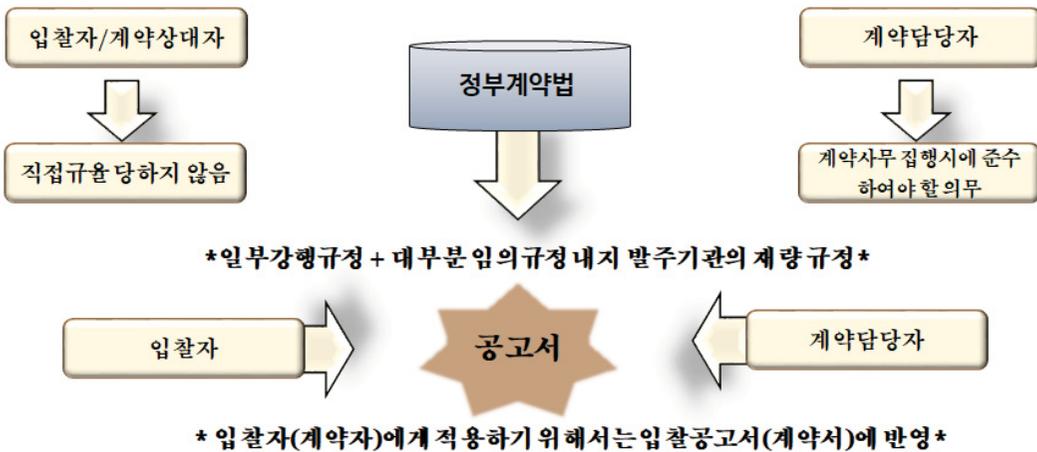
- 경제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운영

□ 정부(물품) 계약을 규율하는 법령

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하 법, 영, 규칙이라 함)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하 지방법, 지방령, 지방규칙이라 함)	행정안전부
특별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필요사항 규정 계약예규 :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체결기준(이하 지방기준) 등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기타 관련법령)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면허 등에 관한 법령

○ 정부계약 법규의 특성



< 정부계약 법규의 성격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1다 33604) >

- 국가계약법령이나 그 세부심사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

□ 국가계약법의 특징

① 정부계약에 관한 독립된 기본법

- 기본법인 국가계약법은 '95.1.5.예산회계법('06.12.31.폐기)에서 계약 편을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체계로 제정
- 우리나라가 '94.4.15.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97.1.1.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계약에 대한 별도의 법규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계약에 관한 독립된 기본법인 국가계약법을 제정

② WTO정부조달협정 내용의 반영

- 정부조달협정은 자국의 정부조달시장을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상대방 회원국에게 상호 개방하도록 하는 협정임
- 현재 정부조달협정에는 44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가계약법에 동 협정내용을 반영하였음

③ 국가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혼시적 성격의 법규

- 국가계약법은 대국민 기속력은 없으며, 회계기관 및 계약 공무원에 대한 혼시적 성격으로서 동법에 위반하더라도 원인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인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등에 반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게 됨

④ 절차 법규적 성격

- 국가계약법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보다는 대부분 절차(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등)를 규정한 것으로 절차법적인 성격이 강함

⑤ 국가계약법의 하위규정 다수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조달 특례규정, 특례규칙
- 물품구매 관련 계약예규 및 고시, 통첩(기획재정부 소관)

□ 지방계약법의 특징

⇒ 지방자치단체계약에 관한 독립된 기본법으로서 국가계약법의 특징과 함께 아래의 특징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기본법인 지방계약법은 '05.06.3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06.01.01.부터 시행
-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 마련⇒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

<지방계약법의 주요특징>

① 수의계약절차의 투명화(지방법 제9조)

-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

②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의 도입(지방법 제16조)

-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기존 공사감독 공무원 외에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그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 등

③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개산계약제도(지방법 제27조제2항)

- 시간적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반영

④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지방법 제32조)

-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체결방법, 입찰참가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지방법 제3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 밖에 이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

※ **참고**(용어정리)

○ **추정가격**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 미포함

○ **고시금액**

- 국제입찰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공사·용역계약은 국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함
- 지역제한·실적제한·중소기업제한경쟁 등의 기준금액

○ **기초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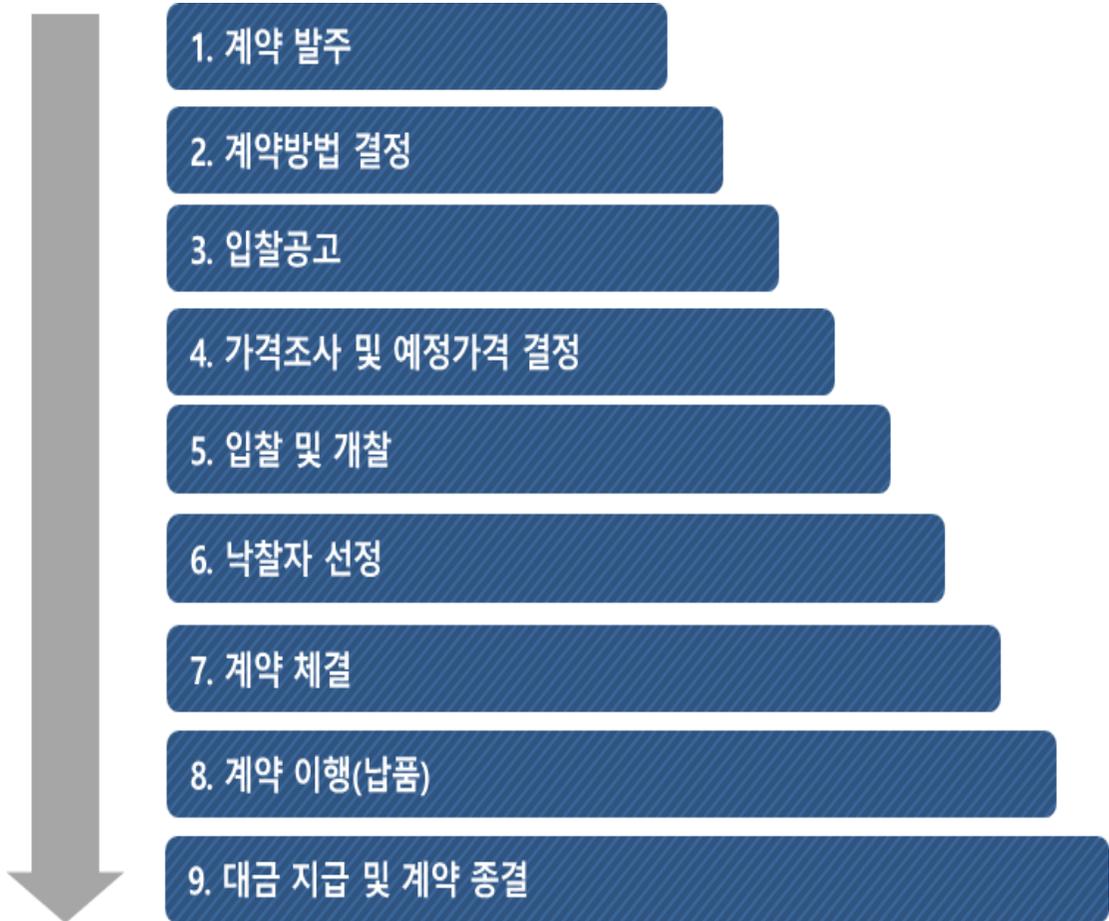
- 예정가격을 위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금액. 입찰일 3~5일 전에 공개
- 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 금액 미포함

○ **예정가격**

- 입찰 또는 수의계약 전에 낙찰·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성,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 금액

2. 구매계약 입찰·낙찰제도

※ 물품·용역계약 흐름도



① 계약의 종류

가) 재정의 수입 또는 지출에 따른 분류

- 세입·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입찰 (영 제41조, 지방령 제41조)
 - ⇒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 국고·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 (영 제42조, 지방령 제42조)
 - ⇒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나) 계약체결의 형태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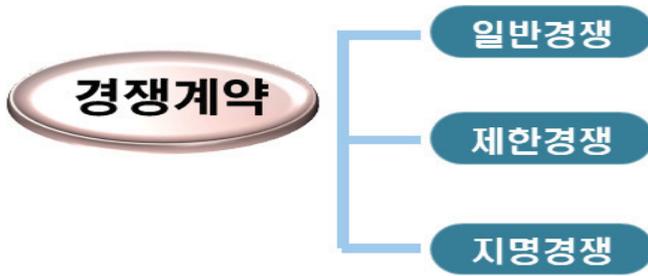
확정계약	개산계약	계약금액 확정 여부
총액계약	단가계약	계약 목적물의 전체 또는 단가
일반(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	계약기간의 장기 여부
단독계약	공동계약	계약대상자의 수에 따라

다)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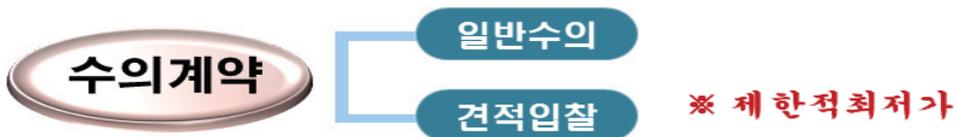
라) 계약체결의 방법에 따른 분류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체결의 방법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에 따라 경쟁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구분



< 경쟁계약시 낙찰자 결정방법 >

- **적격심사**
- **2단계 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경쟁적 대화**
- **종합낙찰제**
- **희망수량, 유사물품**



② 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계약

-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시방서,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법 제7조, 지방법 제9조)

장점

- 모든 입찰희망자에게 공평
- 시장경쟁 원리 - 염가구매 가능
- 집행절차가 공개적이고 공정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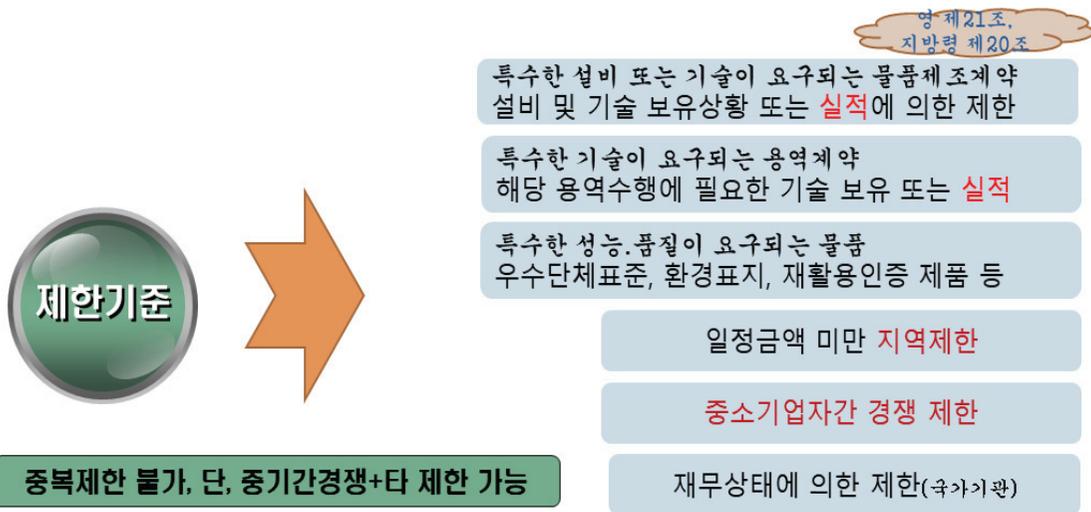
- 부실업자 참여로 인한 품질저하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험부담
- 과당 경쟁으로 인한 시간, 비용 과다 소요
- 행정절차가 복잡

○ 일반경쟁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영 제12조, 지방령 제13조)

- 다른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 조세포탈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자

□ 제한경쟁계약

- 일반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으로 제한경쟁을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확인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위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

◇ 제한경쟁계약 - 실적제한

-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
 - * 과거 1건의 물품제조 또는 용역 실적
 - ** 특정 명칭, 특정기관 등의 실적으로 제한 금지
-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 요구 가능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됨
 -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 2023년 현재 2.2억원(부가세 제외)

◇ 제한경쟁계약 - 중소기업 제한

- 물품 구매 및 용역계약시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

-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등
 -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 영 제21조 제1항 8호,
• 지방령 제20조 제8호

• 영 제21조 제1항 10호,
• 지방령 제20조 제12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외의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 공공기관의 장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 제한경쟁계약 - 지역제한

○ 일정한 지역 및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지역)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소재지)

- 금액(추정가격)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물품 (용역)	2억2천만원 미만	(광역시) 3억3천만원 미만 (세종시, 기초 시·군·구) 5억원 미만

- (인접 광역사도를 포함한 지역제한) 현장, 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이행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

○ 소액수의 안내공고시 지역제한 범위 (규칙 제33조)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 포함)·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가능

(지방) 다음 하나의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 제한 가능 (지방기준 제5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 불가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접 시·도 포함(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

□ 지명경쟁계약

- 신용과 실적 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한 후 입찰방식**에 의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방식

(영 제23~24조, 지방령 제22~23조)

<입찰 방법>

- 5인 이상의 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성립**
- 지명 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 ⇒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
- 지명경쟁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3조, 지방령 제23조)
 -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추정가격이 1억 원이하(부가가치세 제외)인 물품의 제조 계약
 -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 수의계약

- 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영 제26조 ~ 30조, 지방령 제25 ~ 31조)
 - (기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긴급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 1인 등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제품, 우수제품 등을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 국가 유공자, 장애인 단체 등과 계약하는 경우 등
- 수의계약 체결 가능한 구체적 사유

<특정 기술 등의 경우>

- 해당물품 제조·공급자가 직접 설치·조립, 정비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설비확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

- 성능인증 제품, 신제품(NEP), **조달우수제품 등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해당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 (인증기간 연장시 3년 연장 가능)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체 등과의 계약
 - * 대상자의 자격요건, 대상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재공고 입찰의 경우> (영 제27조, 지방령 제26조)

-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수의계약- 소액수의

○ 1억 원 이하 소액수의 방법

㉠ 2천만 원 이하 : 1인 견적 가능

* 필요한 경우 2천만 원 이하도 2인 이상 견적 가능

㉡ 2천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조합), 마을기업은 5천만원 까지 1인 가능

⇒ 안내공고문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이상 공고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계약대상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88%(단순노무용역 등은 90%) 이상
투찰자 중 가장 낮게 투찰한 자

낙찰하한율	구분	물품, 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청소경비등)	공사
	국가기관	88%	90%	87.745%
	자치단체	88%, (2천만원 이하 90%)		

※ 계약대상에서 배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지방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순위자가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1순위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약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① 최저가 낙찰제

- 단독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없음

② 희망 수량 경쟁 입찰

(영 제17조, 제46조, 지방령 제17조, 제47조)

③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

(영 제42조, 지방령 제42조)

④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영 제18조, 지방령 제18조)

⑤ 협상에 의한 계약

(영 제43조, 지방령 제43조)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영 제43조의 3, 지방령 제44조의 2)

⑦ 품질 등에 의한 낙찰(종합낙찰제)

(영 제44조, 지방령 제45조)

※ **제한적 최저가**(집행기준 제10조의2, 지방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아니지만 (소액)수의 견적입찰에서 적용하고 있음

□ 최저가격 낙찰제

-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 * 순수한 의미의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
- ② 희망수량 입찰, 2단계 경쟁 입찰 등 일부에 적용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영 제42조, 지방령 제42조)

-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납품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정부(공공)계약의 기본적 낙찰자 결정 방식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평가 요소	고시금액 미만 물품제조·구매	고시금액 이상 10억미만 물품제조, 고시금액이상 구매	추정가격 10억이상 제조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신인도 (+3~ -2) 결격사유 (-3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신인도 (+3~ -2) 결격사유 (-30)

심사결과 85점 이상 적격

□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영 제18조, 지방령 제18조)

○ 2단계 경쟁입찰

-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
- * 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2단계 경쟁입찰 방법 적용 불가

입찰공고 ⇒ 규격입찰서 제출 ⇒ 규격 평가 ⇒ 규격적격자 가격입찰 ⇒ 낙찰(최저가)

-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규격적격자 1인인 경우 재공고입찰

○ 규격가격 동시입찰

-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 * 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법 적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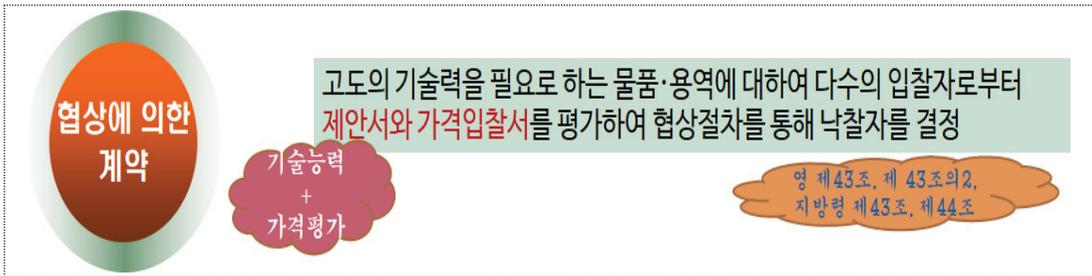
입찰공고 ⇒ 규격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규격 평가 ⇒ 규격적격자 가격개찰 ⇒ 낙찰(최저가)

- *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하여 예정가격 이내면 낙찰

- 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규격(기술)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규격(기술)평가도 동일할 경우 ⇒ 추천

□ 협상에 의한 계약 (영 제43조, 지방령 제4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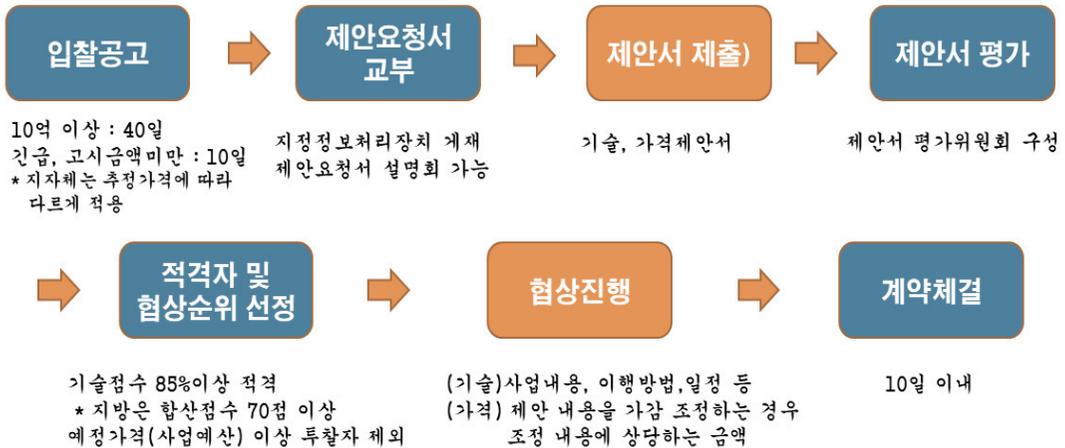
-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협상적격자를 선정 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 적용대상

-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기타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식기반 사업에 우선적용(엔지니어링 사업, 고난도·고기술의 건설기술용역, 정보통신, 디자인,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학술 등)
- * 지자체는 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적용 불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 협상순위

- 기술능력 평가점수 85%(지자체는 70점) 이상으로서 합산점수가 높은 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국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 지식능력 · 인력 · 조직 · 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 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 · 경영상태 · 상호협력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70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30	

※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 · 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방)

구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
	정성적 평가 분야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cdot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cdot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left[2 \times \left(\frac{\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 기술능력 평가방법

-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 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영 제43조의 3, 지방령 제44조의 2)

-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공고 ⇒ 기본제안서 접수 ⇒ 대화 ⇒ 최종제안서 + 가격 ⇒ 낙찰

○ **적용대상**

-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으로 다음의 경우
 - ㉠ 기술적 요구나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 ㉡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 ㉢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 구매
 - ㉣ 내용이 복잡 또는 난이도 등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경우

□ **희망수량 경쟁 입찰** (영 제17조, 제46조, 지방령 제17조, 제47조)

-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그 수요량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구매하는 방식**

○ **대 상**

-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 수인의 공급자와 분할 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기타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등

□ 기타 낙찰자 결정방법

○ 유사물품 복수입찰 (영 제25조, 지방령 제124조)

-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품질등에 의한 낙찰제 (영 제44조, 지방령 제45조)

-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 결정방법의 특례 - 다수공급자계약(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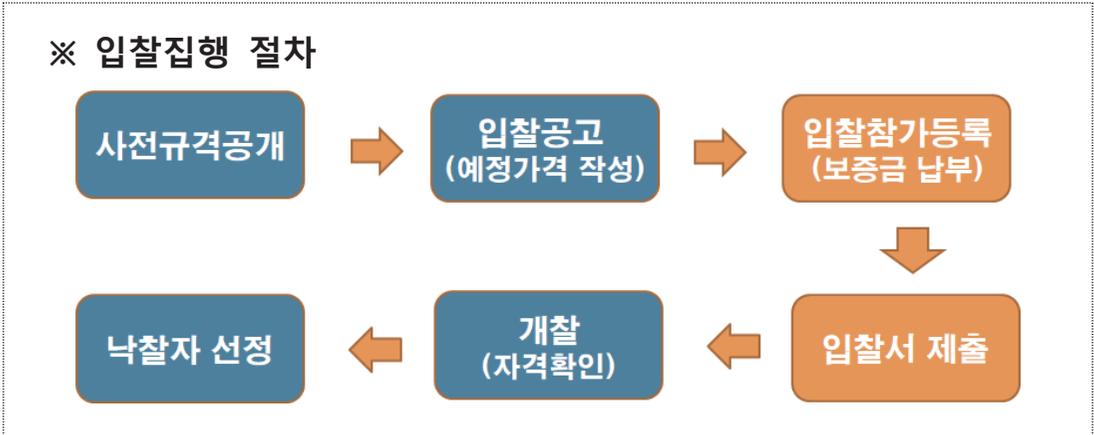
○ 다수공급자계약제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2)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제도로서
-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수요물자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

⇒ 국가(지방)계약법령이 아닌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거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

※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에 적합한 계약방식

3. 입찰집행 절차



① 사전규격공개

- 물품 및 용역을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 입찰공고 전에 규격서를 미리 공개 열람하도록 하는 제도

⇒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 제시를 통해

⇒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 유도

* 민원 차단 효과

○ 규격공개 방법

-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
 -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 가능
-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
-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 요청 가능

<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 생략가능 >

- ㉠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 (지자체)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로 해야 하는 물품 및 용역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② 입찰공고

입찰에 관한 정보 공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원칙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 5일) 까지 공고
- * 협상계약은 40일

○ 입찰공고 내용 (영 제36조, 지방령 제36조)

-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품명, 규격, 수량, 납기, 인도조건 등)
-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③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에 관한 사항**
- ④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⑤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
- ⑥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⑦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예정일 포함)
- ⑧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⑨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⑩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⑪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⑫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 ⑬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내용
- ⑮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⑯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입찰참가신청 (규칙 제40조, 지방규칙 제38조)

○ 입찰참가신청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
 -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 ㉢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
- ③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 신청증을 교부(우편입찰의 경우 생략 가능)

⇒ 아래 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로 입찰참가 신청 같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칙 15조, 지방규칙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음
- ②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

- ※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능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주로 입찰공고시)
 -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

4 입찰보증금

[영 제37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지방령 제37조, 지방기준(입찰유의서)]

-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납부[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조정 가능]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 입찰보증금 면제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⑥ 기타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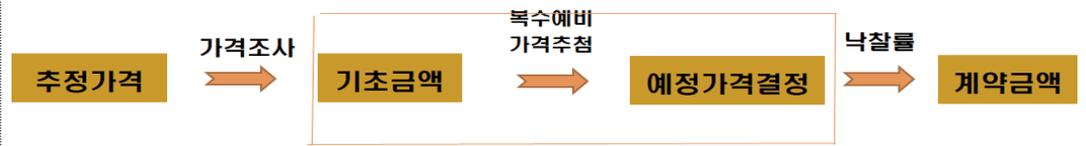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징수 검토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2호가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예정가격

○ 예정가격 정의

- ①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 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성, 계약 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 금액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절차 >



○ 예정가격 결정기준(규칙 및 지방규칙 제4조~제13조)

-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 거래실례가격을 기준
 -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②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
- ③ 적정한 거래가격이 없거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 ⇒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 기준

6] 입찰집행

○ 입찰집행 방법 (영 제40조, 지방령 제40조)

① 전자입찰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

*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② 직접입찰

- 입찰 장소에 직접 모여서 집행
-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
- ◇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무효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이 1인인 경우에는 경쟁 불성립

○ 입찰서 취소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불가.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능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 처리
-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 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
- 전자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자에 참가 불가, 전자 재입찰에는 참가 가능

○ 발주기관의 입찰취소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 취소 가능
- 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

○ **경쟁 입찰의 무효사유** (규칙 제44조, 지방규칙 제42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다음의 입찰참가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 답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리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등

7]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영 제40조, 규칙 제48조, 지방령 제40조, 지방규칙 제4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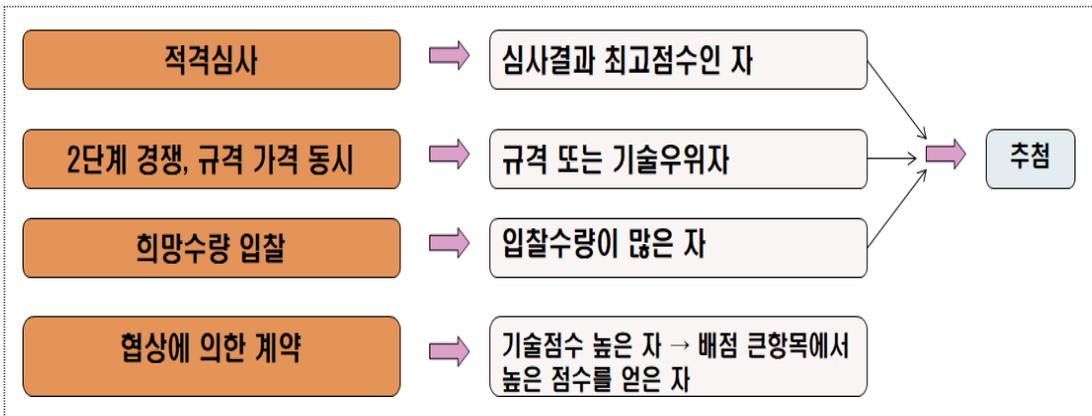
○ 낙찰 선언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 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

⇒ 적격심사, 협상계약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

○ (동일가격(점수) 입찰인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점수)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영 제47조, 지방령 제4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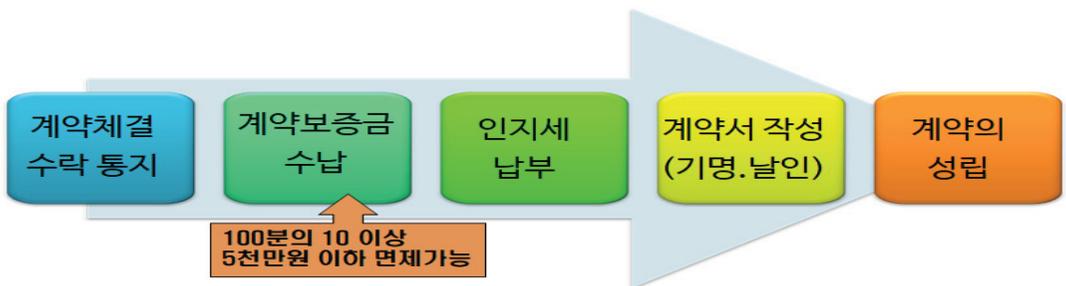
4. 계약체결, 이행 및 관리

□ 계약체결

(계약서 내용) (법 제11조, 지방법 제14조)

- ① 계약의 목적
- ② 계약금액
- ③ 이행 기간
- ④ 계약보증금
- ⑤ 위험부담
- ⑥ 지체상금
-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계약체결 절차]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경우)

- 계약금액이 3천만 원(지방 5천만 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49조, 지방령 제50조)

□ 선금 지급

- 계약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
- 적용범위
 - ① 공사, 물품제조, 용역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지급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지급비율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 내

<의무지급 - 14일 이내>

- ①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 ② 계약금액이 3억 원 10억 원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 ③ 계약금액이 3억 원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 원자재 급등,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경우 등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영 제64조, 규칙 제74조 지방령 제73조)

-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 체결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유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 조정방법
 - ① 품목조정을 의한 계약금액 조정
 - ② 지수조정을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조정요건
 - 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제도 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경과(조정기준일)된 때
 - ②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3/100이상 증감될 때

□ 대가지급 (영 제58~59조, 지방령 제67~68조)

- 납품대가는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
 - * (검사)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
 - * (검수) 물품출납공무원이 계약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확인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대가지급 지연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
-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가는 계약금액에서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지급액, 선금잔액,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등의 금액을 공제 후 지급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영 제74조, 규칙 제75조, 지방령 제69조, 지방규칙 제75조)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징수제도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 당해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
- (징수대상)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할 경우
- 징수비율
 - 물품의 제조, 구매 0.75/1000 (지방 0.8)
 - *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포함
 - 용역 1.25/1000 (지방 1.3)
- ※ 지체상금 상한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한도
- ※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지체는 면제 가능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영 제75조, 일반조건 제26조, 지방법 제30조의2, 지방령 제9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의 해제)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
- (계약의 해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일정시점부터 소멸시키는 조치
- 해제·해지 대상

<영 제75조>

-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고 계약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추가보증금 징수 후 유지 가능

<일반조건 제26조>

- ①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③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 ④ 장기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⑥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 ⑦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시에는** 계약보증금 귀속 또는 반환, 선금 반환, 대가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

□ 부정당업자 제재

(법 제27조, 영 제75조, 일반조건 제26조, 지방법 제30조의2, 지방령 제91조 등)

- 정부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②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③ 건설 산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하도급에 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자
 - ④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⑥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
 - ⑦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⑧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 참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시효기간** : 5년(② 및 ⑦의 경우는 7년)
-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법 제27조, 지방법 제31조의2)

2

물품목록정보 및
종합쇼핑몰 활용

| 담당교수 | 문 수 호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공공조달역량개발원

INFORMATION

1. 물품목록정보 개요	49
2. 물품목록정보(상품정보) 활용	57
3. 종합쇼핑몰 구매의사결정	64

※ 본 기본서 내용 중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및 조달정보개방포털의 내용은 2024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1. 물품목록정보 개요

1) 물품목록정보 개념

□ 물품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하고 전산화하여,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품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

⇒ (물품목록번호) 물품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식별하고, 식별된 품목에 고유의 번호를 부여한 것을 말함

≡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 관련규정 >

- 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물품목록법)
- ②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③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훈령)
- ④ 목록화지침(조달청훈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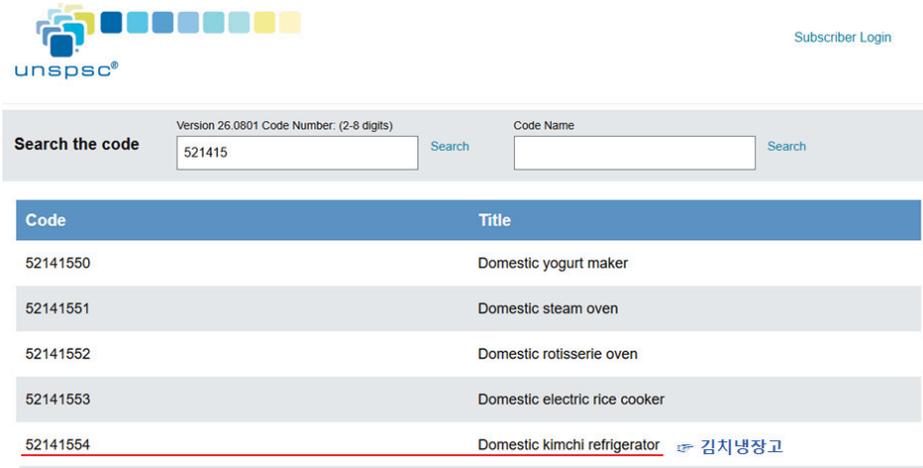
※ "상품"이라 함은 물품과 서비스를 포괄한 것을 말함
(「목록화지침」 제2조제9호)

□ 물품목록제도 주요 변천 과정



□ (참고) UNSPSC란?

-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 공개표준
-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분류체계
- UN 산하기구인 UNDP가 전자상거래를 위해 개발한 분류코드



unspsc® Subscriber Login

Version 26.0801 Code Number: (2-8 digits) Code Name

Search the code Search Search

Code	Title
52141550	Domestic yogurt maker
52141551	Domestic steam oven
52141552	Domestic rotisserie oven
52141553	Domestic electric rice cooker
52141554	Domestic kimchi refrigerator ⇒ 김치냉장고

2) 물품목록정보 활용



3) 물품목록번호 체계



- ▶ 물품분류번호 : 2자리씩 대(Segment), 중(Family), 소(Class), 세(Commodity) 4단계 계층구조
- ▶ 물품식별번호 : 품목에 대한 유일 고유번호(숫자 자체에는 의미가 없음)



□ 물품분류번호(품명)의 구조

- 물품을 기능·용도·성질에 따라 대·중·소·세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진 물품에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 버스의 품명 구조(예시)

구 분	대분류 (Segment)	중분류 (Family)	소분류 (Class)	세분류 (Commodity)
분류명(한글)	운송기기상용,군용, 개인용운송기구및 액세서리와부품	자동차	승용자동차	버스
분류명(영문)	Commercial and Military and Private Vehicles and their Accessories and Components	Motor Vehicles	Passenger Motor vehicles	Busses
분류번호	25	10	15	01

□ 세부품명 체계 (품명 8자리 + 2자리) : 예시

사례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사례 1	25101502	버스	2510150201	대형승합차
사례 2	30121714	맨홀박스	3012171401	콘크리트맨홀
			3012171402	플라스틱맨홀
			3012171403	철제맨홀
사례 3	40142197	폴리에틸렌관	401421970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014219702	수도용폴리에틸렌관
			4014219703	가스용폴리에틸렌관
			4014219704	가교화폴리에틸렌관

※ 세부품명 체계는 입찰참가자격 구분 등 물품 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9월 도입

□ 속성체계

- 물품에 대한 정보요소, 공통속성과 개별속성으로 구성



○ 공통속성정보(예시 : 품목검색 → '김치냉장고')

- 공통속성정보

	물품목록번호	52141554-25594507
	물품분류번호	52141554
	물품식별번호	25594507
	품명	김치냉장고
	세부품명번호	5214155401 (김치냉장고)
	세부품명영문명	Kimchi refrigerator
	단위	대
	내용연수	9
	상품원산지국가명	대한민국(KF)
	품목구분	일반용 품목
부품여부	N	
품목등록일	2024-11-07	

모델명	Z339MPSF11
품목명	김치냉장고, 엘지전자, Z339MPSF11, 스탠드형, 372L
제조업체명	엘지전자 주식회사
제품설명	

○ 개별속성정보(예시 : 품목검색 → '김치냉장고')

- 개별속성정보

속성명	속성값	측정단위
형태	스탠드형	
용량	372	L
무게	104	kg
외형크기(폭)	666	mm
외형크기(깊이)	737	mm
외형크기(높이)	1787	mm
월소비전력량	12.2	kWh/월
사용전압	220	V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속성명'은
세부품명별로
다르게 설정
되어 있음

☞ 품목등록 요청 시 입력하지 않은 속성값은 등록 후 검색 시 보이지 않음(속성명 포함)

□ 식별체계(8자리)

- 개별 물품을 구별하기 위한 것
- 동일 품목에 대하여는 하나의 고유 식별번호 부여(8자리)
 - ⇒ 모델이나 세부규격이 동일한 경우
 - ☞ **동일 식별번호 사용**
- 동일 품목에 대한 식별번호가 중복 부여된 경우
 - ⇒ **최초 부여된 번호 사용**
 - ⇒ 나중 부여된 번호 삭제

◇ 물품목록번호 부여 사례

물품분류번호(품명) 8자리 + 물품식별번호(품목) 8자리



물품목록번호 | 52141554-25594507 품명 |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엘지전자, Z339MPSF11, 스탠드형, 372L

모델명 : Z339MPSF11 / 제조업체명 : 엘지전자 주식회사

세부품명 : 김치냉장고 / 품목명 : 김치냉장고, 엘지전자, Z339MPSF11, 스탠드형, 372L

품목구분 : 일반용 품목 / 품목등록일자 : 2024.11.07

◇ 세부품명(10자리) 사례(예시 : 품명검색 → 세부품명 '냉장고')

물품분류번호	품명	영문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세부영문품명	관련품목
24131501	냉장냉동겸용장치	Combined refrigerator freezers	2413150101	냉장고	Combined refrigerator freezers	보기
24131503	대형냉장고	Walk in refrigerators	2413150301	대형냉장고	Walk in refrigerators	보기
25220116	객차용전기냉장고	Passenger car electric refrigerator	2522011601	객차용전기냉장고	Passenger car electric refrigerator	보기
41103011	실험실용일반냉장고 또는 냉동고	General purpose refrigerators or refrigerator freezers	4110301101	실험실용일반냉장고	General purpose refrigerators	보기
42199099	혈액,약품냉장고	Refrigerator for medicines and blood	4219909901	혈액,약품냉장고	Refrigerator for medicines and blood	보기
42261804	시신보관냉장고	Morgue cabinet refrigerators	4226180401	시신보관냉장고	Morgue cabinet refrigerators	보기
52141554	김치냉장고	Kimchi refrigerator	5214155401	김치냉장고	Kimchi refrigerator	보기

4) 목록화 원칙

- ▷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품명 부여
- ▷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의 특성 묘사·구별
- ▷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 부여 : 일물 일번호(一物 一番號)

□ 물품목록번호의 부여

-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 부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는 목록화에 의하여 부여된 통일된 품명 및 번호 사용

□ 목록화의 요청

- 대상 : 각 기관은 보유물품 중 목록화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나,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
- 요청 : 각 기관이 해당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목록화를 요청

□ 한글 품목명 부여 기준

- 표기방법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국가코드)모델명, 대표특성값]
- 주요 항목은 쉽표로 구분, 쉽표 다음은 한 칸 띄어쓰기

- 제조업체명을 기입할 때 (주), (합), (유) 등은 생략
예) 디지털카메라, 삼성전자, VLUU-EX1, 1000만화소
- 외산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국가코드)모델명, 대표특성값]
예) 디지털카메라, 삼성전자, (CN)VLUU-EX1, 1000만화소
- 부품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부품)부품명, 대표특성값]
예) 디지털카메라, 삼성전자, VLVF-3, (부품)뷰파인더
- 주문자상표부착 : [세부품명, (주문자상표부착)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특성값]
예) 디지털카메라, (주문자상표부착)삼성전자, VLUU-EX1, 1000만화소

□ 물품식별번호 부여 대상 및 기준

○ 생산된 제품에 부여(원칙)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에 해당 세부품명이 제조업체로 확인된 경우 등록

○ 주문생산품 : 물품목록정보 필요 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록(예외)

□ 품목명에 표기하는 제조업체명 적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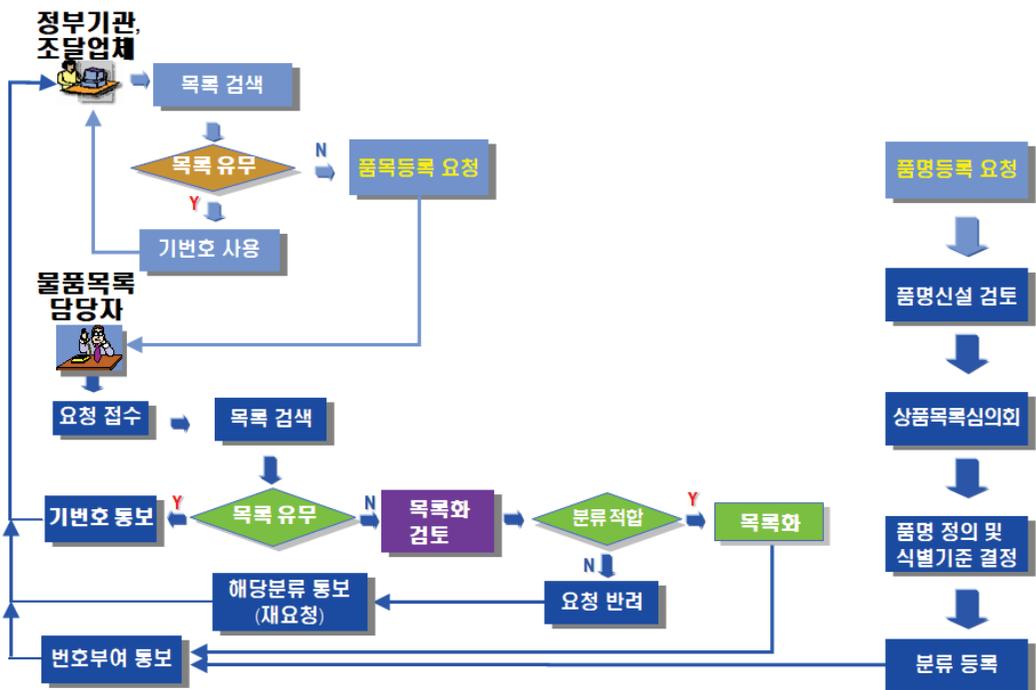
○ 주문자상표 부착생산 제품 : 상표권 업체(2017. 7. 1.부터)

○ 악기, 방송통신기기 제품 : 기기인증서, 사업자등록, 카탈로그 등

○ 화초류 등 식물류 : 농지원부 및 공급확약서

○ 정부조달문화상품 : 관련 협회의 직접생산확인서 등

□ 물품목록번호 부여 절차



※ (행정소요일수) 품목 등록 : 8일, 품명 등록 : 24일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보완요청 후 재접수 시 소요일수는 새로 기산

2. 물품목록정보(상품정보) 활용

1) 발주 관련 활용

□ 조달 발주 또는 자체 발주 구분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달청 구매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수요물자(총액) - 종합쇼핑몰 품목(단가)	종합쇼핑몰 품목 (단가)	중소기업자간경쟁 제품을 고시금액 이상 구매할 때
자체 발주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수요물자(총액)	금액제한 없음	상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외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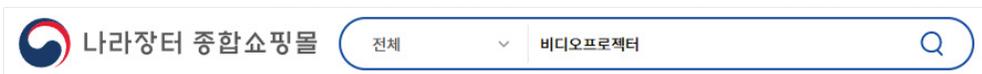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 전에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인지 파악한다.

□ 비디오프로젝터를 구매한다고 할 경우(예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서 검색



▷ 비디오프로젝터 401개 상품 검색(2025. 22. 7.기준) ⇒ 조달청 구매에 해당

검색결과 401건 상품비교 판매량순 **낮은가격순** 평점순 최신등록순 납품사레알순 10 적용 ☰

비디오프로젝터(4511161601) 🏢 주식회사 다해씨엔씨 중소기업 공급

비디오프로젝터, Eiki, (CN)ES-LL33X, 3600ANSI lm

식별번호 24178536

우선(의무)구매대상 해당 없음 납품사레 (0)

원산지 중국 계약종료일 2026.11.30 납품기한 30일 (납품요구일로부터)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공급가능지역 전지역

★ 0 (0)

825,000원

다수공급자계약 - 0 + 대

비디오프로젝터(4511161601) 🏢 주식회사 트라엠 중소기업 공급

비디오프로젝터, Epson, (PH)EB-972, 4100ANSI lm

식별번호 24301851

우선(의무)구매대상 해당 없음 납품사레 (0)

원산지 필리핀 계약종료일 2026.11.30 납품기한 30일 (납품요구일로부터)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공급가능지역 전지역

★ 0 (0)

1,034,000원

다수공급자계약 - 0 + 대

▷ 선택 조건 검색(상품 또는 계약업체) ⇒ 관심 상품 축소 검색

- 검색결과 화면 왼쪽 아래의 상품속성 중 스크린밝기로 조건 검색한 경우

상품속성 (+)

- > 스크린밝기
- > 구동방식
- > 해상도
- > 외형크기(폭)
- > 외형크기(깊이)

펼치기

상품속성 상품속성명을 입력하세요 Q X C 상품속성 필터 초기화 전체 보기 X

<p>▼ 스크린밝기</p> <p><input type="checkbox"/> 100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105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110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120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130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140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160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165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200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21000ANSI LM</p>	<p>▼ 구동방식</p> <p><input type="checkbox"/> 3LCD</p> <p><input type="checkbox"/> DLP</p> <p><input type="checkbox"/> HLD</p> <p><input type="checkbox"/> LASER</p> <p><input type="checkbox"/> LCD</p> <p><input type="checkbox"/> LED</p> <p><input type="checkbox"/> RGB LIQUID-CRYSTAL 셔터 투사방식</p>	<p>▼ 해상도</p> <p><input type="checkbox"/> 1024×768PIXEL</p> <p><input type="checkbox"/> 1024×768DPI</p> <p><input type="checkbox"/> 1280×800PIXEL</p> <p><input type="checkbox"/> 1280×800</p> <p><input type="checkbox"/> 1280×800DPI</p> <p><input type="checkbox"/> 1920×1080PIXEL</p> <p><input type="checkbox"/> 1920×1080</p> <p><input type="checkbox"/> 1920×1080DPI</p> <p><input type="checkbox"/> 1920×1200</p>	<p>▼ 외형크기(폭)</p> <p><input type="checkbox"/> 117MM</p> <p><input type="checkbox"/> 127MM</p> <p><input type="checkbox"/> 128MM</p> <p><input type="checkbox"/> 136MM</p> <p><input type="checkbox"/> 144MM</p> <p><input type="checkbox"/> 164MM</p> <p><input type="checkbox"/> 188.5MM</p>
--	---	---	--

▷ 스크린밝기 10000 ANSI lm 조건으로 검색(예)

상품속성 상품속성명을 입력하세요 Q X C 상품속성 필터 초기화 전체 보기 X

스크린밝기 : 10000ANSI LM X

<p>▼ 스크린밝기</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105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110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120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130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140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160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165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20000ANSI LM</p> <p><input type="checkbox"/> 21000ANSI LM</p>	<p>▼ 구동방식</p> <p><input type="checkbox"/> 3LCD</p> <p><input type="checkbox"/> DLP</p> <p><input type="checkbox"/> HLD</p> <p><input type="checkbox"/> LASER</p> <p><input type="checkbox"/> LCD</p> <p><input type="checkbox"/> LED</p> <p><input type="checkbox"/> RGB LIQUID-CRYSTAL 셔터 투사방식</p>	<p>▼ 해상도</p> <p><input type="checkbox"/> 1024×768PIXEL</p> <p><input type="checkbox"/> 1024×768DPI</p> <p><input type="checkbox"/> 1280×800PIXEL</p> <p><input type="checkbox"/> 1280×800</p> <p><input type="checkbox"/> 1280×800DPI</p> <p><input type="checkbox"/> 1920×1080PIXEL</p> <p><input type="checkbox"/> 1920×1080</p> <p><input type="checkbox"/> 1920×1080DPI</p> <p><input type="checkbox"/> 1920×1200</p>	<p>▼ 외형크기(폭)</p> <p><input type="checkbox"/> 117MM</p> <p><input type="checkbox"/> 127MM</p> <p><input type="checkbox"/> 128MM</p> <p><input type="checkbox"/> 136MM</p> <p><input type="checkbox"/> 144MM</p> <p><input type="checkbox"/> 164MM</p> <p><input type="checkbox"/> 188.5MM</p> <p><input type="checkbox"/> 189MM</p> <p><input type="checkbox"/> 213MM</p> <p><input type="checkbox"/> 216MM</p>
---	---	---	--

▷ 상품리스트가 나온다

○ 401개 ⇒ 16개 상품으로 검색(상품 선택 수월)

▷ 상세규격 검색 및 상품비교

- 구매예정 상품을 선택한 후 식별번호로 상품 비교
- 동일 식별번호(동일 상품)라도 인도조건 또는 계약단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비교 검토 후 구매 진행

👉 비디오프로젝터 (예) 납품장소도 : 1,220,000원, 현장설치도 : 1,440,000

식별번호 검색 비디오프로젝터 에 대한 통합검색결과

○ **상품비교** ⇒ 선택상품비교 버튼을 눌러 **계약조건 · 상품속성 등 비교 가능**

상품비교
✕

이용문의/오류신고

상품비교 (3건)

선택삭제
전체선택



24301730

비디오프로젝터, Epson, (PH)EB-992F, 4000ANSI lm

1,570,000 원

삭제
 자동비교



24901555

비디오프로젝터, Viewsonic, (CN)VS19174, 4000ANSI lm

1,650,000 원

삭제
 자동비교



25360908

비디오프로젝터, Eiki, (CN)ES-LX40LZ, 4000ANSI lm

1,980,000 원

삭제
 자동비교

닫기
선택상품비교



상품및 업체비교
✕

엑셀다운로드

상품 및 업체비교

— 상품삭제
+ 상품추가

기본정보	비디오프로젝터, 주식회사 다해씨앤씨	비디오프로젝터, 효성아이티엑스 주식회사	비디오프로젝터, 주식회사 트리엠
(식별번호)규격명	(25360908)비디오프로젝터, Eiki, (CN)ES-LX40LZ, 4000ANSI lm	(24901555)비디오프로젝터, Viewsonic, (CN)VS19174, 4000ANSI lm	(24301730)비디오프로젝터, Epson, (PH)EB-992F, 4000ANSI lm
이미지정보			
가격 (기준금액 대비 증감)	1,980,000 원 다량납품할인율확인	1,650,000 원 -330,000 원 다량납품할인율확인	1,570,000 원 -410,000 원 다량납품할인율확인
상품속성정보	구동방식 : 3LCD 램프종류 : Laser 해상도 : 1024×768 pixel 명암비 : 5000000:1 입력단자 : HDMI등 무게 : 5.0 kg 외형크기(길이) : 294 mm 외형크기(높이) : 128 mm 외형크기(폭) : 300 mm	구동방식 : LED 램프종류 : Laser 해상도 : 1920×1080 pixel 명암비 : 3000000:1 입력단자 : HDMI, Audio 무게 : 5 kg 외형크기(길이) : 386 mm 외형크기(높이) : 116 mm 외형크기(폭) : 276 mm	구동방식 : 3LCD 램프종류 : 230W UHE 해상도 : 1920×1080 pixel 명암비 : 16000:1 입력단자 : D-sub, RCA, HDMI 무게 : 3.1 kg 외형크기(길이) : 309 mm 외형크기(높이) : 105 mm 외형크기(폭) : 203 mm
예상구매수량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대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대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2) 종합쇼핑몰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 경우, 다른 계약 방법(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검토한다.

2) 입찰참가자격 정하기

(1) 입찰참가자격 부여 및 자격 여부 판단기준으로 활용

- 물품의 경우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을 활용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록일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제조	제조생산 증명서류	제조생산증명 유효기간		등록유효기간		제조공장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시작 일자	종료 일자	
2021. 05. 20	1110150401	황철석	Y	기타제조공 장확인서류	2021/05/ 20	2023/05/ 20	2021/05/ 20	2023/05/ 20	테스트2
2020. 08. 20	2326150701	3차원프린터	N						
2021. 06. 10	2519175501	배터리수리기	Y	공장등록증	2021/06/ 01	2025/06/ 01	2021/06/ 10	2024/06/ 09	테스트3

(2) 시장상황과 최신 상품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 나라장터 → 목록정보시스템 → 검색 → 품명검색

목록정보시스템
Commodity Lists Information System

시스템 메뉴얼 | 나라장터 이용자 요청하기 | 사이트맵 | 로그인

지능형검색 **검색** 목록화요청 공지사항 이용약관

검색

○ 품명검색 ① **입력**

· 세부품명번호 검색어 입력 찾기

· 세부품명 비디오프로젝터 · 품명 검색어 입력

· 세부품명해설 검색어 입력 · 품명해설 검색어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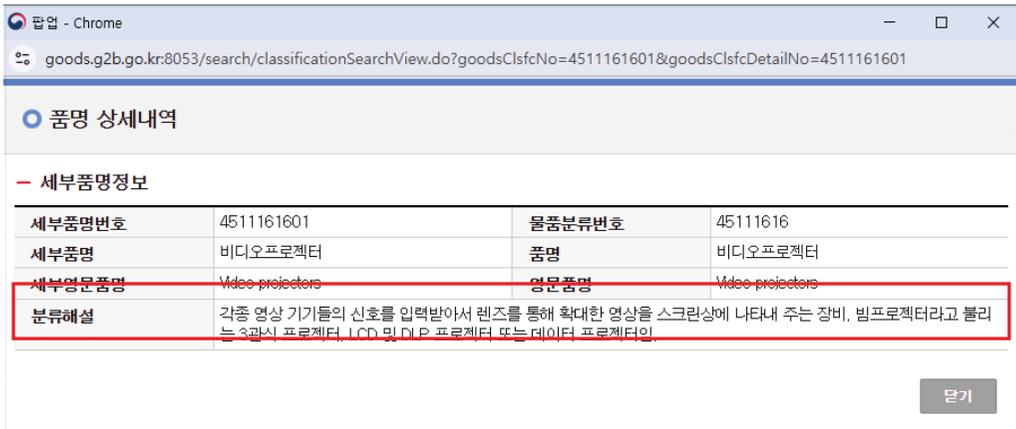
· 세부영문품명 검색어 입력 · 영문품명 검색어 입력

초기화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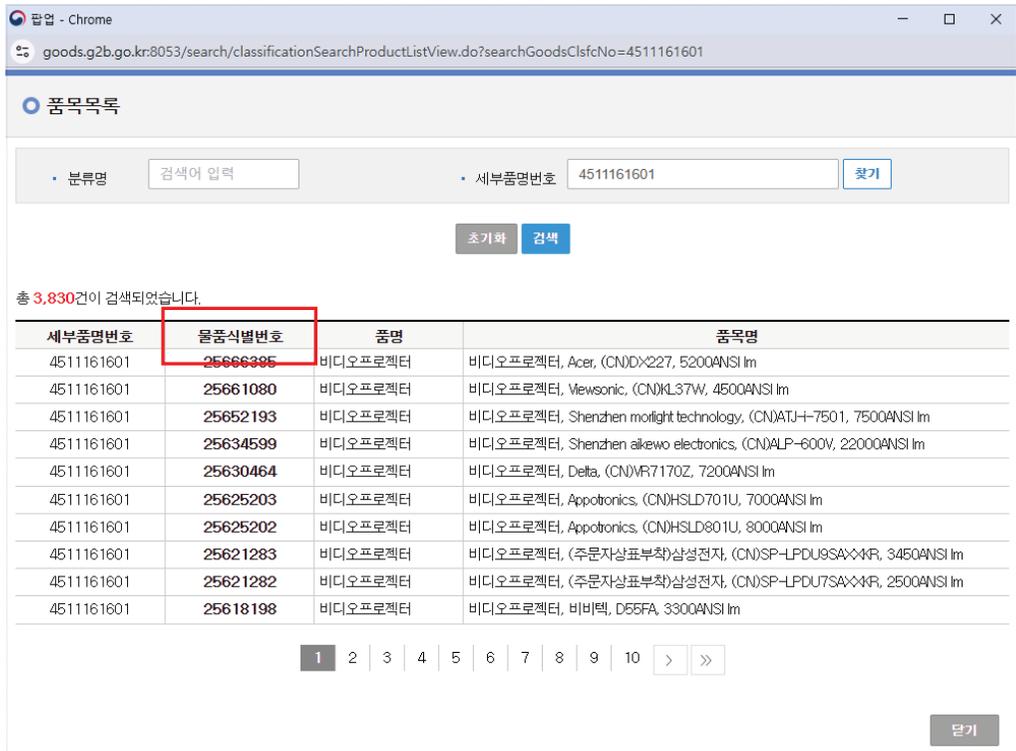
② **클릭** ③ **클릭**

물품분류번호	품명	영문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세부영문품명	관련품목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Video projectors	4511161601	비디오프로젝터	Video projectors	보기
99451116	융복합영상기및소모품	Convergence Projectors and supplies	9945111601	융복합비디오프로젝터	Convergence Video projectors	보기

- ①[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를 알고 있으면 직접 입력해도 됨)에 찾고자 하는 세부품명을 입력하고 [검색]한다.
- 검색 결과 중 찾고자 하는 ②[세부품명]을 클릭하면 다음 쪽과 같이 [분류해설]을 확인할 수 있다.



- ③[관련품목]아래의 [보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된 품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물품식별번호는 부여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증가하며, 최근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된 순서대로 보이므로, 원하는 품목의 물품식별번호를 클릭하면 다음 쪽과 같이 [품목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팝업 - Chrome
goods.g2b.go.kr:8053/search/productSearchView.do?goodsClsfcNo=4511161601&goodsIdntfcNo=25666385

○ 품목 상세내역

현재물품분류 > [451인쇄,사건및시청각기기] > [4511시청각시연장비] > [45116]영상사기및소모품 > [4511616]비디오프로젝터 > [451161601]비디오프로젝터

— 공통속성정보

	물품목록번호	45111616-25666385
	물품분류번호	45111616
	물품식별번호	25666385
	품명	비디오프로젝터
	세부품명번호	4511161601 (비디오프로젝터)
	세부품명영문명	Video projectors
	단위	대
	내용연수	9
	상품원산지국가명	중국(CN)
	품목구분	물품관리용 품목
부품여부	N	
품목등록일	2025-01-23	

모델명	D7227
품목명	비디오프로젝터, Acer, (CN)D7227, 5200ANSI lm
제조업체명	Acer
제품설명	

— 개별속성정보

속성명	속성값	측정단위
스크린밝기	5200	ANSI lm
해상도	1024×768	pixel
명암비	20000:1	
무게	2.8	kg
외형크기(길이)	240	mm
외형크기(높이)	113,7	mm
외형크기(폭)	313	mm

TOP

(3) 입찰참가자격의 범위 결정

- 조달청의 '물품' 입찰참가자격은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등록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기준도 세부품명 단위이므로, 입찰참가자격 범위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하되, 경쟁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로 확대할 수도 있다.

3. 종합쇼핑몰 구매의사결정

1) 데스크톱컴퓨터는 반드시 종합쇼핑몰에서 구매?

수요 목적 : 디자인 실무 교육



- 제품명
 - 21.5형 iMac Petina 4K 디스플레이
- 상세 규격

3.1 GHz 쿼드 코어 Intel Core i5 프로세서
(최대 3.6GHz Turbo Boost)
8GB 1867MHz LPDDR3
S400rpm 1TB Serial ATA 드라이브
Intel Iris Pro Graphics 6200
유선 Apple Mouse
숫자 키패드 포함 Apple Keyboard
OS x El Capitan
사진, iMovie, GarageBand, Pages, Numbers, Keynote
IPS 기술이 적용된 31.5형<대각선> LED 백라이트 디스플레이
4096 x 2304 해상도로 수백만 색상 지원
SDXC 카드슬롯
USB 3 포트 4개<USB 2 호환 가능>
Thunderbolt 2 포트 2개
DVI, VGA 및 듀얼 링크 DVI<어댑터 별도 판매>를 지원하는
Mini DisplayPort 출력 포트
10/100/1000BASE-T Gigabit Ethernet<RV - 45 커넥터>
802.11ac Wi-Fi 무선 네트워크
IEEE 802.11a/b/g/n 호환
Bluetooth 4.0 무선 기술
FaceTime HD 카메라
Gigabit Ethernet

- 종합쇼핑몰상 거래 상품은 대부분 범용 제품
 - 핵심규격 등이 수요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액계약으로 구매추진

2) 종합쇼핑몰 구매의사결정 지원

□ [공통]제품상세정보

▶ 계약사항, 계약서 첨부파일 등 계약상품의 상세정보 제공

[공통]상품상세정보

🔍 오류신고/이용문의



① 조달업체가 등록한 '상품상세정보'의 내용(제품에 대한 기능, 성능, 품질 등)이 위 '제품상세정보'의 '첨부파일'에 있는 '규격서(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판명될 경우, 조달청은 관련규정에 의거 종합쇼핑몰의 상품등록을 정지시킵니다.
 ② (경고) 상품상세정보에 등록된 이미지를 도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공지사항

더보기 >

1:1문의 단골상점등록 미니숍 바로가기

다수공급자계약 중소기업

일체형컴퓨터

물품식별번호 24883025 관심상품 0

★ 0 (0)

1,500,000원

🔍 다량납품할인을 확인

업체명 **주식회사 트리엠** 🔍 계약자/공급자 정보조회

규격명 **일체형컴퓨터, 트리엠, TX3-A5-508H, Intel Core i5 13500(2.5GHz), 60.4cm**
 [중소기업자기생태제품]

원산지 **대한민국**

주요부품1[원산지] **CPU[전세계]**

주요부품2[원산지] **M/BI[전세계]**

제조사 **주식회사 트리엠**

납품기한 **30일 (납품요구일로부터)**

계약번호 **002161803-10-53**

조달수수료 **조달수수료 별도** 📄 조달수수료 계산

공급지역 **전지역**

인증정보

① **물품 부가정보**

② **첨부파일(4)**

- 01_0021618031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변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
- 02_0021618031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
- 03_0021618031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
- 04_00216180310-00216180307-규격서_23.04.zip

본품선택 ⌚ 잔여 1회 최대 납품 요구금액 **598,395,000** 원

- 0 + 대

총 상품 금액 원

🔍 상품비교 📄 유사상품 💬 제안요청 ❤️ 관심상품

🛒 장바구니 📄 바로구매

① [물품 부가정보]를 확장하면, 인도조건 · 계약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첨부파일]에서 계약조건 · 규격서를 확인할 수 있다.

□ [공통]상품상세정보 → 계약사항 → 구매의사결정을 위한 구매정보

☞ 품질관련 인증정보, 납기지체율, 우선구매대상, 신용평가등급, 부정당업자제재현황, 거래정지 여부 등

구매의사결정을 위한 구매정보

우선(의무)구매대상	성능인증제품 녹색기술제품확인 환경표지제품
평균배송일 / 납품기한	관련정보없음 / 30일 (납품요구일로부터) 납기지체율
품질보증조달물품여부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용평가등급	동일품명내 최고등급 : AA+, 최저등급 : BB-, 평균등급 : BBB+, 신용등급순위 : 10개 업체 중 1순위
본사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238 공장소재지
부정당업자제재현황	현황조회
종합소평물 거래정지현황 (최근2년이내)	없음
참고사항(Remark)	없음

□ [공통]상품상세정보 → 계약사항 → 다수공급자 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

☞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제공(평가결과가 있는 업체만)

다수공급자 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

평가대상기간 : 2022-07-01 ~ 2024-06-30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등급
납기	납기준수율, 평균납기지체일수	● ● ● ●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실적, 품질만족도	● ● ● ●
수요기관 만족도	가격, 서비스, 사후만족도	● ● ● ●
서비스	납품품목비율, 조달품질신문고 처리기간	● ● ● ●

◇ (참고)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이행실적평가

- (평가대상) 평가기간 동안 납품실적이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
- (평가주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씩)
- (평가 항목 및 지표)
 - 5개 평가항목 :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 성실도**
 - ↳ 11개 평가지표 + 가점(교육이수)
- (평가 결과 산출)
 - 11개 평가지표에 대한 총점(100점 만점)과 평가등급 산출
 - 5개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산출

등급(색상)	표준 점수구간
최우수(Blue)	95점 이상
우수(Green)	95점 미만 ~ 85점 이상
보통(Orange)	85점 미만 ~ 75점 이상
미흡(Red)	75점 미만

☞ 상품평(수요기관)

상품상세정보
상품속성및특성정보
계약사항
상품평 [이]
상품문의 [이]
타기관구매이력 [이]
납품사례 [이]
판매자정보

상품평

[자세히보기](#)

등록된 상품평이 없습니다

- 주) - 상품상세정보 : 업체에서 입력한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
- 상품속성및특성정보 : 해당 상품의 규격 등 제품 속성에 대한 상세정보
- 계약사항 : 구매의사결정을 위한 구매정보, 다수공급자 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 계약일반사항, 계약특기사항 등의 계약관련정보
- 상품평 : 구매자가 작성한 상품평 조회(품질, 가격, 배송, A/S)
- 상품문의 : 상품에 관련된 질문을 남기면, 업체 담당자가 답변 등록
- 타기관구매이력 : 다른 수요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구매하여 공개 처리한 납품 요구 중 종결된 목록

□ 종합쇼핑몰 구매(주문 수량 입력 후 주문)

전체 필터 초기화 검색결과 434건 **상품비교** 제안요청 장바구니 바로구매 관심상품

세부품명 **ON** 판매량순 **낮은가격순** 평점순 최신등록순 납품사레만순 10 적용

일체형컴퓨터(434)
 데스크리스시스템(2)
 소형기기용충전기(9)
 책정(1)
 콘크리트렌탈블록(96)

계약구분
 계약업체 (10)
 기업구분
 본사소재지
 물품인중
 의무·우선구매
 원산지
 공급가능지역
 인도조건
 가격범위
 최저 원
 최고 원
 상품속성
 > 화면크기
 >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목록속도
 > 크기(높이)
 > 사용전압

일체형컴퓨터(4321159301) **다를 주식회사 중소기업**
일체형컴퓨터, 디글, NPC24-313P, Intel Core i3 13100(3.4GHz), 60.4cm
 식별번호 25057772 [중소기업자기경영제품] 참고항목 유사상품
 우선(의무)구매대상 납품사레 (0)
 원산지 계약종료일 2026.07.05 납품기한 30일 (납품요구일로부터)
 인도조건 **납품상지도**
 공급가능지역 **전지역**
 ★ 0 (0)
 다수공급지계약 **1,360,000원**
 - 0 + 대

일체형컴퓨터(4321159301) **다를 주식회사 중소기업**
일체형컴퓨터, 디글, NPC24-313P, Intel Core i3 13100(3.4GHz), 60.4cm
 식별번호 25057772 [중소기업자기경영제품] 참고항목 유사상품
 우선(의무)구매대상 납품사레 (0)
 원산지 계약종료일 2026.07.05 납품기한 30일 (납품요구일로부터)
 인도조건 **현장상지도**
 공급가능지역 **전지역**
 ★ 0 (0)
 다수공급지계약 **1,370,000원**
 - 0 + 대

일체형컴퓨터(4321159301) **몬스타주식회사 중소기업**
일체형컴퓨터, 몬스타, MPC-24AIO-BB, Intel Core i5 12500(3.0GHz), 60.45cm
 식별번호 24993857 [중소기업자기경영제품] 참고항목 유사상품
 우선(의무)구매대상 납품사레 (0)
 원산지 **대한민국** 계약종료일 2026.07.31 납품기한 30일 (납품요구일로부터)
 인도조건 **현장상지도**
 공급가능지역 **전지역**
 ★ 0 (0)
 다수공급지계약 **1,510,000원**
 - 0 + 대

일체형컴퓨터(4321159301) **몬스타주식회사 중소기업**
일체형컴퓨터, 몬스타, MPC-24AIO-AA, Intel Core i5 12500(3.0GHz), 60.45cm
 식별번호 24993858 [중소기업자기경영제품] 참고항목 유사상품
 우선(의무)구매대상 납품사레 (0)
 원산지 **대한민국** 계약종료일 2026.07.31 납품기한 30일 (납품요구일로부터)
 인도조건 **현장상지도**
 공급가능지역 **전지역**
 ★ 0 (0)
 다수공급지계약 **1,530,000원**
 - 0 + 대

일체형컴퓨터(4321159301) **다를 주식회사 중소기업**

- 주) - **상품비교** : 선택한 상품을 비슷한 규격의 다른 상품과 비교 가능(다수 품목도 비교)
 - **제안요청** : 업체별 구매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 실시
 - **장바구니** : 선택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기
 - **바로구매** : 클릭 시 '조달요청서'작성 화면으로 이동
 - **관심상품** : 선택한 상품을 관심상품으로 등록(수시로 장바구니로 이동 가능)

3

예정가격작성 실무

| 담당교수 | 김 공 진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공공조달역량개발원

INFORMATION

제1절 예정가격 결정기준

- 1. 의의 73
- 2. 예정가격의 구성 73
- 3. 예정가격의 비치 73
- 4. 예정가격 결정방법 75
- 5. 예정가격 결정기준 79

제2절 예정가격 기초조사

- 1. 거래실례가격 조사 81
- 2. 원가계산 82
- 3.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96

제3절 원가계산 용역의뢰

- 1. 의의 97
- 2. 원가계산 용역기관 97
- 3. 관련 법규 준수 의무 99
- 4. 용역원가계산서 검토 99

제 1 절 예정가격 결정기준

① 의의

-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 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구매가 가능하고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고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된다.

② 예정가격의 구성

예정가격은 다음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예정가격의 구성>

- ① 물품대
- ② 운반비(납품장소도인 경우)
- ③ 설치비(현장설치도인 경우)
- ④ 교육훈련비(시방서에 명시된 경우)
- ⑤ 인.허가 비용(수요기관에서 계약자부담으로 계약 요청한 경우)
- ⑥ 시험.검사비용(통상적인 검사외에 수요기관에서 특별히 요청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 ⑦ 세액(부가가치세,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해당액)
- ⑧ 기타 예정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

※ ②내지 ⑧은 물품대에 포함되지 않은 비목에 한함

③ 예정가격의 비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입찰 또는 시담결과 유찰 또는 시담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를 다시 밀봉하여 해당 계약담당과장이 보관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

- ①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
- ②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경우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 나라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 ※ 이 경우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개산가격을 결정한다.
- ④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⑤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특례 규정 제6조]
 -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이란 용역과 기계·기재류(機材類), 철재류(鐵材類), 식료품류, 동물류, 화공품류(비료는 제외한다), 약품류, 종이 및 판지류, 유제품류 및 목재류 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례규칙 제2조]
 1.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4] 예정가격 결정방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조]

가. 총액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계약방법이 총액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총액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장기물품제조 등(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계약 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제조 등에 대하여 총제조 금액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즉,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규모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나. 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단서]
-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에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로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다.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1) 복수예비가격 작성[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42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입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협정물자를 포함한 모든 내자의 경쟁입찰에 적용)

① 기초금액 작성 및 공개

-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장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된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을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한다.
- 공고기간이 7일 이내이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공고인 경우 또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찰개시일 전날까지 공개가 가능하다.
- 협상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예비가격 작성 및 관리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pm 2\%$ 상당금액(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조서에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1번에서 15번까지 명기한 후 복수예비가격조서봉투에 넣고 봉합하여 보관한다.
-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확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상위 7개, 하위 8개로 작성한다.
-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복호화하여 보관·관리하며 복수예비가격은 공개하지 않는다.

2) 복수예비가격의 추첨 및 예정가격 결정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7조]

① 복수예비가격 추첨

- 복수예비가격 추첨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복수예비가격 추첨 요령>

- ① 추첨함(30cm² × 30cm² × 25cm², 목재연갈색)을 입찰실에 비치한다.
- ② 플라스틱 번호표(3cm² × 3cm² × 0.3cm², 백색판에 흑색숫자)를 일련번호에 따라 15개 준비(계속사용) 한다.
- ③ 플라스틱 번호표를 입찰집행 시 지참하여 입찰실시(1차 입찰서 접수)한다.
- ④ 낙찰자 선정전에 입찰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개찰장소에 참석한 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4인의 공무원)을 선정하여 준비된 번호표 (15개)와 빈 입찰함을 확인시킨 후 동 번호표를 추첨함에 넣고 수회 흔든 후 1개씩 추첨토록 한다.
- ⑤ 추첨이 끝나면 추첨자 4인으로 하여금 추첨현황을 확인(추첨번호 4개와 잔여 번호 11개)하고 개찰조서에 서명날인토록 한다.
- ⑥ 입찰집행관은 복수예비가격조서봉투를 개봉하여 추첨번호와 복수예비가격의 일련번호를 연계시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개찰조서에 이기한다.

② 예정가격 결정

- 입찰당일 입찰현장에서 상기요령에 의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단가입찰은 제외)

3)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및 12조]

- 전자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 중 직접 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동일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한다.
-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번호 중에서 시스템의 난수표발생기로 선택한다.
- 산술평균한 결과 값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복수 예비가격 작성 지침

복수 예비가격 작성방법 개선 시행 안내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범위 내에서 균등한 폭으로 15개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1개씩의 예비가격 (비율) 결정
 - 결정된 비율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곱해 예비가격을 산출하고, 예비가격의 배열순서는 임의 처리

※ 예비가격 산출시 소수점 처리기준(현행과 동일)

- 물품/일반용역(총액) : 1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
- 물품/일반용역(단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
- 시설공사/감리 및 설계 용역 :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올림(10원단위에서 올림)

- 집행기관별 상세기준
 - ① 조달청 기준 적용시

구간	범위	구간	범위
1	102.000 ~ 101.735%	9	99.866 ~ 99.600%
2	101.734 ~ 101.469%	10	99.599 ~ 99.333%
3	101.468 ~ 101.202%	11	99.332 ~ 99.066%
4	101.201 ~ 100.935%	12	99.065 ~ 98.799%
5	100.934 ~ 100.668%	13	98.798 ~ 98.532%
6	100.667 ~ 100.401%	14	98.531 ~ 98.266%
7	100.400 ~ 100.134%	15	98.265 ~ 98.000%
8	100.133 ~ 99.867%	기초금액	100.000%

② 행정자치부 기준 적용시

구간	범위	구간	범위
1	97.00000000~97.37500000%	9	100.00000001~100.42857142%
2	97.37500001~97.75000001%	10	100.42857143~100.85714285%
3	97.75000002~98.12500002%	11	100.85714286~101.28571428%
4	98.12500003~98.50000003%	12	101.28571429~101.71428571%
5	98.50000004~98.87500004%	13	101.71428572~102.14285714%
6	98.87500005~99.25000005%	14	102.14285715~102.57142857%
7	99.25000006~99.62500006%	15	102.57142858~103.00000000%
8	99.62500007~100.00000000%	기초금액	100.000%

○ 적용시기 : 2005. 4. 1 작성분부터

5] 예정가격 결정기준 } { }

가. 기준 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레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레가격)
-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 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레가 없는 경우에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3) 적정한 거래가격이 없거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용역 등의 거래실레가격 견적가격
 - 가) 감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감정 평가한 가격
 - 나) 유사한 거래실레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레가격
 - 다)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예정가격결정 시 기준가격 우선순위>

- ① 법령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 ②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
- ③ 원가계산가격
- ④ 감정가격
- ⑤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⑥ 견적가격

나. 예정가격 결정 시 고려사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3항]

- 1)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예정가격결정 시 참작사항>

- ① 계약수량, ② 이행기간, ③ 수급상황, ④ 계약조건, ⑤ 기타 제반여건

- 2) 국고채무부담 계약일지라도 예정가격에 이자계상 불가
 - 「국고채무부담 행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가 계약체결 연도 내에 준공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 공사비 지출 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예정가격에 계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감사일 142.02 1939, '65.6.1]」

다. 예정가격결정 시의 세액합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 ②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
 - ③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 ④ 「관세법」에 의한 관세
 - ⑤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라. 예정가격의 변경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3조]

- 재공고 입찰에 있어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 가격으로는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 2 절 예정가격 기초조사

① 거래실례가격 조사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거래실례가격의 범위>

-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시중물가지에 게재된 가격)
-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매입매출대장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가격)

※ 시중물가지 발행현황

물 가 지 명	기 관 명 (발행자)
거 래 가 격	대 한 건 설 협 회
물 가 자 료	한 국 물 가 협 회
물 가 정 보	한 국 물 가 정 보 센 타
유 통 물 가	한 국 응 용 통 계 연 구 소
물 가 시 세	한 국 경 제 조 사 연 구 원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거래실례가격 적용>

- ① 거래실례가격은 최빈치 가격으로 한다.
- ② 다만 최빈치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호, 2016.12.30)

다. 거래실례 가격조사 시 유의사항

- 1)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인가? (덤핑 또는 고가거래가격은 아닌지)
- 2) 당해 물품 유통구조상 적정한 거래단계를 조사하였는가?
(생산자 가격, 도매가격 또는 대리점 가격 등)
- 3) 당해물품 인도조건(공장상차도, 납품장소도, 현장설치도)과 조사한 거래실례의 인도조건이 동일한가? → 인도조건이 상이한 경우는 그 다른 부분을 고려하여 가격을 적용하였는가?
- 4) 특별소비세, 교육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거나 비과세 되어야 할 경우는 이를 적용하여 가격을 조사하였는가?
- 5) 계약상대자가 판매하는 거래실례가격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이중 계산하지는 않았는가?

② 원가계산

가. 원가계산의 일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대상물에 대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577호, 2021.12.1)에 의하여야 한다.

- 1) 원가의 구성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 제조·구매(수입물품 구매 제외)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비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목별	내 용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경 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도 정하는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이 윤	노무비·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 제외)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별도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

○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①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 ② 통관료
- ③ 보세창고료
- ④ 하역료
- ⑤ 국내운반비
- ⑥ 신용장개설수수료
- ⑦ 일반관리비(①~⑥ 합계액 × 별도 정하는 비율)
- ⑧ 이윤(②~⑦ 합계액 × 별도 정하는 비율)

2)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

○ 원가계산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가격을 적용한다.

- ①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 ②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제비용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일반관리비 구성>

- ① 임원 및 사무실직원 급료(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등 포함)
- ② 복리후생비
- ③ 여비, 교통·통신비
- ④ 수도광열비
- ⑤ 세금과 공과
- ⑥ 지급임차료
- ⑦ 감가상각비
- ⑧ 운반비, 차량비
- ⑨ 경상시험연구개발비
- ⑩ 보험료 등

나)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다음의 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다.

(1) 재무제표 분석 비율(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 산정)

일반관리비율 = $\frac{\text{일반관리비} + \text{판매비} - \text{판매비}}{\text{매출원가}}$ (접대비, 광고선전비, 대손상각 등)

매출원가

(2) 회계 규정상 일반관리비율(상한치)[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수입물품의 구매		8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폐기물처리 재활용 용역		10
시설물관리 경비 및 청소 용역		9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8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5
장비 유지 보수 용역		10
기타 용역		6
○ 시설공사업		6

주 : 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4) 이윤

가) 이윤율[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이윤은 노무비, 경비(기술료, 외주가공비제외)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여 계산할 수 없다.

< 이윤율(상한치) >

- 제 조·구 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다) : 25%
- 수입물품구매 : 10%
- 용 역 : 10%

나) 이윤율 적용 특례

- 위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5) 세액합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 결정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총원가를 산출하고 이 금액에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세액을 총원가에 합한 후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상기 세액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산출총액 계산>

산출원가 총액={총원가+세액(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1(부가세율)

- ① 총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② 관세 및 개별소비세 : 관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의거 해당품목에 대하여 적용
- ③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의 30%부과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④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 관세감면 시 그 감면 세액 해당액의 20%부과
 - 특별소비세액의 30%부과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조세 감면규제법 제106조제1항)에는 총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되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큼은 계상하여야 한다.

나. 제조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절]

○ 원가계산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가격을 적용한다.

비목별	내 용
재료비	직접재료비 - 당해물품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 또는 부분품가치 간접재료비 - 당해물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공제금액 - 재료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작업설, 부산물, 연산품 등으로 매각 가치가 있는 것
노무비	직접노무비 -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 간접노무비 -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하는 노무자 및 현장감독자 등)
경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소비되는 전력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등 비용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이윤	영업이익
세액	부가가치세,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 재료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9조]

가) 구성

비 목	세 비 목	내 용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형성재료)	주요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부 분 품 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다음물품의 가치 ○ 매입부품 ○ 수입부품 ○ 외장재료 ○ 외주품(주문제작품으로서 경비로 계상되는 외주가공비 제외)
	재료 부대비	재료구입과 직접 관련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구입수수료 등은 재료비로 계산(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로 계산, 경비의 각 비목과 이중계상되지 않도록 주의)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치 않는 보조재료)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
	소모공구· 기구·비품비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공구·기구·비품(통상 구입단가가 100만원이하)
	포장 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
공 제 금 액	작 업 설	원재료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품으로서 매각 가치가 있는 것 (예, 동스크랩)
	부 산 품	주제품 생산과 동일공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2차 생산물품 (예, 비누제조 시 글리세린)
	연 산 품	동일공정에서 동일원료를 사용하여 2가지 이상의 다른 제품이 생산되는 것 (예, 정유공장에서 휘발유, 석유, 경유 등 생산)

나) 직접재료비 계산

(1) 직접재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직접재료비} = \text{소요량} \times \text{단위당 가격}$$

(2) 소요량 산출

재료비의 소요량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소요량 구성>	
① 정미량	: 제품의 실체를 형성한 정량
② 여유량	: 제조상 여유로 추가한 량
③ 공손량	: 제조상 파손·불량 손실의 량

(3) 단위당 가격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재료비 계산 시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가격 순으로 적용한다.

<단위당 가격 적용순위>	
①	거래실례가격 (제2절 제1항 참조)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공표한 가격
②	감정가격 (제1절 제5항 참조)
③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④	견적가격(“)

- 재료비의 단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가계산 당시의 가격을 기준한다.[질의회신, 회제 210-2068, '81.10.26.]

(4) 경비비목과 관계되는 외주가공비 및 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 계산된다.

재 료 비	경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품의 가치 ○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 부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가공비 ○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 부대비용

외주품과 외주가공비 구분

① 외주품

- 특정업체에 제조의뢰하고 그 업체에서 원료 및 원재료를 구입·가공하여 납품하는 주문부분품을 말하며
- 재료비에 적용할 가격은 당해부품 납품업체가 판매한 가격(원재료 구입비 포함)이다.

② 외주가공비

- 계약대상자가 제조할 수 없거나 제조 가능하더라도 경제성 및 성능면에서 직접 제조가 불리할 경우에 원료 또는 원재료를 특정업체에 제공하여 제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가공의뢰 하는 것을 말하며,
- 경비에 적용할 금액은 당해 외주가공업체에게 지불한 금액(원재료비 불포함)이다.

다) 간접재료비 계산

- (1) 간접재료비도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개별 계산한다.
 - 간접재료비 = 소요량 × 단위당 가격
- (2) 소요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이상업체(수의계약의 경우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계산서를 분석하여 직접재료비에 대한 평균비율만큼 배분 적용
- (3) 소모재료비는 경비비목의 소모품비와 이중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라) 공제금액계산

- 작업설·부산품·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2) 노무비[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가) 직접노무비 계산

- (1)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직접노무비} = \text{소요 노무량} \times \text{노임단가}$$

(2) 노무량

- 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량을 기준으로 소요 노무량을 산정한다.

<작업시간의 구성>

- ① 정미작업시간(주작업시간)
- ② 여유시간(부수작업시간)
- ③ 준비작업시간(기계가동준비 등)
- ④ 간접작업시간(작업지시, 조례시간 등)
- ⑤ 휴식시간

(3) 노임단가

- 노임단가는 기본급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총당금을 더하여 계산한다.

<노임 단가 구성>

- ① 기본급(「통계법」 제15조에 의한 지정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 ② 제수당(기본급 성격을 갖지 않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제수당은 소요노무량, 단위당기준노임, 상시종업원 및 계약이행기간 등을 감안 적용 [회계 1210-833, '78.5.6.]
- ③ 상여금(기본급의 400% 이내)
 - 전년도 지급실적, 이행기간 등 참작
- ④ 퇴직급여총당금(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합계액의 연30일분)

통계법에 의한 지정기관

[통계법 15조]

- ① 물품제조 노임단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② 공사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 ③ 용역 노임단가 :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 위 기관조사 노임단가에 대한 가산 또는 적용배제
 - 다음의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기본급)의 15%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②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및 오지지역공사의 경우
 - 시중노임의 급등 등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단서]
 -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

나) 간접노무비 계산

- 간접노무비는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00%이하)

※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5항단서]

<간접노무비율 산정>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이상 업체(수의계약의 경우 당해 대상업체)의 최근연도 지불노임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노무비의 합계액에 대한 간접노무비 합계액의 평균비율로 산정한다.

- 질의회신, 회제 125-1906('91.8.5.) -

3) 경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

-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여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이상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 ②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운반비 구분>

[질의회신, 회제 1210-2361, '83.8.4.]

- 경비중의 운반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경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하역·상하차·조작비용 등을 말하며
- 일반관리비중 운반비는 기업전체의 관리운용에 소요되어 발생하는 인사·재무·회계·서무·판매 등에 지출된 경비 중의 하나로서 직접 순제조원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③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 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④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⑤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⑥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⑦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⑧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 ⑨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⑩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산정 시 산재보험료를 잘못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다.

[질의회신, 회제 125-1594, '91.6.25]

- ⑪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등 작업 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⑫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⑬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 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⑮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 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 ⑯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 유지비와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⑰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⑱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⑲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 포함)등을 말한다.
- ⑳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 ㉑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나) 경비는 다음과 같이 직접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직접 계산이 곤란한 경우는 배분 계산할 수 있다.

(1) 직접계산

○ $\text{경비} = \text{소요(소비)량} \times \text{단위당가격(재료비 적용 단위당 가격적용순위 참조)}$

(2) 배분계산

○ 직접계산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이상 업체(수의계약의 경우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 분석비율(경비비율)을 적용 배분 계산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가. 각 세비목 및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나.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조]

<계약담당공무원 주의사항>

- ① 원가계산 작성시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불가피하게 원가계산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제 3 절 원가계산 용역의뢰

① 의의

- 정부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원가계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야 한다.
- 다만,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 용역기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 〕

가. 등록자격

원가계산 용역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범위 및 요건>

- ① 용역수행기관
 - 가. 정부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다.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② 용역기관의 요건
 - 가.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 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 나. 다음 요건을 갖춘 인원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일 것)
 -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
 -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등록범위 및 요건>

-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2억원(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일 것.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③ 용역기관은 본부외에 별도로 지사, 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나. 용역기관에 대한 제재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의2]

-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다. 용역의뢰기관 선정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 원가계산용역의뢰 시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원가계산 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 의뢰하여야 한다.
- 다만,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한국원가관리협회 등)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용역의뢰 시 한국원가관리협회 등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라. 용역계약체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2조 제3항]

- 원가계산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 계약서 작성을 생략(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하는 경우에도 이 내용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원가계산용역계약서에 명시할 사항>

- ① 부실 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③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련 법규 준수 의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원가계산 용역전문기관에게 원가계산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④ 용역원가계산서 검토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용역원가 계산서 검토사항>

- ① 서명확인
 - 용역기관의 장(대학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는지 여부
- ② 원가계산서 작성 내용검토
 -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계약법령,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및 계약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4

물품구매계약 공고서 작성

| 담당교수 | 조 용 만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INFORMATION

- 1. 입찰공고 개요 105
- 2. 입찰집행 114

1. 입찰공고 개요

국가계약법 제8조, 지방계약법 제10조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3조, 제35조, 제36조
구매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1항, 지방계약규칙 제36조

□ 의의

- 구매(계약)대상 목적물에 대한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입찰 예정자들에게 알리는 행위. 이를 통해 자격이 있는 다수의 입찰자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쟁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인 구매 실현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1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어 입찰공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계약 법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계약법규들은 대부분이 강행법규가 아닌 내부 절차법적인 임의규정으로서 그 규정들 자체로 입찰자나 계약자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공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비로써 입찰자(낙찰후에는 계약자)들을 규율하고 효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관계 계약법규정과 조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입찰공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법규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낙찰자선정방법 및 기준, 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필요시) 등 중요사항을 입찰공고서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입찰자나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들은 모두 입찰공고서에 첨부하여 이를 숙지하고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입찰 공고 방법

[국가계약령 제33조, 지방계약령 제33조]

-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지방계약령 제33조 제1항 단서]
- 국가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입찰공고하지 않고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34조]

□ 입찰 공고 시기

[국가계약령 제35조, 지방계약령 제35조]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공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단축 공고¹⁾할 수 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령 제35조제5항]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
 - ②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지방계약령 제35조제5항 및 6항

- 2단계 경쟁입찰(규격 또는 기술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령 제35조 제5항]
 - ①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10일
 - ②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20일
 - ③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40일
- 위 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지방계약령 제35조 제6항]

1) 단축공고 사유(국가계약령 제35조제4항) : 재공고 입찰의 경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입찰공고시기 계산 예시>

-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5월 30일인 경우, 동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공휴일 여부와 무관)인 5월 29일을 기산일로 역으로 계산하여 7일째가 되는 날인 5월 23일이 말일이 되고 그날의 오전 0시를 기하여 기간이 만료되므로 늦어도 5월 22일 24:00까지는 공고되어야 한다.
- ② 긴급 또는 재공고의 경우는 5월 24일 24:00까지는 공고되어야 한다.

- 입찰공고시에는 다음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시기 결정시 고려사항>

- ① 상기 입찰공고 기간
- ② 나라장터 게재에 소요되는 기간
- ③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 조사에 필요한 기간
- ④ 규격입찰서 작성에 필요한 기간(2단계, 규격.가격분리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 ⑤ 적격심사기준 열람기간(적격심사입찰시)
- ⑥ 기타 납기 등 입찰공고시기 결정에 관련되는 사항

- 정정(변경)공고의 경우

-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령 제33조제2항]

-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령 제33조제2항]

- 위 공고 시기는 국가보안유지를 위하여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4조]

□ 입찰공고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6조]

-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별로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일부분이 다르게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공고 시에 공통 사항에 대하여는 다 명시하되, 낙찰자 결정 방식이나 계약대상 목적물의 특성이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구매업무처리규정 제32조제3항]>

-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③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④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⑤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
- ⑥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⑦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⑧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⑨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이행방식
- ⑩ 청렴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
- ⑪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⑫ 중소기업자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국가계약령 제36조]>

-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④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⑤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 ⑥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⑦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
- ⑧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⑨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⑩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⑪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⑫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⑬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⑭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전자입찰)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 ⑮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⑯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⑰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이 원가계산 예정가격 결정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 ⑱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지방계약령 제36조]>

-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③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④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 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⑥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
- ⑦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⑧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⑩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⑪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⑫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⑬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전자입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⑭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⑮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⑯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⑰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 ⑱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⑲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 ⑳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입찰공고문과 첨부문서의 내용 상이 시 해석기준>

입찰공고 내용과 첨부된 당해 물품시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한다. [질의회신, 회계 125-3685, '83.12.20]

- 상기 사항이외에도 각 낙찰자 결정방법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 추가 반영(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

- ① 낙찰자 결정방법
- ②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사항(열람장소 및 안내 전화번호 등)
- ③ 심사에 필요한 서류(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 참조)
- ④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2)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시

- ① 낙찰자 결정방법
- ② 규격(기술)입찰서 적격자 선정방법 및 기준
- ③ 규격(기술)입찰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종합낙찰제 입찰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5조]

- ① 해당제품의 구매 또는 제조계약을 종합낙찰제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
- ②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의 경우
 - 가) 해당제품의 에너지 소모비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및 내용연수
 - 나) 상기 “마. 조달요청서 검토”항에서 물품별 에너지 소모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동 운용기준 [별표 1])
- ③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의 경우
 - 가) 종합평가 점수 산정방법
 - 나) 동 운용기준 [별표 2]의 사항
- ④ 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의 경우
 - 가) 종합평가 점수 산정방법
 - 나) 동 운용기준 [별표 3]의 사항
-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희망수량경쟁 입찰시 [국가계약규칙 제20조]

- ①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이라는 사항
- ②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입찰수량 및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시 [국가계약령 제43조제2항, 협상계약체결기준 제4조]

- ① 제안요청서를 첨부
- ②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 ③ 해당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
- ④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 ⑤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 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⑦ 제안서의 제출기간
- ⑧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
- ⑨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 ⑩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 ⑪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 ⑫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입찰 변경 공고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3조]

-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정정(변경) 공고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및 지방 계약령 제33조제2항]
-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입찰 연기 공고(또는 입찰참가 연기통지) 할 수 있다. [물품입찰유의서 제14조]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고 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입찰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입찰변경(정정) 공고나 연기공고시에는 그 사유와 함께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입찰 관련 서류작성·비치·열람

[국가계약령 제16조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에 관한 서류 예시 [물품(제조)입찰유의서 제4조]>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에 관한 서류 예시 [국가계약규칙 제41조]>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입찰서(소정서식) 및 계약서(소정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 기준을 포함한다)
6.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7.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 지시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적격심사 낙찰제인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관련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3조]
 - ① 세부심사기준
 - ②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③ 기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2. 입찰집행

□ 의의

- 정부계약도 정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민법상의 계약'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법상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 진다.
- 따라서, 입찰은 계약성립의 요건 중 '청약(Offer)', 즉 계약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을 희망하는 자가 입찰공고 조건에 동의하고 그 내용대로 계약이행하는 경우 입찰금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다.(계약의 성립요건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다만, 정부계약은 통상의 사인간의 계약과는 달리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정부)이고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집행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입찰 공고서에 규정(명시)된 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입찰참가 신청 〔국가계약규칙 제40조 물품입찰유의서 제3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까지 다음 각호의 입찰 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다음 각호의 입찰참가신청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 다만,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서 경쟁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한다.
- 입찰참가 신청기한
 -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국가계약규칙 제40조제4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계약규칙 제40조제2항]

□ 입찰보증금 납부 〔국가계약령 제37조 국가계약규칙 제43조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조달청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 각서로 대체하고 있다.

□ 입찰 절차 } 국가계약령 제37조
국가계약규칙 제43조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가. 입찰참가 [물품입찰유의서 제7조]

-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나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대리인의 자격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하여 임직원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 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계약법규에 특별한 제한이나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시나 입찰참가신청시에 대리인으로 등록하였으면 그 대리인이 입찰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민법상 대리권의 법리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에 대리 참가가 가능하다.
- 위임장(또는 입찰참가등록증이나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이 참석하였는지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 ※ 위임장에는 위임범위(해당 입찰공고명이나 공고번호 등)가 명시되어야 하고 날인한 인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을 확인한다.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물품입찰유의서 제7조제4항,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물품입찰유의서 제3조의2]

- 국가계약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4항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실적제한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과 같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적을 인정(지방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는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 작성 [물품입찰유의서 제8조]

(1) 작성서식

-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금액표시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및 통화

-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4) 기명날인

-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포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사용인감 변경은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사용인감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회계통칙, 회계 45101-1303, '95.8.9.]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5)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물품입찰유의서 제10조]

라. 입찰서 제출 } 국가계약령 제39조 제1항부터 3항
물품입찰유의서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4조

(1) 일반입찰(직접 입찰 및 우편 입찰)

- 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 원칙이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국제입찰 대상 계약인 경우
 -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찰서는 봉합하여 입찰자 1인이 1통만 제출토록 한다.
 - 입찰집행 시 규격설명이 필요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규격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공고서에서 지정한 우편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 있다.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우편으로 접수된 입찰서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입찰집행관은 입찰집행에 앞서 운영지원과(서무)에 우편입찰서 접수(입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여부를 확인하고
 - 우편입찰서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응찰자에게 발표하고 입찰함에 먼저 투합한 후 응찰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입찰함에 투합하게 한다.
 - 이 경우 규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규격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전자입찰이 원칙). [국가계약령 제39조제1항]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외에 각종양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전자입찰 참가방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 전자입찰자는 지문보안토크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전자입찰자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천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 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증 후에는 일정 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입찰은 제외한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폐지될 예정으로 2024년 1월 1일 부터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전자입찰을 허용하고 있음.

* 입찰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전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면 예외적용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전자입찰에 참가 가능
(예외적용 신청 후 사업자용인증서 + 개인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마. 입찰서 취소 등 { 국가계약령 제39조 제3항
물품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능하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로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취소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입찰자의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개찰 { 국가계약령 제40조
국가계약규칙 제48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

-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입찰집행관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우편입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수현황도 함께 발표한다) 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사. 경쟁입찰의 성립

[국가계약령 제11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1조]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 따라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이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다.

□ 입찰 무효 } 국가계약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가. 입찰 무효 사유 [국가계약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의 무효사유>

-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①의2. 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 ②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1인이 수개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
- 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 ⑥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⑦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 설명"이라 함)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입찰
- ⑧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⑨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⑩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⑪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 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및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행위

- ⑫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 ⑬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⑭ 종합낙찰제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에 품질 등의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⑮ 입찰유 의서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리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 ⑯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 입찰자가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것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회신, 회제 45107-870, '93.8.17]

나. 입찰무효 이유 표시 [국가계약규칙 제45조]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 입찰서의 유·무효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발췌)

- 입찰무효사유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질의하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구매와 관련되거나 공사일지라도 물품구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요약하였음.

① 낙찰자가 부정당업자인 경우 [회계 45101 417, '96.3.7]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 되어 무효가 되는 것임.

②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 종전 대표자명의 입찰은 무효 [회제 41301-1653. '98. 6. 23]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일 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수행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수행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무효에 해당될 것인 바,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인인감증명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낙찰자로 선언된 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임.

③ 위임장상의 입찰건명 오기 [회제 125-2052, '85.7.27]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상의 입찰건명이 당해입찰건명과 다른 경우에는 동 대리인은 당해 입찰에 있어서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볼 수 없는바 “대리권이 없는 입찰”에 해당되어 당해입찰은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④ 낙찰선언후 위임장 제출[회제 1210-2286, '80.12.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인 바, 동 “대리권”이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리인의 입찰행위가 본인(입찰참가자)을 위한 대리행위임이 명백하고, 입찰집행관이 이를 인정하여 낙찰선언한 후 그 위임장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동 대리인의 입찰행위를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⑤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회제 125-3982, '86.10.29]

-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이므로 2인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그중 1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당해 입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함.

⑥ 1원입찰의 유효여부 [회계 2210-3579, '86.9.23]

국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1원 입찰은 유효하다.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0원 입찰도 유효하다.(안건번호 07-0353, 회신일자 2007.11.28.)

⑦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금액기재 착오는 유효 [회계 41301-818, '98.4.28]

국가기관이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 문서에 면제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의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로는 볼 수 없어 무효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것임.

⑧ 자기가 속하는 법인과 개인업체 양 업체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회계 45107-167, '96.1.3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개인명의로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동일한 경쟁입찰에 법인과 개인업체 양자의 명의로 직접 참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제3자에게 대리케 하여 참가한 경우에도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하여야 함.

⑨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의 입찰은 무효 [회계 45107-252, '96.2.8]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되는 것임.

* A법인의 대표가 B법인의 임원인 경우로서 A, B 두 법인의 대표가 각자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도 보지 아니함 (회계 41301-2982. '97.10.30)

⑩ 입찰서상의 금액오기, 입찰건명오기, 대표자 성명상이, 주소상이 및 한글숫자와 숫자사이 공백에 대한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회제 125-1233, '88.8.9]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인바,
- 그 불분명 여부는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기재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서 및 첨부서류 등의 다른 기재사항, 당해공사의 입찰현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예1) “팔척”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일련숫자의 화폐단위 및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팔천”임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유효한 입찰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회제 1210-2057, '83.7.2]

(예2) 입찰건명이 누락되거나 틀리게 기재되었더라도 입찰공고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관한 입찰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면 유효로 처리하여야 될 것이라 봄. [회제 125-1040, '83.4.16]

⑪ 입찰서 금액표시글자 누락 시 [회제 45107-375, '94.3.29]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부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가 무효로 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한글표기금액과 아라비아숫자, 표기금액의 일치여부 및 글자간의 여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의 유·무효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임.

(문의) 입찰금액을 일금사천삼백팔십육만사천백십원정(₩43,864,110)으로
()백()십원 글자누락

⑫ 위임장 인감상이 [회제 125-1745, 91.7.16]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그 위임장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한 인감과 다른 등기된 인감을 사용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입찰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

⑬ 입찰서와 첨부물과의 간인은 날인하였으나 표지에 날인 누락 시
[회제125-1772, '88.8.1]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은 무효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서에
날인이 누락되었다면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⑭ 상호·성명등을 누락한 입찰 [회제 125-2614, '85.11.15]

- 입찰자가 주소·상호 및 대표자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입찰서를 제출
(인감만 날인)하였다면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⑮ 낙찰선언은 되었으나 입찰가격 기재착오였음을 구두로 통지한
경우 입찰의 유효여부 [회제 125-997, '82.3.19]

- 입찰무효여부 및 낙찰선언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입찰내용, 상황 및 착오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상황으로 보며,
- 당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함.

⑯ 제한경쟁기준에 위반한 계약의 무효여부 [질의회신, 회제 1210- 1134, '81.6.3]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제한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유효문제는 당해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동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만으로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

⑰ 낙찰예정자의 입찰무효 시 처리절차 [회제 45101-2466, '95.12.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치순위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입찰금액 불분명 관련 유권해석>

□ **입찰금액 불분명(한글 “삼팔공공오” 아라비아숫자 “38,005”) 해당여부(회계 제도과-1961, 06.8.31)**

국가기관이 발주한 물품계약에 있어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은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금액을 한글로 “삼팔공공오”라고 표기한 것은 당해 입찰금액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금액을 한글로 표기하는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봄

□ 입찰의 취소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는 위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찰 집행후 낙찰결정 전 입찰취소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9마1, 결정 2010.4.8)

-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입찰 실시(개찰) 후 적격심사과정에서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의 범위를 입찰공고(±3%)와 달리 전자조달시스템에 ±2%로 입력한 것을 알게 되어 아직 낙찰자 결정전 이므로 해당 입찰건을 취소(무효화)한 것에 대하여 최저가입찰자가 소송을 제기
 - 입찰절차에서 개찰이 실시되어 최저가격 입찰자가 가려 졌으나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입찰절차에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입찰 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입찰시행자는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 *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상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개찰이 이루어져 최저가 입찰자가 가려진 상태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전이라면 입찰시행자인 채무자는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재입찰 〔 국가계약령 제20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5조 〕

- 경쟁입찰에 있어서 개찰한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 또는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규격·가격동시 입찰인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재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재공고 입찰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20조제2항]
-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는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
- 재공고시에도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재공고 입찰 대상>

- 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 경우는 당초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국가계약령 제28조]

- 신문공고 시 제1차 및 제2차 입찰을 구분하였더라도 동시에 공고한 경우는 재입찰공고까지 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질의회신, 회계 1210-1248, '77. 5.20]

- 계약담당공무원의 예정가격 잘못 작성을 사유로 입찰 취소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질의회신, 회계 45101-1478, '95.8.16]

나) 재공고내용[국가계약령 제20조제3항]

- 재공고 입찰(재입찰 포함)은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공고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는 품목(계약목적물) 수량과 입찰 참가자격 등의 주요 공고내용은 최초의 공고내용과 동일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변경하였다면 새로운 입찰공고로 보아야 한다. [질의회신, 회계 125-2778, '86.7.2]

<재공고입찰 관련 유권해석>

□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기 제작계약에서 4개입찰자 중 1인이 낙찰된 후 낙찰자를 제외한 3개업체가 입찰담합 밝혀진 경우(회계제도과-1359, 06.6.26)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 있어 담합한 자의 입찰은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06.5.25 개정) 제12조제4호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바, 동 경쟁입찰에 참가한 자가 4인인 경우로서 낙찰자로 선언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이 담합으로 입찰무효가 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등에 부칠 수 있을 것임

5

물품구매계약 적격심사

| 담당교수 | 조 용 만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공공조달역량개발원

INFORMATION

- 1. 적격심사 개요 137
- 2. 적격심사 절차 138
- 3. 일반물품 적격심사 148
- 4. 중기간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165

1. 적격심사 개요

- (개념) 입찰자의 입찰가격,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적격심사 기준(계약예규에서 정하거나 주관 부처와 협의하여 제정)

○ 물품 : (국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지방) 행안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특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중기부 고시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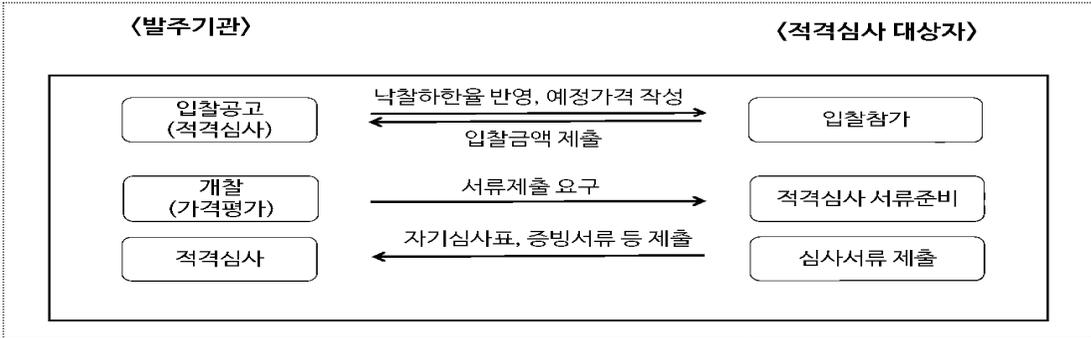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기준
입찰가격	입찰가격	투찰율(입찰자의 입찰가격 / 예정가격)
이행능력	이행실적	납품실적(입찰자의 납품실적 / 해당입찰건의 추정가격)
	기술능력	기술등급 평가 (기술자 보유 등)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인증보유, 중소기업, 이행지연, 부정당제재 여부 등
결격사유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2. 적격심사 절차

□ 적격심사 절차



□ 다음의 예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적격심사기준으로 적격심사 설명

[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

구분	입찰 가격(A)	이행능력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 (B)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70	-	-	30	+3~-2	30	100	85	84.245%

1)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적격심사 기준 선택 시 낙찰하한율 자동 반영

[계약 및 입찰방식]

1. 계약방법	제한(총액) ▼	제한(총액) ▼ ?	<input type="checkbox"/> 소액수의조합추천 적용 ?
2. 입찰방식	전자입찰 ▼ ?	3. 재입찰여부	허용 ▼ (허용: 재입찰 처리)
4. 낙찰방법	<input checked="" type="radio"/> 조달청기준 <input type="radio"/> 행정안전부기준 <input type="radio"/> 기타 203-5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제조입찰, 고시금액미만 구매입찰) ▼ ?		
5. 낙찰하한율(%)	84.245% ?		6. 추정번호
		비공개	

입찰공고서에 적격심사 평가기준 안내

-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별표 3]
- 낙찰하한율(84.245%), 통과점수 : 85점

2) 예정가격 작성

기초금액 공개

물품기초금액 상세조회			
1. 입찰공고번호 20190614750-00 호 선장천지구 외 1개소 재난 예방보시설 교체 사업 입찰의 기초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공고번호	20190614750-00		
공고명	선장천지구 외 1개소 재난 예방보시설 교체 사업		
청조번호	양산시공고 제2019-1497호	개찰일시	2019/06/17 16:00
공고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입찰분류	기초금액		
1	174,117,000 (일억칠천사백일십일만칠천원) 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 3 %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예정가격 작성

-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초금액 : 174,117,000원, ±3%)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추첨가격 1	174,305,100	추첨가격 2	175,856,500
추첨가격 3	170,878,500	추첨가격 4	174,940,600
추첨가격 5	172,013,700	추첨가격 6	172,765,900
추첨가격 7	176,457,200	추첨가격 8	178,793,800
추첨가격 9	173,297,000	추첨가격 10	170,700,900
추첨가격 11	177,883,200	추첨가격 12	169,560,400
추첨가격 13	169,053,700	추첨가격 14	173,930,700
추첨가격 15	177,110,100		

3) 입찰금액 제출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만을 확인하고 입찰서 제출

투찰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므로 협정서 제출 예정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이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투찰금액 : ₩ 146,697,240

기초금액 : ₩ 174,117,000

투찰금액/기초금액 : 84.252 %

투찰을 원치 않으시면 취소를 클릭해 주세요.

4) 예정가격 확정

입찰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추천번호 4개 가격을 산술평균 : 174,046,550원

구분	금액	추천횟수	구분	금액	추천횟수
추첨가격 1	174,305,100	3	추첨가격 2	175,856,500	1
추첨가격 3	170,878,500	1	추첨가격 4	174,940,600	0
추첨가격 5	172,013,700	1	추첨가격 6	172,765,900	1
추첨가격 7	176,457,200	0	추첨가격 8	178,793,800	2
추첨가격 9	173,297,000	3	추첨가격 10	170,700,900	3
추첨가격 11	177,883,200	3	추첨가격 12	169,560,400	1
추첨가격 13	169,053,700	1	추첨가격 14	173,930,700	1
추첨가격 15	177,110,100	1			
예정가격		174,046,550	기초금액		174,117,000

5) 개찰(가격평가 : 투찰율 84.2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1순위자)

* 거광이엔티 투찰율 = 146,697,240원 / 174,046,550원 ⇒ 84.286%

순위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투찰금액(원)	투찰률(%)	추첨번호	투찰일시	비고
1		거광이엔티		146,697,240	84.286	11 10	2019/06/13 15:28:30	
2		주아정보		146,910,000	84.408	14 13	2019/06/17 11:25:38	
3		명송테크 주식회사		147,015,650	84.469	01 11	2019/06/17 09:17:31	
4		주식회사 이지정보기술		147,230,000	84.592	10 01	2019/06/17 11:06:21	
5		광보통신 주식회사		147,693,940	84.858	02 06	2019/06/14 08:06:30	
6		주식회사 송우인포텍		147,895,750	84.974	08 05	2019/06/17 09:25:00	
		주식회사 우남아이씨티		145,397,000	83.539	11 09	2019/06/16 20:13:00	낙찰하한선 미달
		우리원시스템 주식회사		145,527,000	83.613	03 08	2019/06/13 09:00:41	낙찰하한선 미달

6) 계약담당자 서류제출 요구

개찰결과 1순위 입찰자부터 이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물품 : 고시금액 이상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 3일 이내 / 재난복구사업 3일 이내(지방)

적격심사대상통보서
온라인 메뉴얼

1. 수신자는 최대 30명 미만으로 선택하여 송신하십시오.

- 문서번호		- 작성일자	2015/03/12
- 문서기능	원본		

[송신자]	
- 수요기관명	조달청공지
담당자성명	수요기관
담당자전화번호	00-1588-0800

[수신자]				
No.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적격심사대상자선택]

[입찰정보]				
- 입찰공고번호	20150316209	입찰공고차수	00	
공고명	[SHR]물품_적격심사테스트공고_조달청기준10억원이상			
입찰분류	1	제입번호	0	
적격심사구분	물품적격			
- 추정가격	1,000,000,000	입찰수량	2,000	
입찰일시	2015/03/12 16:55	- 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	2015/03/17 00:00	

7) 심사대상자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방법

적격심사 신청서 작성

적격심사 신청서 작성
온라인 메뉴얼

- 업체정보 확정 시에만 자기심사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정버튼**을 클릭하시어 심사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확인 시 수기로 공동수급업경을 맺은 경우에는 기관에 연락하여 공동수급 업경 업체 정보를 입력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전까지 저장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하실 때에는 **조달업체업무 > 물품 > 적격심사 > 적격심사대상통보서** 메뉴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전에 적격심사 신청서 출력을 원하시면 **조달업체업무 > 물품 > 적격심사 > 적격심사신청서작성** 메뉴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최종제출 후에는 보낸문서함에서도 해당 적격심사 신청서를 조회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 최종제출 후에는 입력/수정 작업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최종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사항]			
공고명	[shr]적격심사 테스트공고(10억원 이상)		
입찰공고번호	20141104187-00	개발일자	2015/01/03
국제입찰여부	국내	공고개시일	2014/11/06
입찰금액	832,500,000원	추정가격	535,454,545원
품명	복조기	수량	1
실수요기관	조달청공지	계약방법	일반(출역)
낙찰방법	적격심사(추정가격 10억원이상 제조입찰)	신청마감일시	2015/03/27 00:00
관계법령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 - 4223호(2014. 10. 20))		

[담당자정보]	
담당자명	조달업체임
전화번호	042-482-4011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신용평가등급 온라인 제출

[경영상태 정보]							입찰공고일 : 2020.1.1.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선일자	등급평가일	유효기한	등급	신용평가사	신용정보	
나라장터시연업체51조합	9992100104	2019.23	2019.2.1.	2020.2.1	BBB+	나이스디앤비	기업신용평가등급	
나라장터시연업체52	-	-	-	-	-	-	-	

- ① 입찰공고일 전(입찰공고일과 등급평가일 확인)에 평가
- ② 유효기간 내(입찰공고일과 유효기간 확인)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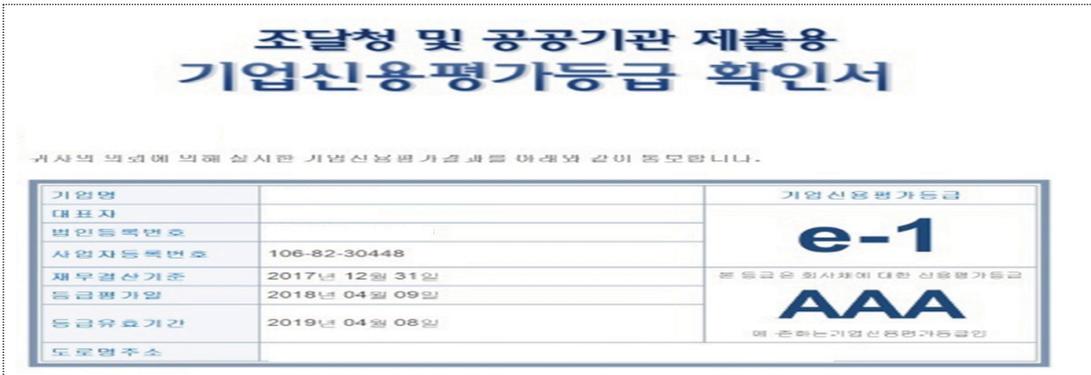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나라장터 전송)

[평가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	AAA	30
AA+, AA0, AA-	A1	AA+, AA0, AA-	30
A+	A2	A+	30
A0	A20	A0	30
A-	A2-	A-	30
BBB+	A3+	BBB+	29.8
BBB0	A30	BBB0	29.6
BBB-	A3-	BBB-	29.4
BB+, BB0	B+	BB+, BB0	29.2
BB-	B0	BB-	29
B+, B0, B-	B-	B+, B0, B-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

<신용평가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연계 신용평가(나라장터/e-고객센터/부가서비스/연계기관링크)
 -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SCI 평가 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으로 나라장터 전송되어야 함(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 * 민간업체 간 거래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은 평가 대상이 아님

<예시 :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평가 점수 제출(혁신형 기업 2점)

[심사 업체: 9992100104 테스트51연합_1234567]

		의견등록	인증조회	
마. 기 타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지원 등	G. 신규채용 우수기업 상세입력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5% 이상인 기업	3	<input type="checkbox"/>
		5% 이상인 기업	2	<input type="checkbox"/>
		4% 이상인 기업	1	<input type="checkbox"/>
		- 중기업		
		7% 이상인 기업	3	<input type="checkbox"/>
		6% 이상인 기업	2	<input type="checkbox"/>
		4% 이상인 기업	1	<input type="checkbox"/>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인 기업	3	<input type="checkbox"/>
		8% 이상인 기업	2	<input type="checkbox"/>
		4% 이상인 기업	1	<input type="checkbox"/>
		I.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협회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벤처)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제조 또는 공급업체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조회	2 <input type="checkbox"/>		
- 혁신형기업	조회	1.5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조회	1.5 <input type="checkbox"/>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조회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8) 계약담당자 적격심사 ⇒ 종합평점 계산 후 85점 이상이면 적격

[자가심사표]

구분	입찰 가격(A)	이행능력				소계 (B)	합계 (A+B)	적격여부 (85점 이상)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심사기준	70	-	-	30	+3~-2	30	100	
자가심사표(거광이엔티)	55.14			29.8	+0.2(+2)	30	85.14	적격

□ 입찰가격 평점(예시 : 55.14점) ← 개찰조서에서 확인

[개찰조서]

순위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투찰금액(원)	투찰률(%)	추첨 번호	투찰일시	비고	가격평점
1		거광이엔티		146,697,240	84.286	11 10	2019/06/13 15:28:30		55.14
2		주야정보		146,910,000	84.408	14 13	2019/06/17 11:25:38		55.63
3		명송테크 주식회사		147,015,650	84.469	01 11	2019/06/17 09:17:31		55.88
4		주식회사 이지정보기술		147,230,000	84.592	10 01	2019/06/17 11:06:21		56.37
5		광보통신 주식회사		147,693,940	84.858	02 06	2019/06/14 08:06:30		57.43
6		주식회사 송우인포텍		147,895,750	84.974	08 05	2019/06/17 09:25:00		57.90
		주식회사 우남아이씨티		145,397,000	83.539	11 09	2019/06/16 20:13:00	낙찰하한선 미달	52.16
		우리원시스템 주식회사		145,527,000	83.613	03 08	2019/06/13 09:40:41	낙찰하한선 미달	52.45

[참고/입찰가격 평점산식 및 평점 계산]

입찰가격 평점 산식

$$\text{평점(점)} = 7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평점(거광이엔티)

$$55.14 = 7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84.286}{100} \right) \times 100 \right|$$

□ 경영상태 평가 ← (나라장터 전송등급 BBB+로 확인, 29.8점 평점 인정)

[평가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	AAA	30
AA+, AA0, AA-	A1	AA+, AA0, AA-	30
A+	A2	A+	30
A0	A20	A0	30
A-	A2-	A-	30
BBB+	A3+	BBB+	29.8
BBB0	A30	BBB0	29.6
BBB-	A3-	BBB-	29.4
BB+, BB0	B+	BB+, BB0	29.2
BB-	B0	BB-	29
B+, B0, B-	B-	B+, B0, B-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

신인도 평가 ⇐ (혁신형 제조 기업은 +2점 가점 부여 가능)

[신인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점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	2.0
	- 혁신형 중소기업 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제조기업이 아닌 경우)	1.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활용 벤처기업 확인

⇐ (신인도 평점 +2점 가점 부여)



종합평점 계산/확인

[종합평점]

구분	입찰 가격(A)	이행 실적	기술 능력	이행능력		소계 (B)	합계 (A+B)	적격여부 (85점 이상)
				경영 상태	신인도			
심사기준	70	-	-	30	+3~-2	30	100	
자기심사표(거광이엔티)	55.14			29.8	+0.2	30	85.14	적격

※ 신인도 평점은 이행능력 배점한도(30점)내에서 부족한 점수만 인정

* 30점 - 29.8점 = 0.2점, 신인도(혁신형 중소기업) +2점 ➡ +0.2점 인정

◇ [참고/1순위자 신용평가 등급이 CCC+이하인 경우]

회사제	신용평가등급			평 점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	AAA		30
AA+, AA0, AA-	A1	AA+, AA0, AA-		30
A+	A2	A+		30
A0	A20	A0		30
A-	A2-	A-		30
BBB+	A3+	BBB+		29,8
BBB0	A30	BBB0		29,6
BBB-	A3-	BBB-		29,4
BB+, BB0	B+	BB+, BB0		29,2
BB-	B0	BB-		29
B+, B0, B-	B-	B+, B0, B-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

※ 신용평가등급(CCC+이하) 경영상태 평점 25점 : **종합평점 82.14점으로 부적격**

[종합평점]

구분	입찰 가격(A)	이행능력					합계 (A+B)	적격여부 (85점 이상)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 (B)		
심사기준	70	-	-	30	+3~-2	30	100	
자기심사표(거광이엔티)	55.14			25	+2	27	82.14	부적격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시 조치방법

○ (국가) 적격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안내

- (서류보완)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지방) 1회에 한하여 심사서류 보완·추가 제출 가능

- (서류보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심사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게 1회에 한하여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함

* 보완·추가 서류 제출기한 : 7일 이내, 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

< 부적격 평가 처리절차 >



□ 적격심사 재심사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부적격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재심사 요청 가능(국가, 지방)
 - 낙찰자(선순위)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자(후순 위자)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재심사 요청 가능 (지방)
 - *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국가) / 5일(지방) 이내 재심사 처리

□ 적격심사 결격사유 확인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 (국가, 지방)
 - *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
- 공동수급을 허용한 경우
 - ①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적격심사에서 제외 (국가, 지방)
 - ②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
 - * (국가)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 * (지방) 제외된 해당 구성원의 참여비율(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함

□ 부정·허위 서류 제출자 등의 처리

- (공통) 부정·허위서류 제출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구매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
 - ①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낙찰자 결정 통보를 한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 ② 계약체결 이후 : **계약 해제·해지 처리 가능**
- (지방)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지 않고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음** ('19.9월 국가계약법 개정)

3. 일반물품 적격심사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이행능력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 (B)			
①	(제조)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	55	5	10	30	+5~-5	45	100	85	80.495% (가격 : 40점)
②	(제조) 추정가격 10억원~2억원 제조입찰 (공급) 추정가격 2억원 이상~(전체금액)	70	-	-	30	+3~-2	30			80.495% (가격 : 55점)
③	(제조)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공급) 추정가격 2억원 미만	70	-	-	30	+3~-2	30			84.245% (가격 : 55점)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제조(①) : 고용창출 신인도가 적용되는 경우 신인도를 최대 +7점까지 인정

(1) 예)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제조입찰 평가기준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이행능력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 (B)			
①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	55	5	10	30	+5~-5	45	100	85	80.495% (가격 :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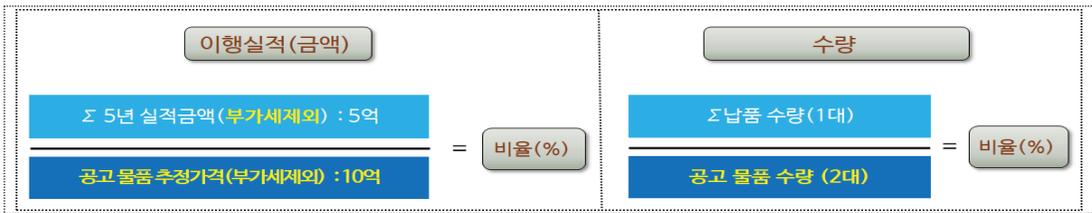
□ **입찰가격 평가(배점한도 55점)**

○ $평점 = 55 - 2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 | | 는 절댓값 표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이행실적평가**

-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
-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이행수량으로 평가 가능



- * 행정안전부 물품 적격심사: 실적금액(부가세포함) / 공고 물품 추정가격(부가세제외)
- 최근 5년 이내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역산하여 적용(창업기업은 7년 이내 실적까지 인정)
- *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제외(신인도 가점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

<이행실적 심사항목 및 평점 : 배점한도 5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가점	등급	평점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 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5.0
		수량 [납품수량/입찰수량]			B. 70%이상 ~ 100%미만	4.0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 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C. 50%이상 ~ 70%미만	3.0
		수량 [납품수량/입찰수량]			D. 20%이상 ~ 50%미만	2.0
				E. 5%이상 ~ 20% 미만	1.0	
					A. 100% 이상	1.5
					B. 70%이상 ~ 100%미만	1.25
					C. 50%이상 ~ 70%미만	1.0
					D. 20%이상 ~ 50%미만	0.75
					E. 5%이상 ~ 20%미만	0.5

○ ‘동등 이상 물품’과 ‘유사물품’을 합산하여 평가

- * 동등이상 물품 :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
- ** 유사물품 : 해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일 물품

동등이상		+	유사물품		=	배점한도(5)
등급	평점		등급	평점		평점·5점
A.100%이상	5.0		A.100%이상	1.5		
B.70%이상~100%미만	4.0		B.70%이상~100%미만	1.25		
C.50%이상~70%미만	3.0		C.50%이상~70%미만	1.0		
D.20%이상~50%미만	2.0		D.20%이상~50%미만	0.75		
E.5%이상~20%미만	1.0		E.5%이상~20%미만	0.5		
75% : 4점			50% : 1점			4+1 = 5점

○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 금액 또는 수량 평가여부를 입찰공고서에 명시

<예시 : 동등이상, 유사물품 입찰공고서 명시 >

- ①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 1>
 - * 낙찰하한율 : 80.495% (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 ② 이행실적평가 : 금액
 - * 평가기준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 추정가격 : 3,120,000,000원 (* 부가세별도)
 - *** 동등이상 물품 : 오존산화처리기, 유사물품 : 해당 없음

- 이행실적 제출서류 : 공공기관 이행 실적은 실적증명서
- * 민간실적 : 실적증명서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등록번호				계출번호	적	조달청
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구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약내용		납품내용		
			계약일(년월일)	수량	금액	납품일(년월일)	수량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명원인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년 월 일						
주 소 :	(Fax번호 :)						
담당부서 :	담당자 :						

*** 납품일자 : 입찰공고일 이전 여부 확인**

***[주]**

-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상품명,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규격"내에는 품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납품금액안은 기재 후 두명 직책이표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 창업기업 이행실적 <7년까지 실적인정 및 기본가점 3점 부여>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가점	등급	평점
창업기업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 [납품실적 (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2.0
		수량 [납품수량/입찰수량]			B. 60%이상 ~ 100% 미만	1.5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 [납품실적 (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C. 30%이상 ~ 60%미만	1.0
		수량 [납품수량/입찰수량]			D. 5%이상 ~ 30%미만	0.5

- 소기업·소상공인 이행실적 <기본가점 2점 부여>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가점	등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 [납품실적 (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3.0
		수량 [납품수량/입찰수량]			B. 60%이상 ~ 100% 미만	2.0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 [납품실적 (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C. 30%이상 ~ 60%미만	1.0
		수량 [납품수량/입찰수량]			D. 5%이상 ~ 30%미만	0.5

□ **경영상대평가**(배점 한도 30점)

-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30.0
BBB+	A3+	BBB+	29.8
BBB0	A30	BBB0	29.6
BBB-	A3-	BBB-	29.4
BB+, BBO	B+	BB+, BBO	29.2
BB-	B0	BB-	29.0
B+, B0, B-	B-	B+, B0, B-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0

* 신용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최저등급(CCC+이하)으로 평가(25점)

<신용평가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연계 신용평가(나라장터/e-고객센터/부가서비스/연계기관링크)
 -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SCI 평가 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으로 나라장터 전송되어야 함(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 * 민간 업체 간 거래 용도로 발급 받은 신용평가등급은 평가 대상이 아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송 신용평가 등급>

[경영상대 정보]		입찰공고일 : 2020.1.1.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신일자	등급평가일	유효기한	등급	신용평가사	신용정보
나라장터시연업체51조합	9992100104	2019.23	2019.21.	2020.21	BBB+	나이스디앤비	기업신용평가등급
나라장터시연업체52	-	-	-	-	-	-	-

- ① 입찰공고일 이전 : 입찰공고일과 등급평가일 확인
- ②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과 유효기간 확인

□ 기술등급평가(배점한도 10점)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 평가
- * (지방)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 기술인력 보유 + 시설·장비 보유평가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 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최저등급(T8 이하)으로 평가(8점)

<기술등급 평가회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연계 기술등급 평가
-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SCI 평가 정보
- ※ 공공기관 입찰용 기술등급으로 나라장터 전송되어야 함(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

신용평가사	수신일자	등급평가일	유효기한	등급
나이스디앤비	2018/08/03	2018/08/01	2019/07/31	T3

□ 신인도평가(배점한도 +5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가. 기술인증	① 고도기술 인증 ② 일반기술 인증
나.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지원 ② 공동수급체 구성
다. 약자기업 지원	① 여성기업 ② 장애인기업
라. 고용창출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⑤ 고용형태 등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③ 부정당업자 제재 ④ 하자조치 불이행
사. 부당노동 행위	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 * ‘라. 고용창출 항목’의 ①신규고용우수기업의 경우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 (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 *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인증)”항목의 ‘②일반기술인증’ “B”등급 및 “바 (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③부정당업자제재” 항목만 적용
- * 부당노동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 기술인증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가. 기술인증	①고도기술 인증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 <2019.12.31.>,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1.5
	②일반기술 인증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마크보유자,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 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0.75

1. “①고도기술인증, ②일반기술인증”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
4. “②일반기술인증”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함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 실시권자
5. “②일반기술인증”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함
6. “②일반기술인증”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
7. 중복평가
- 1) “가. 기술인증”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 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

◇ 중소기업(제조)기업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나.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고용증가율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나 중소기업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3.0
		6%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3.0
		7%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3.0		
9%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 인원 3~5인	1.0	

[예시 : 고용증가율 계산(입찰공고일 2019년 7월)]

① 고용인원 계산

구분	기준연월 (공고 전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소계 (A) (6개월 합계)	평균 (A÷6개월)
최근 6개월	2019년 6월	109	109	109	109	109	109	654	109명
직전년도 6개월	2018년 6월	100	100	100	100	100	100	600	100명

② 고용비율 계산

$109 \div 100 = 1.09$  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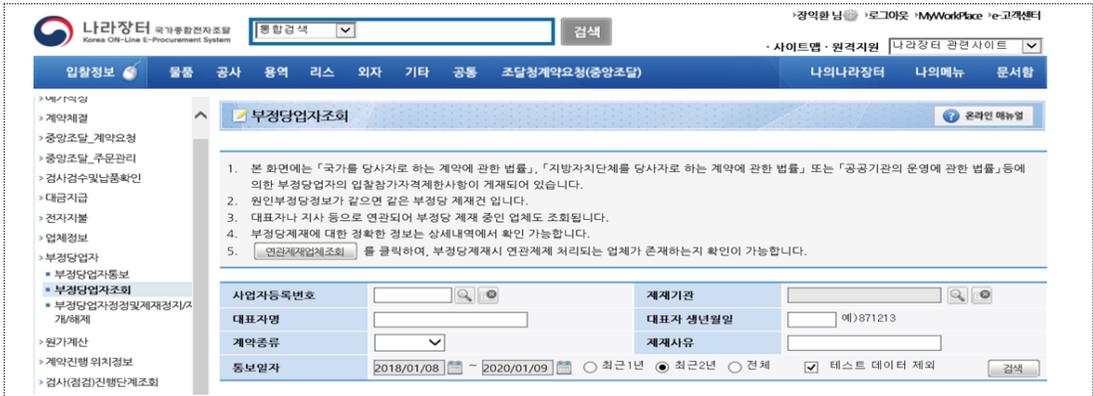
③ 고용증가율 평가

-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2) 고용인원(율)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
- 3)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음
- 4) 고용인원(율)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함
- 5)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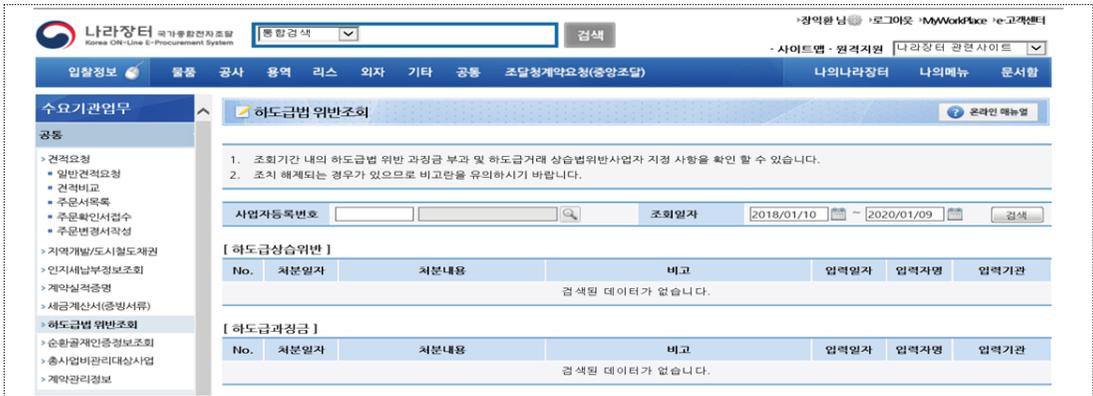
◇ (감점항목) 지체상금, 하도급상습위반, 하도급과징금부과, 부정당이력, 하자조치불이행,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나라장터 적격심사 시스템에서 자동 감점처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5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0.5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 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사. 부당노동 행위	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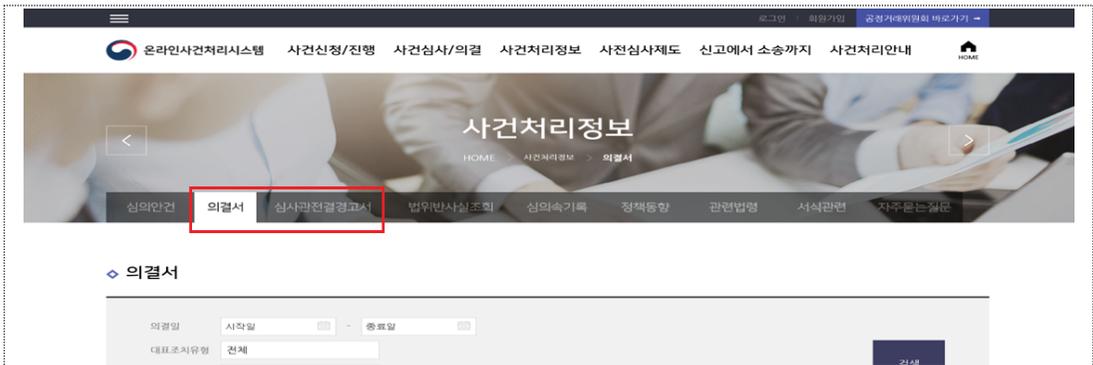
◇ <참고>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



◇ <참고> 나라장터 하도급상습위반, 과징금부과 조회



◇ <참고> 하도급법 위반 등 사항 조회(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의결서·재결서 선택)



◇ <참고> 임금체불 조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2) 예)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 고사금액 이상 제조 / 고사금액 이상 구매 평가기준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이행능력				소계 (B)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②	추정가격 10억 ~ 고사 금액 이상 제조 / 고사금액 이상 구매	70	.	.	30	+3~-2	30	100	85	80.495% (가격 : 55점)

□ 입찰가격 평가(배점 한도 70점)

○ 평점 = $70 - 2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 | 는 절댓값 표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 한다

□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 [별표 1] 과 동일

(3) 예)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평가기준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이행능력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 (B)			
③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70	-	-	30	+3~-2	30	100	85	84.245% (가격 : 55점)

□ 입찰가격 평가(배점한도 70점)

○ 평점 = $70 - 4 \times |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 * | |는 절댓값 표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 [별표 1]과 동일하게 평가

<<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평가 만점(30점) 적용 >>

-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
- 창업기업은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신인도 평가(배점한도 +3 ~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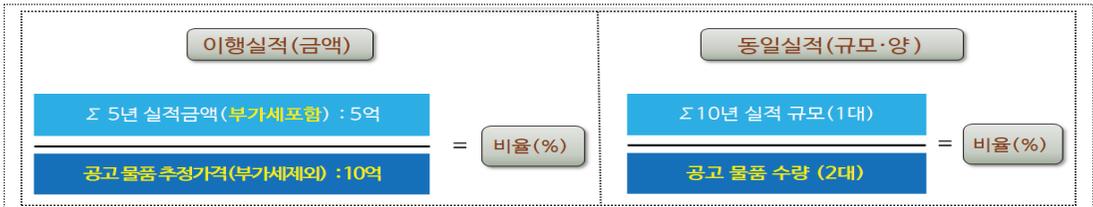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신인도	가. 기술인증 나. 기업지원 다. 불공정 계약행위 라. 부당노동행위 마. 고용형태 등	+3 ~ -2

(4)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번	구분	입찰 가격 (A)	이행능력				소계 (B)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①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30	30	10 (제조)	30	+2~-2	70	100	85	80.495% (가격 : 15점)
②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60	-	10 (제조)	30	+2~-2	40			80.495% (가격 : 45점)
③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70	-	10 (제조)	20	+2~-2	30			84.245% (가격 : 55점)
④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해당 간행물	50	30		20	+2~-2	50			89.995% (가격:35점)

이행실적 평가

-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내 동일 실적(규모·양)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 이행실적에 10%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24.7.1 공고분부터)

기술능력 평가(배점한도 10점) : 기술인력 보유(5점) + 시설·장비 보유(5점)

- 물품 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 구매입찰은 만점(배점한도 10점) 부여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구매입찰은 배점한도 부여)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1.5	
			C. 기능사 1인당	1.0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2)시설·장비 보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C. 미보유	1.0	

□ **경영상태 평가** :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2억 원 이상(별표1,2)	2억 원 미만(별표 3)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15.0
없음	없음	없음	0.0	0.0

<신용정보업자>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거나 등재(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Ⅲ. 신용평가방법)
- *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주)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 * 민간 업체 간 거래 용도로 발급 받은 신용평가등급은 평가 대상이 아님

※ [참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경영상태 평가 시 만점 (30점) 적용

- *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4. 중기간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기부 고시)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이행능력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 (B)			
①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5	5	10	30	+3~-2	45	100	88	87.995% (가격: 43점)
②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고시금액 이상	60	5	5	30	+3~-2	40			87.995% (가격: 48점)
③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70	-	-	30	+3~-2	30			87.995% (가격: 58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 진행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중소기업부 기준과 조달청 기준이 각각 있으며, 심사방법 및 절차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과 거의 동일함
- 다만, 조달청 기준의 경우 배점기준이 추정가격 기준 ①10억이상, ②10억미만~5억이상, ③5억 미만~고시금액이상, ④고시금액 미만으로 구분
- (신인도) 수출우수기업 : 브랜드K는 중기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 K인증제품에 한함
- (세부항목)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②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6

유권해석과 감사사례

| 담당교수 | 최도환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INFORMATION

- 1. 정부유권해석 제도 171
- 2. 유권해석 사례 174
- 3. 감사 사례 199

1. 정부유권해석 제도

- (개념) 법령 규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자나 문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초의 입법취지(법령 제·개정 이유)나 배경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

법의 적용 여부나 일정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해석

☞ 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실시·집행하기 위해 행하는 법령해석(행정해석)



□ 정부유권해석 관장기관

- (법제처) 행정기관이 법령 집행을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 정부입법 총괄기관

☞ (예시; 조달사업법과 지방계약법의 관계 등)

▶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별칭 조항에 대한 해석은 **법무부가 수행**

- (법령 소관부처) 소관법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계약법규상 용어가 불확정 개념으로 판단되어 이의 확정 등이 필요한 경우

☞ 그 의의를 해석하여 훈령을 내리거나 하급관청의 신청 또는 질의에 대하여 지침

□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

- 유권해석은 그와 다른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됨
- 따라서,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음(공적 구속력 = X)
 - 그러나, 정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정한 집행이 되어 징계나 감사를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되므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짐

(참고) 정부유권해석과 사법해석의 차이

- ① '정부유권해석'은 법령에 담긴 정책 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
 (해당 법령의 집행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
- ② '사법해석'은 구체적인 법 적용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

□ 계약법규 해설(질의회신) 소관부처

질의 내용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적용 계약관련 법규 해석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준용하여 법규해석) ☞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계약관련법령에 대한 계약법규 해석업무」를 위임 받아 2003.5.12.부터 동 업무를 수행 	조달청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계약법령 적용 계약관련 법규해석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법규해석 •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하도급계약, 설계기준관련 법규해석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법령소관부처

◇ 기획재정부에 질의할 수 있는 경우

질의 내용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법규 내용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계약법규상 용어가 불확정개념으로 판단되어 이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나 기존 계약법규해석의 내용과 상치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기타 조달청장이 계약의 당사자관계에 있는 등 조달청장이 직접 해석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획재정부 (1차 답변은 조달청 소관)

◇ 행정안전부 질의·법령해석 요청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 콜센터 이용

- 민원 신청 전,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행정안전부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사가 빠르고 편리하게 전화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 내용 : 주민등록, 지방공무원 채용·인사·보수 제도, 지방세, 지방계약 등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
-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업무시간 :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온라인 민원신청(질의·법령해석·고충상담)

- 온라인 민원신청에서는 업무 관련 질의 및 법령해석 문의, 고충상담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신청 전에 자주 묻는 질의(FAQ)나 유사민원 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우편/Fax 민원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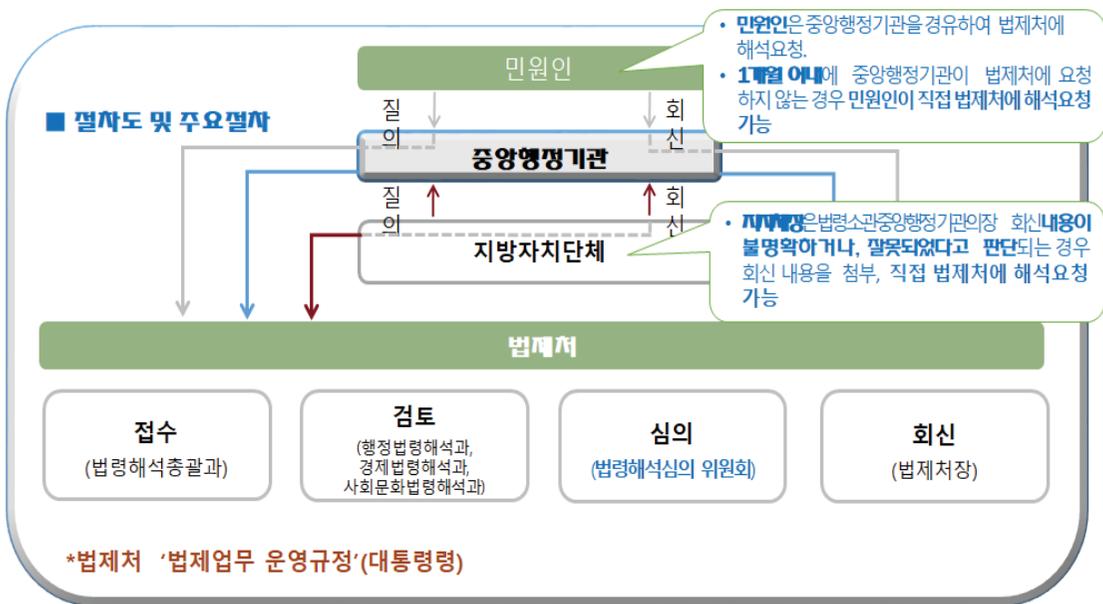
- 서류, 우편 등으로 민원신청이나 법령해석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보내주실 곳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KT&G) 807호 FAX : 044-204-8911

• 질의, 법령 해석 민원의 민원처리 기간
 * 단순질의의 민원은 7일, 법령해석 사항은 14일(근무일 기준)입니다.

◇ 계약법규(질의회신) 조회 사이트

- ①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서비스 - 계약법규 해석조회
- ② 조달청(www.pps.go.kr) - 참여.민원 - 종합민원센터- 질의 사례
- ③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 민원질의 응답

□ 법제처 정부유권해석 절차



2. 유권해석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재정관리과 -670, 2014.2.21.)

-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
-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 보충설명

* **지방계약법 적용 근거(이유)** : 조달사업법상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지체상금은 수요기관 수입, 수요물자 대금 직접 지급, **위탁물자 법 적용 근거 조항 무, 조달청은 요청기관의 계약 수탁자로서의 지위 (법제처 유권해석)**

*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조항**에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명시** ('09.2.6 전문개정)

* 계약법구분	<input type="radio"/> 국가계약법 <input type="radio"/> 지방계약법 * 귀 기간이 적용받는 계약법을 선택하세요.
*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부정당제재위임여부	<input type="radio"/> 위탁 계약 건에 대해 조달청장이 부정당업자 제재 <input type="radio"/> 위탁 계약 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당업자 제재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그 업무를 조달청에 재위탁 시 적용되는 법률은?

- 지방계약법 적용(계약제도과-895, 2016.6.30)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관련(재정관리과 -670, 2014.2.21)

- (질의) 예산확정 전인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이 아닌 계약준비 단계인 입찰공고는 실질적인 계약상대가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예산 확정 전 계약준비 단계인 입찰공고의 가능 여부, 긴급한 재해복구, 임차, 운송, 보관계약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인 경우 회계연도 시작 또는 예산배정전이라도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하며
-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예산확정 전이라도 계약사전 절차인 입찰공고는 가능

☞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예정가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공고문에 명시, 입찰공고 후 확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예정가격이 변경 되는 경우 ⇒ 공고취소 후 새로운 공고**

※ (고려사항) 낙찰자 선정 시점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나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재공고 가능성, 공고기간, 낙찰자 선정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고시기 등 결정 필요(특혜 시비 발생 여지)

◇ 보충설명

< 관련규정규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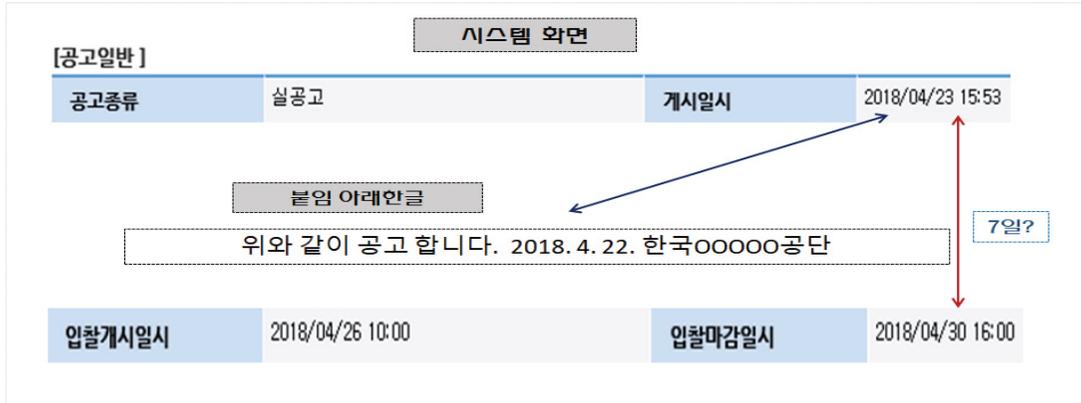
❖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 제2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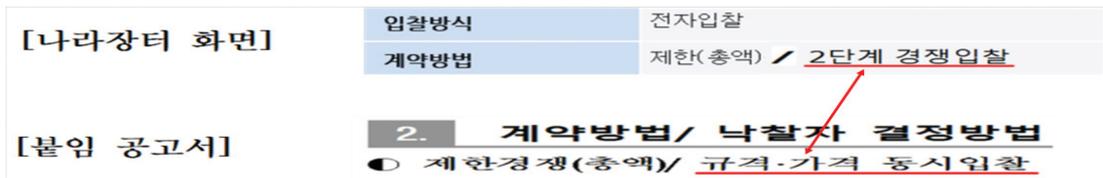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질의 1) 일찰공고일이 나라장터 시스템과 붙임 아래한글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우선 순위는 ?



(일반질의 2) 낙찰자 결정방법이 시스템화면과 붙임 공고서가 상이한 경우 - 우선적용 순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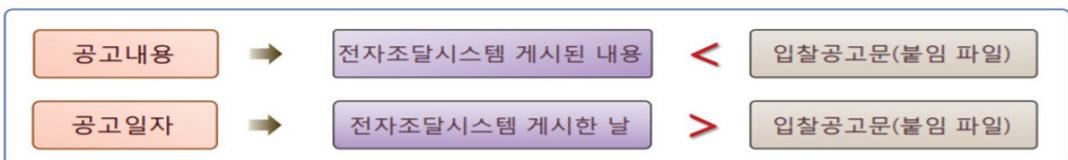


◇ 보충설명

◆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 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③]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 (퀴즈) 규격가격동시 입찰에서 2인이 기술평가 적격을 받았는데 가격개찰 결과 모두 예가를 초과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재공고 입찰, 2. 가격 재입찰

○ 만약 동 입찰에서 기술적격자가 1인인데 가격개찰 결과 예가 초과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 ⇒ 재공고

◇ (일반질의) 공공기관입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이면 조달요청해야 한다고 공공기관운영법에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고시금액은 추정가격 2.2억원 인지 ? 6.7억원 인지요 ?

▶ 추정가격 2.2억원을 말함- 공공기관운영법제44조제1항에서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라고 명시

▶ 추정가격 6.7억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해당됨

↑
국제입찰의 범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입찰 대상물품·용역 범위에 대한 고시금액(2023.1.1.시행)

구 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 고
물품·용역	2.1억원 →2.2억원	3.3억원 →3.3억원 (변동없음)	서울,부산,인천 기초자치단체 6.5억원 →6.7억원
공기업·준정부기업 (지방기업)	6.5억원 →6.7억원	6.5억원 →6.7억원	

예비가격 개수에 대하여(공개번호 121317 - 2014. 01. 14)

- (질의) 예가 산출 시 기초금액의 ±2%와 ±3%를 적용하는 근거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총 예비가격개수 및 추첨 예비가격 개수, 기초금액 기준, 상·하위 분포 등은 각 기관이 달리 정할 수 있음
따라서, 동 분포비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사항임
-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5조(복수예비가격의 입력)

◇ 보충설명

***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30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3절)**

- 국가기관 :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작성 (상위 8, 하위 7)
- 지자체 :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작성 (상위 7, 하위 8)

☞ 2개씩 추첨(입찰자)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뽑힌 번호순으로 4개 선정, 4개 산술평균 (예정가격, 비공개 원칙)

***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의 법적 근거 없음**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 기초금액→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

☞ 시행경과 : ①'93.5.20, 예비가격 2-5개 작성, 1개 추첨, ②5개 작성, 2개 추첨 평균, ③10개 작성, ④15개 작성

예정가격	273,912,425		기초금액	273,200,000	
구분	금액	추첨횟수	구분	금액	추첨횟수
추첨가격 1	275,601,500	0	추첨가격 2	271,055,400	1
추첨가격 3	276,366,400	0	추첨가격 4	277,448,300	1
추첨가격 5	274,978,600	0	추첨가격 6	271,394,200	0
추첨가격 7	273,134,500	1	추첨가격 8	268,151,300	0
추첨가격 9	270,219,400	0	추첨가격 10	269,399,800	1
추첨가격 11	276,686,100	0	추첨가격 12	272,620,900	0
추첨가격 13	269,047,400	0	추첨가격 14	274,011,500	2
추첨가격 15	278,582,100	0			

◇ 기초금액 공개 시기는?

토,일,공휴일 제외, 10~17시

입찰개시일시	2017/10/16 10:00	← 48시간 이상 →	입찰마감일시	2017/10/19 12:00
개찰(입찰)일시	2017/10/19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17/10/18 18:00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물품분류로 투찰제한 할 경우 해당물품을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제조(공급)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30조
입찰개시일 전날부터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개한다. 다만, **공고기간이 7일 이내 또는 긴급공고**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입찰개시일 전날까지 공개가 가능**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전자조달법시행규칙 2조(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 전자입찰서의 접수시작 일시부터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까지가 **최소한 48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를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수요기관이 정한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목적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를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 **개찰 일시**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난 때**로 한다.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의 여부

- (질의) 입찰참가 시 도급한도액의 적용은 참가업체의 투찰 도급액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참가업체의 투찰 도급액 중 부가가치세(10%)의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 것으로 인정됨.

예정가격에는 다음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함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농어촌특별세(5가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 등)제1항」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 등)제1항」

◇ 보충설명

◆ 면세사업자에 대한 업무처리 및 입찰공고

업무처리	공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 결정시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공제 후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면세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제외

✓ **개정이유**

- 연구기관과 **연례적으로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이 일부 불용되는 사례 발생

✓ **개정내용**

- 면세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작성시 부가가치세 제외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18.6.7

타 기관에서 계약한 단가를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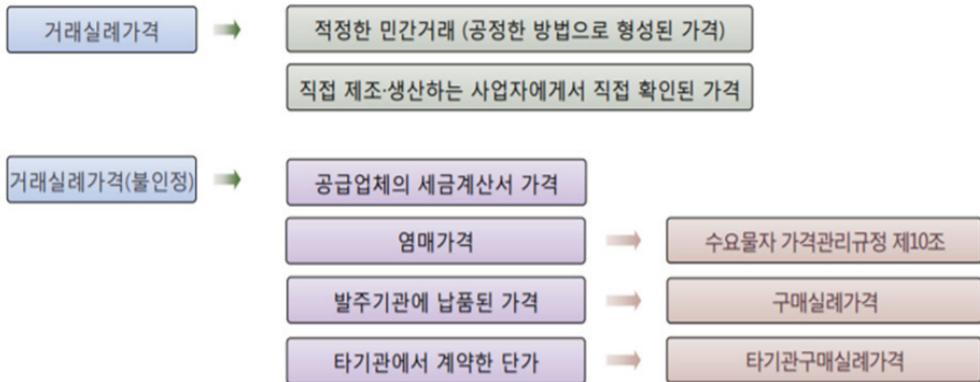
- (질의) 타 기관의 계약단가 등을 검토하여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에 의거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를 질의합니다.
- (회신) 거래실례가격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자” 라 함은 동 물품을 직접제조·생산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타기관 계약단가 ≙ 거래실례가격

- ☞ **거래실례가격** :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
- ☞ **구매실례가격**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구매한 가격은 담당자별, 품명별 기초금액 사정을 상이

◇ 보충설명



- *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 권고사항(기재부 '15.3.25)**
- ① 덤핑가격 ② 직전 낙찰금액 ③ 다른 공공기관 낙찰금액 ④ 다량납품 할인행사 가격(다수공급자) ⑤ 염매가격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중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회계제도과-438호)

□ (질의) 지역제한으로 용역입찰을 진행하는데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 중 G2B상 경쟁입찰참가 등록증상 영업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지역제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회신)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2017/09/05	
공고종류	실공고	계시일시	2017/09/06 14:10
입찰개시일시	2017/09/15 10:00	입찰마감일시	2017/09/19 10:00
개찰(입찰)일시	2017/09/19 14: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17/09/18 18:00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물품분류로 추찰제한 할 경우 해당물품을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제조(공급)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자	2017/10/19	계약기간	20180216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경쟁입찰 유찰(1차) 시 새로운 입찰로 집행 가능 여부(법제처 07-0450)

- (질의) 경쟁입찰(1차)이 유찰된 경우에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 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 (회신)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보충설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공고 및 재입찰) / 지계법 시행령 제19조

- ① 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조달시기 상실, 부대비용이 가중을 방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계약을 처리하면서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의무부과 규정이 아님)

- ▶ 따라서,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입찰자들이 입찰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면 입찰참가 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 집행 가능

1차 입찰 유찰 후 변경조건으로 2·3차입찰공고 후 수의계약
(법제처 16-0305, 2016.7.11., 감사원)

-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로 유찰이 되는 경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제1항(일반경쟁 등 경쟁입찰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회신) 1차 입찰이 유찰된 후에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2차 및 3차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된 경우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

규정 취지는 경쟁(일반, 제한, 지명)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과 같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은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차, 3차 공고는 재공고가 아닌 <새로운 공고>에 해당

낙찰 하한을 잘못 적용 후 개찰 여부(행자부 공통교재 -2012)

-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낙찰하한률을 잘못 적용하여 개찰하였으나, 낙찰자 결정은 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입찰 진행절차는?

- (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각 평가기준별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낙찰 하한률이 결정되며 낙찰 하한률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통보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질의사항과 같이 낙찰자 결정 이전에 가격평점산식(낙찰 하한율)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지 했다면 가격 평점산식(낙찰 하한율)을 재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적격심사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낙찰 하한율을 잘 못 기재하여 공고된 경우 ⇒ 새로운 공고**

5. 낙찰자 결정 방법

-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 84.245%)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8-36호, 2018.03.29.)」,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 “육상운송용역” 분야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복수예비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 상하 범위를 잘못 입력(±3 ⇒ ±2)한 경우?

□ **가처분 이의(대법원 2010.4.8. 자 2009마 1 결정)**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가처분 이의 [대법원 2010.4.8. 자 2009마1 결정]

【판시사항(대법원)】 ☞ **복수예비가격 상하 범위를 잘못 입력(±3을 ±2로 입력)**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입찰절차에서 개찰이 실시되어 최저가격 입찰자가 가려졌으나,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시행자가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전자입찰에서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복수예비가격의 상하범위를 입찰공고와 달리 기초 금액의 ±2%로 입력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로 인하여 기초금액의 +2%와 +3% 사이에서 또는 -2%와 -3% 사이에서 예정 가격이 결정 될 것으로 예상하여 그 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입찰한 업체들은 원천적으로 낙찰 가능 범위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그러한 입찰자가 전체 입찰참가자 중 소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상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개찰이 이루어져 최저가 입찰자가 가려진 상태라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인 계무자는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입찰결과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중대한 하자에 다른 입찰취소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109호)**

- (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당초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에서는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거나 특정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제한경쟁 입찰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에 회계예규를 위반 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낙찰자 결정 전에 당해 입찰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제4항 단서에 제한해서는 안되는 사항 11가지 명시

☞ **제한경쟁입찰에서 참가자격 제한사항이 계약예규를 위반하는 경우 모두 중대한하자로 볼 것인지?**

* 계약체결 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예규 위반(공급확약서 미제공, 특정모델 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소송을 제기, **정부가 패소하는 사례 발생**

계약체결 전 1순위업체의 계약무효사유 발견 시 계약절차(계약제도과-1587호)

- (질의) 계약체결 전에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6조제10항에서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 체결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성립될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 하고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차순위자 순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기재부) 불필요한 재공고·재입찰 절차의 생략을 통한 국가계약의 적시시행 확보(사업차질, 비용발생 등 문제점 방지)

◇ 보충설명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⑩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 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2절 입찰절차 - 17. 낙찰자결정 - 차

◇ 부적격자의 범위? → 입찰무효(참가자격이 없는 자 등), 부정당제재, 영업정지, 부도, 허위 적격심사서류 등

☞ 발주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결정된 낙찰자 또는 어위서류 제출 등 입찰 무효로 판명된 낙찰자 등과 같이 원래부터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의미(기재부 개정 이유)

계약체결 이후에 후 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안전행정부)

□ (질의) 물품구매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적격심사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을 취소한 경우 후순위 업체를 심사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는지?

□ (회신) 적격심사에서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당초의 입찰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질의 사항과 같이 계약체결 한 후에 적격심사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에 부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해당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 할 수 있음) ⇒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에 해당

◇ 보충설명

<p>◆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p> <p>제10조(부정한방법으로심사서류를제출한자의처리)</p> <p>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p> <p>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p> <p>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p> <p>* 미제출자의 처리(삭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 - <2019.12.18. 개정></p>	<p>◆ (행정안전부 예규)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p> <p>제2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p> <p>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제출자와미제출자처리방법</p> <p>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p> <p>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p> <p>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집행기준” 제9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해제·해지)</p> <p>2.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p> <p>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p> <p>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다.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p>
---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적격심사 제외 여부(회계 41301-845)

□ (질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중에 있는 A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될 경우 A사를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부적격처리)하고 차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사의 부정당업자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현재 심사중인 A사의 적격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 (회신)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격심사 당일 현재 동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동 적격심사 대상자를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봄.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심사자료 제출기한 : 5일 이상(보완 - 3일 이상)
- 적격심사서류 평가 :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 부터 **7일 이내에 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 심사자료 제출기한 :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일
- 적격심사서류 평가 :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추진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의무 여부(계약제도과 -30)

- (질의) 물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1차 유찰(단독입찰)되어 재공고 결과도 단독업체만이 입찰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없이 사업부서에서 직접 적격 여부를 판단해도 되는지?
- (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귀 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정한 세부 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동 시행령 제43조 제8항 본문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보충설명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 ⑧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제안서가 적합한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수요기관의 장이 한다.

협상계약의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 여부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개시) / 협상계약체결기준
- ☞ 협상과정으로 제재대상 아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 (질의)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의 경우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협상범위 및 절차는?
- (회신) 협상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상적격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당해 입찰이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유효한 협상 대상자에 해당되며, 협상적격자중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2조에 따른 가격협상 시



☞ **2019.12.18.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보충설명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p>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p> <p>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p>	<p>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p> <p>①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p>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제5장 3절)**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 받은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

□ (질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서는“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동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인용결정으로 제재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동 규정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부정당제재처분 집행정지를 받은 자는 부정당제재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자로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 보충설명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② ...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조달청) '16년 소송 396건(본안 199, 집행정지등 165, 행정심판 32), 부정당업자 제재 442건

- 집행정지 등 인용율 : 94%, 즉시항고('14.1.-'15.12. 기각 등 92.7%, 재항고 90.7%)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계약 미 체결의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 여부
(계약제도과-325, 2014.03.05.)**

□ (질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타 계약 건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예정인 경우로 발주기관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 처리방법은?

☞ **입찰보증금 국고(지자체)귀속 대상 여부**

□ (회신) 낙찰자가 타 계약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발주기관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은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할 것입니다.

*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7항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됨. / 지계법 영 제92조제9항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병과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제도과-1192, 2013.09.11.)**

□ (질의) 계속된 지체로 인한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을 전액 국고 귀속 하는지, 지체상금을 징수한 부분을 제외한 최종 미납품에 대해서만 일부 국고귀속하는지 여부?

☞ **단기계약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도 도입('13.12.30) 전 유권해석**

□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동법 제26조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이행을 완료하였다라도 계약보증금은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지체상금은 계약의 지체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병과될 수 없음.

◇ 보충설명

- ❖ **일부 지체이행(지체상금 부과) 후 최종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예지하는 경우**
 (과거) 계약보증금 전액 몰수(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체상금 반환 ⇨ 유권예석(병과할 수 없음)
 - ❖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분할 계약이행시 **이행 완료분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않음**(영 제51조⑤ '13.12.30 신설) / 지계법 영 제54조⑤)
 - ✓ (단가계약) 일부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몰수, 지체 이행부분은 지체상금 부과**
 - ✓ (총액) **계약보증금 전액 몰수, 지체상금(지체이행)은 반환 ⇨ 유권예석(병과할 수 없음)**
- ※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 예정액 담보물로서의 기한내 뿐만 아니라, 기한경과 후 이행지체도 담보에 포함

예정가격 기초자료가 잘못 책정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질의) 설계용역입찰에 있어 설계용역비의 예정가격 산출 기초가 된 설계 대상 목적물에 대한 공사비 산정의 잘못으로 예정가격이 낮게 책정된 경우의 입찰에 있어 계약체결된 이후에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가능하다,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가 되는 가격자료(설계용역 대상 목적물의 추정 공사비)작성의 오류 또는 예정가격 조서 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음.

◇ 보충설명

- ◆ **계약의 확정 유무 : ①확정계약, ②개산계약, ③사후검토조건부계약**
 - * 영 제70조(개산계약 :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공공기관과의 관계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계약,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
 - * 영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 **계약금액조정 : ① 물가변동, ② 설계변경(공사량의 증감 발생), ③기타 계약내용 변경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 ⇨ **용역계약금액조정 : ① 물가변동, 기준노임단가 변동, ② 과업내용변경, ③기타 계약 내용 변경(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실시 시기(법제처 15-0765, 2016.2.24., 경기도)

- (질의)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절차 중 어떤 것을 먼저 실시해야 하는 지? (우선 순위)
- (회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함

청문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 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 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를 말한다.

(법제처 2008. 11. 10. 회신 08-0337 해석사례)

이와 같은 최종 검토 절차로서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 성질 및 사전 의견 청취 절차로서의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문 등의 의견진술 절차를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그 후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등 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해당 처분을 위한 최종 절차인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6.] ⇒ **강행규정**

견적서 제출한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제도과-969, 2013.7.23)

- (질의)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 ☞ 소액수의 전자견적공고 결과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미체결 시 제재 여부
- (회신)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 정보처리장치(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충설명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 수의계약 진행 절차(입찰 x)

① 수의계약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서 청구

- 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여성·장애인 기업 5천만원) 인 경우 1인 견적 가능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등)** ①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서와 전자견적서의 차이는 ?

- ◆ 서식 차이는 없음 규정상 전자입찰서를 전자견적서로 간주함
 - ✓ (전자조달법시행령 제5조) 경쟁입찰에서 제출하는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를 전자입찰로 규정
 - ✓ (전자조달법시행령 제6조) 전자공개수의계약에서 제출하는 전자적 형태의 견적서를 전자견적서로 규정(1항)
 - ☞ 동 제6조 2항에 이 경우 제5조의 전자입찰서를 전자견적서로 본다 라고 명시
- ◆ 국가중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2조 (수의계약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특례)
 - ✓ (전자공개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의한 수의계약을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 계약 체결하는 경우를 말함(1항)
 -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취지: 계약체결의 공정성, 편의성을 위해 이용
 - ✓ (견적서) 전자공개수의의 입찰 방법으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며, 이때 제출한 입찰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1항의 견적서로 봄(2항)
 - *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항: 수의계약 時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함

◇ 소액수의계약과 입찰 비교

국가·지자체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입찰
적용 대상	추정가격 1억원 이하(물품·용역)	금액기준 없음
공고 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명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입찰 공고'
공고기간	3~5일	7일(긴급 : 5일)이상
입찰보증금	납부하지 않음	납부
계약상대자 결정	낙찰하한을 적용 - 2천만원 초과 : 88%(단순노무용역) : 90%/2천만원 이하 : 90%(지방)	최저가, 적격심사 등
제한범위	- 지역제한 및 기타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중복제한 불가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상대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되지 않음 - 단,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와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없음(2015.7.20.부터 시행) -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입찰·계약보증금 세입조치

허위실적을 제외하고도 적격심사 납품실적을 충족하는 경우 부정당제재 여부

- (질의) 일부 허위실적을 제외한 실적이 적격심사 납품실적을 충족한다면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가능한지 ?

-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허위서류가 적격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문 하고)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계약체결이전 적격심사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재공고 후 수의계약 업체 선정(계약제도과-201.04.02)

- (질의) 3번 유찰된 경우 입찰에 참여했던 제안사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제안사(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안사)와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 (회신) 최초 및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모두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이 때 수의계약대상자를 반드시 당초 입찰자(최초 또는 재공고입찰)에 참가한자로 한정한다거나 동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자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은 없음

- ☞ 모두 가능함, 단 당해 입찰참가자격이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적격업체이어야 함

수정공고 시 적격심사 기준일 여부

□ (질의)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정공고를 한 경우 계약이행능력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최초 입찰공고일인지 아니면 수정공고일인지 여부 ?

□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5항에 따라 각 적격심사의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입찰 공고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정정공고한 경우에는 정정 공고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는 한 심사항목별 기준일은 최초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수의계약 가능 여부 (행사부 교통교재 - 2012)

□ (질의) 우리 市에서 ○○호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긴급 발주하려고 하는데, 원가계산을 하여 보니 11억원이나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6억원에 불과합니다.

○ 그런데, 마침 우리 시에서 도시기본계획 관련 3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A업체에 문의하여 보았더니, A업체는 예산의 절반인 6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A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 (회신) 예산부족 사유로 수의계약 ⇒ 법령에 근거 없는 수의계약은 불가

◇ (언론보도 사례) ‘홍보지 쪼개기 계약’ 00군, 주의 조치
5년간 58차례 수의계약 체결,
감사원 “예산 1억1천만원 낭비”
00군이 군정 홍보지 제작과 관련해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쟁입찰 대신

매달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체결방식을 고수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주의'를 받았다.

5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00군은 2013년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연간 2억여원 상당의 군정홍보지 제작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경쟁방식 대신 매달 분리발주를 통한 58차례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총 10억7천6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하지만 군정홍보지 제작은 매달 중복되는 사업으로 경쟁방식 발주를 해야 함에도 00군은 '수준 높은 홍보지를 제작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수의계약 체결을 고수해 경쟁입찰 대비 최대 1억1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홍보지 제작과 관련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자체는 00군이 유일하다.

3. 감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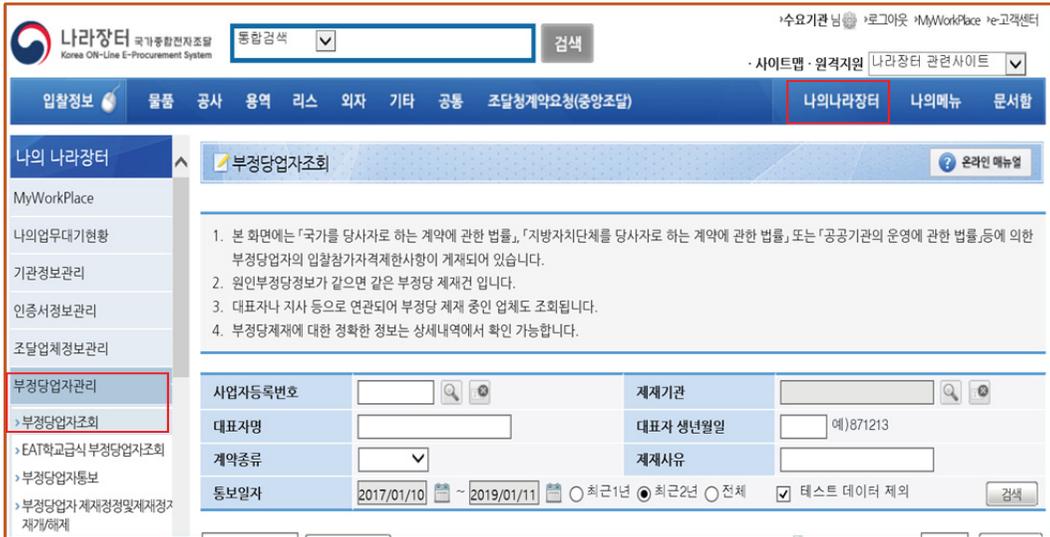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업체와 계약체결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관서는 [표]와 같이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주)△△업체 등 2개 업체와 '▲▲ 프린터' 등 구매계약 2건의 계약(총 계약금액 27억 3,756만 원)을 체결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장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부정당업자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납품(판매)실적 증명원 부당 발급 및 계약체결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는 ▲▲엘리베이터로와 “승강기 부분교체 및 유지보수공사” 계약(총 계약금액 2,504백만 원)을 맺고 같은 해 12. 15. 준공
- 실적증명원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부분교체공사이므로 발급을 거절하여야 하는데 부분교체 공사를 물품납품 실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또한 실적금액도 실제 1,294,216,720원보다 862,811,148원 많은 2,157,027,868원으로 기재하여 발급

[표] 부분교체공사 계약업체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약일	계약상대자 (대표이사)	분담비율	총계약금액	부분교체공사 해당 금액	유지보수공사 해당 금액
2010. 7. 26.	OO 엘리베이터(주)	60	1,502	1,294	208
	△△ 이루어이엔씨(주)	40	1,002	863	139
합계		100	2,504	2,157	347

- 그 결과“부당 발급한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BL 아파트 승강기 제작 및 설치”등 총 4건의 계약을 낙찰(총계약금액 4,210 백만여 원)받음

□ 조치할 사항

- 부분교체공사 실적을 물품납품(판매) 실적으로 기재하고 실제 실적보다 부풀린 실적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제 증명서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고
-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물품구매 관련 적격심사업무 처리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1.물품 납품이행능력이. 이행실적 주6)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 대금지급서류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 관서는 △△업체가 민간실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2가지만 제출하였으나 △△ 업체에 물품을 공급했다는 업체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받고 그대로 실적 인정
- 이행실적 여부를 관할세무서에 확인결과 거래내역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이행실적은 93,500,000원에 불과, ○○○ 관서에서 실적 증명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적격심사에서 탈락했어야 △△업체가 86.2점을 받아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다른 업체는 낙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 조치할 사항

- ○○○ 관서는 적격심사 업무를 수행할 때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 실적증명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출처	조달청		
	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계약 및 납품 내용								
구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약 내용			납품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공고일과 대비 분할계약-납품인영		부가세 포함여부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	상세 설명 규격 구제 명시							
	민간실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필요시 발급받는 기타 거래시실역인서(인감증명 첨부)							
증명원 발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기관명 :				(인)	년 월 일		
	주소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Fax번호 :		
					담당자 :			

계약해제 업무 부담 처리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방법으로 계약 체결된 PP매트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
- 수요기관으로 부터 계약자인 ○○실업이 공장(생산시설)을 매각하여 계약 물품을 납품할 수 없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취소가 되는 등 “업체 사정에 의한 납품 포기로 계약금액 1억여 원을 감액”해달라는 계약변경 요청을 받음
- 이 경우 “계약업체 사정에 의한 납품 포기”란 계약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계약해제’와 함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나 다른 조치없이 1억여원을 감액하는 계약변경조치를 하고 위 계약 건을 종결 처리

□ 조치할 사항

- 계약해제 업무 등을 부당 처리한 관련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계약자인 ○○실업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리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종합시스템 구축용역(8억여원)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요청 문서를 접수하여 계약을 해지(2015.12월) 한 후, 계약자인 (주)○○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지 않음
- 계약자로부터 동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 종료 후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음

□ 조치할 사항

- 본 계약 건과 관련한 경찰 및 검찰 수사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후 즉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조치

납품 기한 경과 건 계약관리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30조 등 지연 배상금(지체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 계약이행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징수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조치할 사항

- 납품기한이 경과한 계약 건에 대하여는 수시로 계약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계약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요기관으로 부터 계약이행 요청 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처리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선금지급)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선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시에서는 심의회에서 13.7.30, 1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결정한 (주)△△ (대표 BL)에 대해 심의 종료후로 부터 64일 지난 같은 해에야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작
- 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늦추어지자 위 업체에서 같은 해 8.30, 9.17에 2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또한 선금 340백만원을 수령하게 할 수 있게 되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실효성을 저하시켰음

□ 조치할 사항

- ○○시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지체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효력발생 시기(부정당업자제제 세부 운영기준 제6조)**
- 부정당제제기간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
* 처분 결정 즉시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후 해당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단위기관에 통보 필요**
☞ 처분 결정 통보<문서시행> 및 시스템 게재 후 처분개시일 사이에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방지**

보증보험증권 미확보 등 계약관리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05.12월 A사와 주차제어설비 구매계약(7억여원)을 체결하고 '07.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면서 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의 채권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기간만큼 보증기간도 연장한 보험증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증기간이 연장된 보험증권을 받지 않은 채 동 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만 붙여 이행기간을 연장하였을 뿐 아니라, 연장조치 이후에는 같은 해 5.26 보험증권의 제출을 촉구만 하였을 뿐 보증기간 종료일(같은 해 5.30)이 지난 후에도 이행보증증권을 추가로 징구하거나, 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해제 후 보증 회사로부터 보증기간 경과 등 사유로 보증금 청구 건이 지급거절 당하는 사례가 있었음

□ 조치할 사항

- 보증기간을 연장한 보험증권을 받지 아니한 관련자 주의 촉구

특허사유 부당 수의계약 체결

□ 현황 및 문제점

- ○○○ 공사는 2014년 11월26일부터 ○○지방조달청을 통해 A주식회사 제품을 특허 사유로 △△ 조성공사 방음판 구매를 5억2천7백만원에 수의계약한 후 2014년 12월31일 납품받음
- 그러나 ○○○ 공사는 인천지방조달청의 보완검토요청을 받은 후 이 특허제품과 같이 탈부착이 가능한 대용 대체용품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개척하지도 않은 심의위원회에서 대체 대용품이 없어 이 업체의 특허제품으로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수의계약요청서를 작성한 후 특허제품을 명시하지 않은 공사이방서

대신 이 업체의 특허제품 시방서를 첨부해 2014년 10월27일 인천지방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다시 요청

- 그 결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이 특허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이 업체에 특혜를 줬다.

□ 조치할 사항

- 특정제품을 수의계약하기 위해 수의계약요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모부장 외 2명을 공사인사 규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라고 통보**

<p>○ 특허 등 수의계약 요청시 관련서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수의계약 사유서 : 사용목적, 용도, 대용·대체품 확인 여부, 특허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명시, 직인 날인 여부</u> * 위 항목이 누락된 경우 특히 <u>직인날인이 없는 경우(부시장 또는 담당자 서명은 불인정)는 반드시 보완 요청</u> * 필요 시 특허 등 제품 선정에 관한 타사제품과의 성능비교표와 내·외부 심의회, 경진대회를 통한 선정결과보고서 등 첨부 - <u>규격서 : 특허 등의 기술 반영여부 확인</u> - <u>권리관계 서류 :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증, 원부, 공보 등</u>

지체상금을 적용 부적정(조달청 자체감사)

□ 현황 및 문제점

-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1,000분의 0.75를 적용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율)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1천분의 0.75

- ○○ 지방청에서 ○○대학교 수요 학술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9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하면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지체 상금을 1,000분의 1.25를 적용하여 계약 체결하였음.**

□ 조치할 사항

-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를 적용하여 계약체결 및 동일 사항이 재발 않도록 전 직원 교육 실시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상대자 선정 부적정(조달청 자체 감사)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 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또한, 동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2항 2호에 따라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해야 함
- ○○ 지방조달청은 ○○ 시 수요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구매를 위해 최초 공고와 1차 및 2차 재공고 입찰(협상)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찰되어 수의계약에 의하면서,
- 최초 입찰 및 1,2차 재공고 입찰에 참가한 응찰자(2개사)가 협상적격자이므로 모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나,
- 2차 재공고 입찰에 응찰한 1개사의 제안서만을 수요기관에 검토하게 후, ‘적격’ 통보를 받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최초(16.3.22), 단일 ⇒ 재공고(4.11), 2개사, 예가초과 ⇒ 재공고(4.26), 단일

□ **최초(16.3.22), 단일 → 재공고(4.11), 2개사, 예가초과 → 재공고(4.26), 단일**
 * 1차 **재공고** 입찰 개찰(4.11) 결과 (기초금액 → 192,055,000원, ±3%)

업체명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10점)		종합 평점	비고 (입찰참가)
		제안가격	가격점수		
○○○○(주)	80.8475	195,000,000원	10	90.8475	최초, 재공고 2회 모두
㈜△△△△	78.7150	197,400,000원	9.8784	88.5934	1회 재공고

* 2개사 모두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 2차 **재공고** 단일응찰자와 수의계약('16.4.29, 191,000,000원), (○○○○(주))

계약보증기간 확인 불철저(조달청 자체 감사)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
-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 상의 보증금액, 피보험자, 계약기간 및 보증 기간, 기타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동 내용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를 접수하고 계약체결
- ○ ○ 청에서는 계약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계약서 내용과 상이하여 계약보증금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이를 보완 요구하지 않았음

【표】 계약서와 계약보증서 내용 비교

계약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계약서	계약보증서
			계약기간 개시일	보증기간의 초일
			계약기간 종료일	보증기간의 만료일
121720503	한국폴리텍1대학 성남캠퍼스	교육훈련장비 범용선반 구매	2017.05.01.	2017.04.28.
			2017.06.30.	2017.06.27.

7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 담당교수 | 김 연 일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INFORMATION

1. 검사·검수 개요	213
2. 대금지급	218
3.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220

1. 검사·검수 개요

(1) 의의

□ 검사(檢査)

-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 ※ (시험)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 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으로서 그 시험성적은 검사에 활용

□ 검수(劍水)

-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 인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1조)

-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 **인수**

(2) 검사공무원 확인 사항

□ 검사공무원

-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정부물품에 대한 납품검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

- ①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 ② 계약담당공무원
- ③ 검사 사무를 위임받은 당해 소속 공무원
- ④ 지정된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로 지정된 임직원

□ 확인사항(감사기준)

- 당해 물품의 설치·사용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시·군 조례 등
- 계약조건, 구매규격서, 설치시방서, 과업내용서 등 **계약서류** 요구 내용
- **2단계경쟁 입찰**(2단계 입찰) 또는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제안서)
- **종합낙찰제**계약인 경우에는 **품질 등의 표시서**
 -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쟁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협상에의한계약**인 경우에는 **합의된 조건 및 규격** 등의 내용 및 계약 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

□ 검사요령

-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 검사
-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
-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
-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

□ 검사면제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품
- 「조달사업법」 제3조의 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 ❖ **(예외)** 특약조건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납품검사 면제신청자의 결격사유

-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물품
 - * 단, 당해 기간 중 매년 1건 이상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
- 최근 3년 이내에 조달청의 납품검사나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상 통보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체한 업체

(3) 검사기한

□ 검사기한

-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완료하여야 함
 - * [국가/지방] '2412.31일까지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연장 3일) 한시적 운영
 - **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 가능
-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결과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 요구
 - *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위 검사기간을 계산

(4) 검사의 종류

□ 조달청 검사

- 계약상대자는 조달품질원 또는 지방조달청에 검사 요청
- 검사가 완료되면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 요청

□ 전문기관 검사

-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전문기관에 검사 요청
- 검사가 완료되면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 요청
 - * 조달품질원장과 문서로 사전 협의한 경우 수요기관 검사로 변경 가능

□ 수요기관 검사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

(5) 납품일자

□ 계약서(납품요구서) 지정 납품장소에서 검사요청

-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검사요청일
-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 최종 검사합격일
-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요청을 한 경우⇒ 최종 검사합격일

□ 계약서(납품요구서) 지정 납품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요청

- 계약상대자의 생산 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요청한 경우⇒ 검수 요청일

□ 일괄 검사

- 수 개 기관에 분할납품 조건으로 계약(납품요구) 하였을 때에 중앙기관에 일괄 검사 요청한 경우⇒ 검수요청일

<시운전 조건부 납품>

□ 시운전 검사

- 계약서에서 정한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함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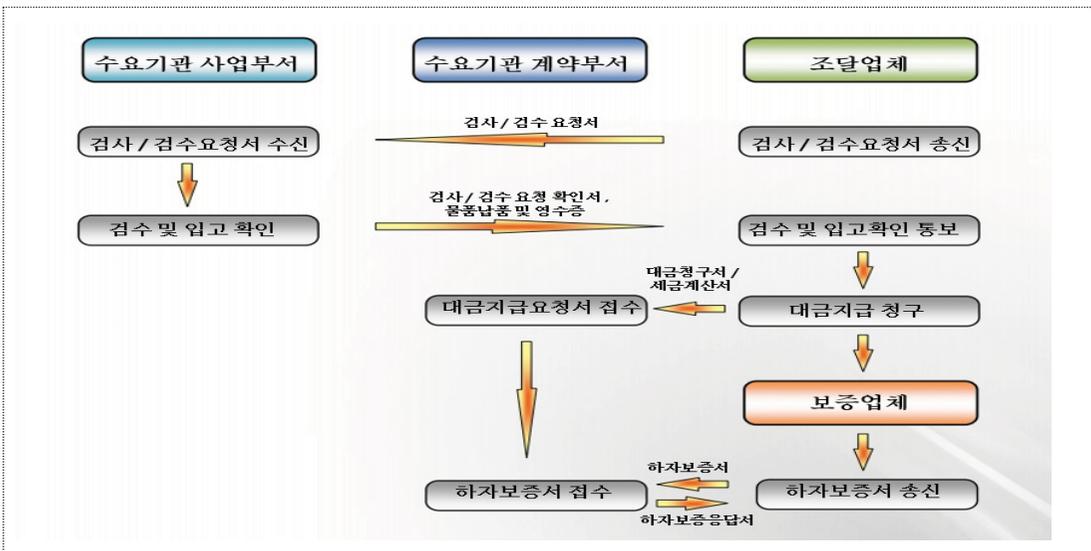
□ 납품과 납품영수증 발행

- 계약상대자 : 납품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계획 협의
- 수요기관 :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납품 및 영수증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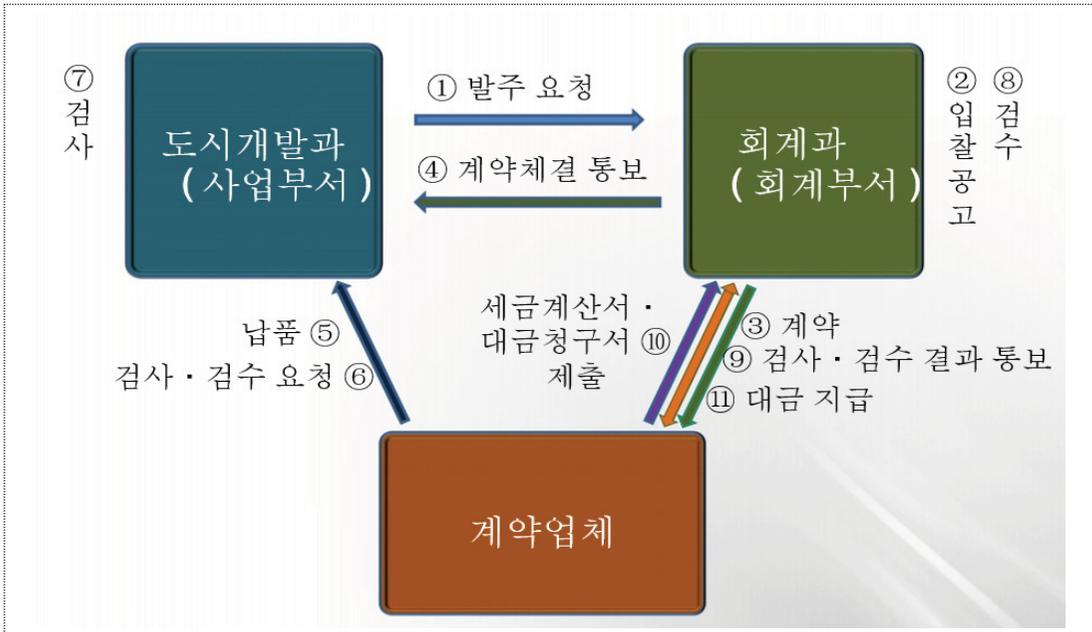
□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 물품의 성능 보증
- *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시운전성능 이행보증금) 을 물품납품 및 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
-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시운전 기간 만료일까지
- 성능이행보증금 수요기관 귀속 : ①시운전 불이행, ②시운전 연기에 따른 보증기간 연장 불응, ③시운전 결과 성능 미달⇒ 조치 불응 등

(6) 업무처리 흐름(검사·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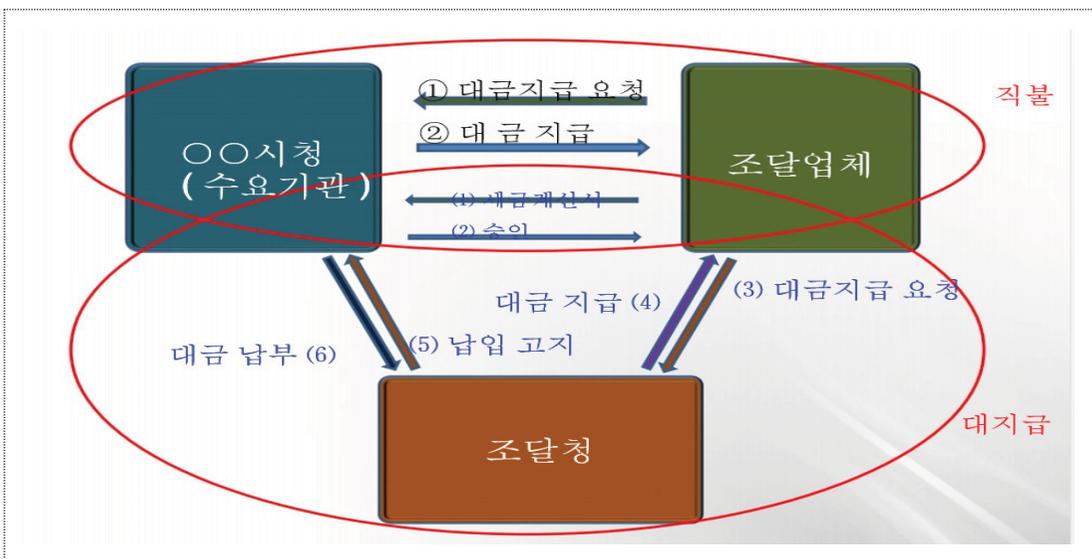


□ 업무처리 흐름(계약·종결)



2. 대금지급

□ 대금지급(직불·대지급)



□ 대지급의 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15조(대금지급)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방법, 자체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 (이하 “**대지급**” 이라 한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대지급의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3.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1) 종결업무의 개요

□ (종결업무) 총액계약 또는 단가계약 납품요구에 대하여 계약자로부터 정상적인 물품이 납품되어 이에 따른 대금지급 및 납입 고지업무 등이 완료

* 계약조건에 따라 유보금 등 미정산 잔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정산 완료하여야만 계약이 종결됨

□ 총액계약 종결서류(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서류는 전송)

- ① 계약자 청구서 / 통장 사본
- ②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③ 4대보험 완납증명서
- ④ 물품납품 및 영수증
- ⑤ 계약서
- ⑥ 시험성적서 등 기타 서류 원본

□ 단가계약 종결서류(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서류는 전송)

- ① 계약자 청구서 / 통장 사본
- ②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③ 4대보험 완납증명서
- ④ 물품납품 및 영수증
- ⑤ 시험성적서 등 기타 서류 원본

□ 유보금 해제 의뢰 서류

- 수요기관의 시운전 완료 문서 원본
- 또는 사후원가검토 계약조건에 따른 사후원가검토 결과서 원본

(2) 유의사항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확인

- 납세증명서의 제출 : 국세징수법 제5조

* 단, 국세 또는 지방세가 징수유예 된 경우에는 대금 지급 가능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 (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관련 대금지급 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 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 납세자가 계약 대금 전액을 체납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 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 세액 전액을 납부 하려는 경우

□ 종결금액 확정

- 금회 납품액
 - 금회 납품액 : 계약단가 × 금회 납품수량
 - 계약단가에 금회납품 수량을 금액이 “원” 단위로 발생될 경우 절사 (예 208 원⇒ 200 원)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 분할납품의 경우 최종 종결처리 시 금회 납품금액은 계약(분할납품요구) 금액에서 전회까지의 납품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
- ※ 분할종결 시마다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는 경우 , 해당 계약(납품요구) 건 종결완료 시 10원 내지 30원의 미종결 잔액이 남게 되어 처리 곤란

국고금관리법

제 47 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선금 정산

- 선금을 지급한 경우 **종결** 처리시 **선금지급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
- **분할종결**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비율에 따라 정산액**을 산정, 금회납품 금액에서 정산 처리

△ 선금정산액 산정 방법

$$\text{선금정산액} = \text{선지급액} \times (\text{금회납품액} / \text{계약금액}) \text{ or}$$

$$\text{선금정산액} = \text{금회납품액} \times \frac{(\text{선지급액} / \text{계약금액})}{* \text{"선금을"이라 함}}$$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 제 12 장 선금의 지급 등
제 37 조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 (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 지체상금 : 납품 지체 여부 산정

-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검수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검토
-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 : 「국가(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 공사 : 1000 분의 0.5 (0.5)
- 물품의 제조 · 구매 : 1000 분의 0.75 (0.8)
- 물품의 수리 · 가공 · 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 분의 1.25 (1.3)
- 군용 음 · 식료품 제조 · 구매 : 1000 분의 1.5
- 운송 · 보관 및 양곡가공 : 1000 분의 2.5 (2.5)

□ **지체상금 : 지체일수 산출**

- 검사요청일 기준을 적용하는 계약건의 경우
 - (적용) 계약서의 검사기관과 검수기관이 동일하고 **검사장소와 납품장소가 동일한 경우**
 - 지체일수(「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제1호)

- ① **납기 내 검사요청**,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 합격** 및 검수 완료
⇒ 지체일수 없음
- ② **납기 내 검사요청**, **납기 경과 후 불합격** 되어 **시정요구**(14일 이내)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사 합격한 날까지
- ③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요청**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합격 일까지

- (적용) 계약서의 검사기관과 검수기관이 동일하고 **검사장소와 납품장소가 상이한 경우**
- 지체일수(「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제1호)

- ① **검수요청**을 하고, 납기경과 후 검사완료⇒ 지체일수 없음
- ② **납기 경과 후 불합격**되어 **시정요구**⇒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요청 일까지
- ③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요청**⇒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 일까지

-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경우**
⇒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

[지체상금 상한 도입(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2018.12.4. 시행)]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분의 30을 지체상금으로 부과

- 납품 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1항

□ 유보금

-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원가계산서 및 투입 수량, 단가,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사후원가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 보증서(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월 이상)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유보금액은 대금청구서 작성 시 **대금청구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 ※ 유보금은 지급대상액 중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이행완료 시 유보금액을 해제하는 것으로 계약자의 추가 서류 제출이 없기 때문에 당초 종결서류에 유보금액을 포함한 청구서 제출

□ 감가액

- 물품이 계약규격 또는 견본과 부합되지 않으나 사용목적이나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감가규정」 제3조)

- 감가규정은 대개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에 적용되며, 대금청구서류 제출시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외부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함
- ※ 시험결과 납품된 물품이 계약규격이나 건본의 수준에 못 미치나 효용가치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시험 성적서에 “×× % 감가 조건 합격” 명시
- 종결담당자는 시험 성적서에 명시된 감가율을 납품금액에 곱한 금액을 감가액으로 시스템에 입력⇒ 지급 금액에서 차감
- ※ 최저 감가금액 : 65만원, 감가금액은 검사대상금액의 25% 초과 불가

지체상금 부과 대상액⇒ 감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조달수수료⇒ 감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 하자보수보증금 제도

- 국가계약법령에서의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일정기간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로서 예치하는 금액**
- 따라서, 보증의 성격상 **물품구매·용역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는 다소 **곤란** 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물품 중 현장설치를 해야 하는 등 물품의 특성상 일정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계약자의 하자보증 의무를 확보하고 있음

《물품구매 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규정 준용 여부》

- ①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4 조 (하자보수보증금)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
- ② 다만, 물품의 성질상 보다 특수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 질의회신, 회계 1210.3-253(1991.1.30.) -

□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제7항)
- 최종 종결처리 시 <물품납품 및 영수증> 하단의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확인란에 담당 공무원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 필수
- ※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방안이 거의 없으므로 최종 납품금액 지급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여부를 필히 확인
- ※ 성능보험 가입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가능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제1항 단서)

□ 하자담보책임기간

- 물품의 하자보수보증제도 도입⇒ 1996.2.1.(조달청)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 완료일)부터 다음과 같이 함(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어 협의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의함)
 - ① 인명과 관련되는 물품 : 3 년
 - ② 시스템장비 : 2 년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 제1항)
-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 제2항)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금액 및 형태

- 하자보수보증 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토록 조치, 납부형태는 입찰보증금 준용

- 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제1항)
- * (국가계약법령 적용) 100분의 3
(지방계약법령 적용) 물품제조 100분의 3, 수리·가공·구매, 용역 100분의 2
- 계약자가 최종 납품대가 지급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미지급 대가에서 공제·예치 가능
[질의회신 회계 2210-4672(1986.12.27.)]
-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할 수 없는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
[질의회신 회계 45107-449(1996.3.11.)]

□ 하자보수보증금 국고 귀속 및 직접 사용

- 하자보수보증금도 계약보증금과 같이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 가능, 잔액은 국고 납입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 하자보수보증금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고 보증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물품구매계약 품질 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제5항)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10년(개정 2020.3.31.)

□ 용역의 하자담보 및 A/S

- 용역 종류별 하자보수기간
 - 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내용 적용 제외
-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

□ 세금계산서 접수

- 계약자는 물품 납품 시 수요기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자가 수요기관에 직접 발행
- 종결담당자는 수요기관의 세금계산서 접수 여부를 필히 확인
- ※ 계약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의 탈세 방조효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체납 세금이 있는 계약 건 종결

- 시·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계약자에 대한 조달물자대금 지급 불가
 -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물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물품대금 지급관련 납세증명서 징구 제도 개선 시행(2005.1.28.)
 - 계약자가 수령할 물품대금이 체납 세금보다 많은 경우 계약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 대금청구서류와 함께 제출
 - 종결 시 체납세액을 공제하여 세무서에 고지서에 의거, 납부 조치하고 물품대금에서 체납액을 정산한 차액을 계약자에게 지급
- 관련 규정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5항
- 종결담당자 확인 사항
 - 계약자의 청구금액이 반드시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함

- 계약자가 제출한 「체납세정산처리요청서」의 붙임서류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체납세액 조회 화면 출력물”의 당초 고지 납부기한이 “1980.01.01.~ 청구현재일” 이고 세목이 「전체」 이어야 함
- 납부할 총 세액이 고지서상의 총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 청구금액이 체납세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에 직접 확인 (전화 또는 온라인)하여 처리
- 종결처리
 - 일반 물품대금과 동일하게 종결처리하며, 체납 세액만큼 지급유보 처리
 - 지급유보금액은 해당 체납기관의 고지서를 첨부하여 경리부서에 지급 의뢰함으로써 정산 완료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

다음과 같이 체납세 정산처리를 요청하며, 체납세 내역은 붙임 서류와 같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 체납세 내역

- 국 세 :	원
- 지방세 :	원
- 합 계 :	원

붙임 1. 체납세 납입고지서 1부.

2.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체납세액조회 화면 출력물 1부.

※ 체납고지서 출력 화면 접근 경로 : 국세청홈택스서비스→전자고지→체납세액조회
(체납세액조회 필수입력자료 : 당초고지납부기한은 1980.01.01~청구현재일, 세목은 전체)

201

조 달 청 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채권 양도·양수(讓渡·讓受)

- 양도·양수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것
- 양도·양수 사항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하여 쌍방 간에 합의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 공증을 받게 되며 이후부터 채권 양도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권리 상실

□ 채권전부(債權轉付)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채권을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 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
- 집행법원이 전부명령을 결정하면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채무자는 압류채권에 대한 권한을 상실

□ 채권추심(債權推尋)

-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수령하여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함
-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할 권리는 법원으로부터 부여 받으나 실제 추심 채권의 채권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또한 추심 채권을 이용한 기타 권한 행위를 할 수 없음

□ 채권 양도·양수 시 대금 청구서류

[대금청구서]

- 채권 양도·양수권 및 추심명령 권
 - 청구서의 우측 하단 부 계약자 주소, 회사명, 대표자명 기재란에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사용인감 날인
 - 지급계좌 정보는 양수인의 거래은행, 예금종류 및 계좌번호 기재

○ 채권 전부명령 건

- 채권 전부명령을 받은 업체가 대금지급권자가 되어, 청구서에 회사명, 대표자명, 지급계좌 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용 인감 날인

[물품납품 및 영수증]

-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는 원계약자(양도인)의 사용 인감 날인

[기타 양수인의 첨부서류]

○ 채권 양도·양수와 관련된 문서

- 채권 양도·수건 : 법무담당관실의 채권양도·양수 승인 문서
- 채권 전부명령 건 : 법원의 채권 전부명령 결정문
- 채권 추심명령 건 : 법원의 채권 추심명령 결정문

⇒ 시국세 완납증명서 : 온라인으로 확인 시 생략 가능

⇒ 인감증명서 : 대금지급청구서에 날인된 인감과 일치

⇒ 통장사본(원본대조필)

-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은 업체가 여럿일 경우에는 운영 지원과(지출) 에서 **법원 공탁절차**를 거쳐 물품대금 배분

8

계약일반
(계약체결·관리·보증금)

| 담당교수 | 김 공 진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INFORMATION

1. 계약체결	237
2. 계약관리	252
3. 보증금	324

제 1 장 계약체결

제 1 절 개 요

① 의의

-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변동(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서에 상호날인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계약의 원칙

〔 국가계약법 제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

- 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 나.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 상대자

- “계약상대자”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된다.
- 다만, 계약체결의 상대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동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질의회신, 회제 2210-4535, '86.12.18.]

④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가.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변동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약내용 및 계약조건과 규격(시방)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계약이행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나. 특히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이나 개산계약에 대하여는 검토 범위, 대상금액 및 계약금액 지급유보율, 검토기준, 금액확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7항]
- 라. 지역제한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절 계약체결 절차

① 계약 수락통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

- 입찰 및 수의시답에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낙찰자에게 계약 수락통지를 한다.
-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서류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① 인지세법에 규정된 해당금액의 인지(전자계약인 경우는 별도 납부)
- ② 산출내역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출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 ③ 기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 선정전에 낙찰예정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나라장터에서 조회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9조]
 - 적격심사대상 이외의 물품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 업체에 해당할 때에는 납품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납품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보증금의 현금 적립 등 계약이행조건을 강화한 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공동계약에 있어서도 공동참여업체가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업체일 경우에는 공동 참여업체를 건설한 업체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가 결정되면 전산(EDI)입력 후 정보관리과장으로부터 계약번호를 부여받고 낙찰자에게 계약수락통지를 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 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약보증금 수납의뢰는 전산입력에 의한다.

2 계약서 작성

가. 계약서의 구성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

-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된다.
 - 다만, 산출내역서는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납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한다.
 - 이 경우 낙찰자가 제출할 서류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다.

<계약서의 구성>

- ①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 ② 계약물품명세서
- ③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④ 물품구매입찰유의서
- ⑤ 규격서 및 시방서 등
- ⑥ 산출내역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⑦ 품질 등의 표시서(종합낙찰제 계약에 한함)
- ⑧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는 지급각서)
- ⑨ 기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나. 계약서 작성

- 1) 계약서의 내용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 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계약서 작성 부수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 제1항]
 - 계약서는 정본 1통과 부분 3통(보관용, 계약자, 수요기관) 총 4통을 기본으로 작성한다.
 - 감사원통보, 조달청검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수만큼 추가 작성한다.

- 2)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설정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항, 제3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일반조건 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상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부당한 특약금지>

- 원가계산 시 단가·물량 등을 잘못 계상한 때에는 계약상대방에게 동차액을 환수한다는 등 계약상대방의 계약상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질의회신, 회제 45107-342, '93.4.29.]
- 계약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내용 외에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약 또는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특약으로 정할 수 없음[질의회신 회제 45107-879, '96. 4. 29]

3) 계약서 첨부서류

-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 성능평가 표시서, 환경평가 표시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합낙찰제 세부운영기준 제9조 제4항]
- 2단계경쟁입찰 또는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규격제안서(보완규격서 포함)를 계약서에 첨부한다.
 - 다만, 계약서에「입찰시 제출한 규격제안서(보완규격서 포함)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가 됨」을 명시하고 규격제안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9조 제4항]

다. 계약서 작성 생략

-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9조]
- 이 경우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락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서류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0조]

③ 계약체결

가. 계약보증금수납 및 계약 구비서류 확인 [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 제1항]

-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 수납통지를 받으면 전산(EDI) 처리 후
-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계약일반조건, 입찰권유서, 규격서, 산출내역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및 기타 특수조건 서류가 첨부된 계약서 4통을 작성한다.
 - ① 인지세법에 규정된 해당인지(전자계약의 경우 별도납부)
 - ② 산출내역서(물품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나. 계약서 날인

-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매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구매계약관 직인과 계약상대자의 등록된 인감을 날인한다.(전자계약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같음)
 - 구매과장은 구매계약관 직인을 날인한 때에는 직인사용부에 기재한다.

다. 계약체결 기한

- 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로 하여금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포함)함으로써 확정된다.
- 전자계약인 경우에는 전자서명(2차 송신)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 계약실명제 시행 : 계약에 관련한 담당자 성명표기

마. 계약서 배부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 제3항]

- 계약담당과장은 계약내용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배부한다.
 - 기본배부
 - ① 계약자 1통(부분)
 - ② 수요기관 1통(부분)
 - ③ 운영지원과장 1통(정본)
 - ④ 보관용 1통(부분)
 - 추가배부
 - ① 감사원 1통(부분) *통보대상계약에 한함
 - ② 품질관리단장 1통(부분) *조달청 검사 경우에 한함
-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송신한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에 송신하는 것으로 배부에 갈음한다.

4 계약문서의 효력

가. 계약이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산출내역서의 효력

- 1)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 단서]

- ①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증감 조정할 경우[물품계약일반조건 제9조]
- ② 기성부분(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물품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4항]
- ③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물품계약일반조건 제11조]

2) 징구절차 [구매업무처리규정 제47조]

- ① 계약담당과장은 입찰 또는 수의시담 전까지 산출내역서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 ② 해당 계약담당과장은 산출내역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 진행에 앞서 응찰자에게 주지시키고, 낙찰통지 또는 계약수락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한다.
- ③ 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 확인한 후 계약서에 첨부되도록 한다.

다. 통지문서의 효력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항 및 제5조]

- 계약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3 절 낙찰자결정의 하자로 계약해지 시 처리

①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시 조치

- 계약체결 후 낙찰자 결정의 하자(입찰무효, 계약담당공무원의 과실 등)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계약법규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거나 필요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의 하자(입찰무효 등)로 인한 계약해지나 해제 시 일률적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입찰집행, 낙찰자 선정과정의 중대한 하자,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의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면밀 검토하여 후속 조치할 필요가 있다.

② 법규 및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장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의 유권해석도 일관되게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즉, 계약체결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나 해제가 되어도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③ 판례 검토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에 낙찰자 결정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나 해제가 된 경우에, 법규에 의거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치고 있으나, 실제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면, 계약상대자의 입찰무효(원인무효) 등 낙찰자 결정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해지나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 낙찰자결정과정에서의 과실 책임의 정도, 계약해지 시점(계약이행의 정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가. 계약체결 후 납품 미 이행된 사례

○ 인천지방법원, 결정 2007카합210, 2007.3.29

(사건내용) ○○지방청에서 매립폐기물처리용역 계약추진하면서 낙찰하한을 직상위 입찰자와 적격심사를 통하여 계약체결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어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을 무효로 하고 계약해지 한 후 법규 및 유권해석에 따라 새로운 입찰에 부치려 하자, 차순위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새로운 입찰에 부치지 말고 차순위자와 적격심사를 진행하도록 결정

- 입찰무효 등으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도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관련 계약예규는 내부지침으로서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위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반영되지 않는 한, 당해 입찰에 적용되지 않는다.
- 본건은 계약체결 직후에 부적격자로 확인되어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아직 계약이행이 진행되었거나 과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과 같이 새로운 입찰을 실시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새로운 입찰에 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납품완료)된 사례

<계약체결 후 낙찰자결정 무효의 따른 낙찰자 지위 확인관련 판례>

(대법원, 2002다50057 판결 2004.9.13)

(사건내용) 국방부조달본부가 물품적격심사를 통하여 최저입찰자와 계약체결하고 납품 완료된 상태에서, 차순위자는 동 계약자가 낙찰자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판결요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런 법리는 해당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 4 절 이의신청 처리

① 이의신청 〔 국가계약법 제28조 특례규정 제26조 〕

가. 대 상

- 1) 대상 금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물품 및 용역의 경우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 2) 이의신청 대상 범위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관련)
 - ②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국가계약법 제7조 관련)
 - ③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국가계약법 제8조 관련)
 - ④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관련)
 - ⑤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0조 2항 1호]
 - ⑥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0조 2항 2호]

나. 이의신청기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기한>

- ①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
- ②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 심사결과통지

- 해당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정(재심) 청구 [국가계약법 제28조 제4항,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223호)]

가. 대 상 [국가계약법 제28조 제4항]

-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통지된 이의신청 심사결과 또는 조치(상기 제1항 “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자격 [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제1호]

- 청구인은 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①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 ②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유자격자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특례규정 제10조 관련)
 - ③ 당해 입찰을 행한 자
 - ④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⑤ 기타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다. 조정(재심) 기관 [국가계약법 제29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1조, 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 1) 명칭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2) 소속 :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지방법:지방령 제111조, 행정안전부)
- 3) 구성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재정 관리관으로 하되,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국고관리국장, 국방부 계획예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으로 한다.

라. 조정(재심) 청구기한 [국가계약법 제28조 제4항]

청구인이 재심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마. 조정(재심) 청구방법 [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쟁조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 ②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③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중앙관서
- ④ 이의신청 내용, 중앙관서장의 조치결과, 조정 청구사유
- ⑤ 기타 증거자료 및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등

바. 조정(재심) 청구서 처리

1) 처리기한 [국가계약법 제31조 제1항]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2) 처리구분

가) 각하 [위원회운영규정 제14조]

○ 위원회는 재심(조정) 청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청구인 적격 등 조정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조정청구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 ③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④ 그 외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리

(1) 재심 착수통지 [위원회운영규정 제13조]

○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청구서를 수리하고

-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청구서 보완 [위원회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 위원장은 조정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3) 의견서 제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 재심 착수통지를 받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그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계약절차의 중지

국가계약법 제30조제2항 위원회운영규정 제18조제2항

 -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 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다) 조정 중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4조]
 - 위원회에 조정 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위원회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이 경우 중지사유를 조정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조정청구 후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위원회운영규정 제21조제2항]

 -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심 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2조]

- 1)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사·조정이 요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조정의 완료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아. 조 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3조]

- 1) 위원회는 조정청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조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행한 행위의 취소·시정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 3)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은 입찰준비와 조정 청구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다.

자. 조정의 효력 [국가계약법 제31조 제2항, 위원회운영규정 제23조]

위원회의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완료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2 장 계약관리

제 1 절 계약서 해석 순위

① 해석의 우선순위에 관한 일반원칙

- 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추가로 수기나 타이핑한 문구가 첨부된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강행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사법(민법)의 일반원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이 민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적용이 배제된다.

② 해석의 우선순위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7조)

- 계약(문)서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 규정을 적용한다.
 - ① 계약서(갑·을지)
 - ②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 ③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④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⑤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 ⑥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⑦ 물품구매(제조) 입찰권유서
 - ⑧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 2 절 선금지급

① 목적

계약체결 후 향후 조건부 예정채무(계약금액)에 대하여 동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 전에 일정한 금액(선금)을 지급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계약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

② 적용 범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항부터 제12항]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금지급 요건>

- ① 물품 제조계약 및 용역계약
- ② 국가계약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선금지급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가. 선금지급 범위

- 선금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하여는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3항]

<선금 의무지급률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①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 ② 계약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 ③ 계약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선금의무지급률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4항]
 - 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 ②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 ③ 계약상대방이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해당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

나. 선금지급 계획서의 제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2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금지급 기준

1) 일반 원칙

-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범위 내에서 선금지급을 산정한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을 기준 한다.
-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5항]

2)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6항]
- 당해 연도 이행금액이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이행이 완료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질의회신, 회계 45101-1462, '92.12.28]

3)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7항]

<세출예산과 국고 채무부담행위 예산이 복합된 경우 계약>

계약금액은 세출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국고 채무부담행위 예산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선금지급은 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의무적 선금지급률을 적용해서 선금을 지급 (회계 45101-742, '96. 4. 12)

4) 연도 내 예산 집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

라. 선금 미지급

-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관 제34조 제8항]

※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란? [정부입찰·계약집행기관 제34조 제9항]

- ①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지급
- ②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 시 즉시 지급
- ③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마. 선금의 분할지급

- 선금을 지급한 후에 추가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예산확보 상황 및 계약이행의 성실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 지급한 선금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의 7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질의회신, 회계 45101-324, '95.3.11]

바. 선금의 선납고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9조]

- 조달청장은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선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선납하도록 고지할 수 있으며
 - 수요기관의 장은 이 금액을 선납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달청에 선납하여야 한다.
- ※ 조달청에서 선금을 지급(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하는 경우에는「수요물자 대지급 운영기준」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선금 선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급

4 채권확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가. 선금지급 시

1) 채권의 범위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채권 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입찰보증금과 같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수산업·임업·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는 지급확약서로 갈음한다.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 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 받음(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4조)

2) 보증(보험)금액

-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보증기간

-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선금 보증 기간>

-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 ※ 계약이행기간 60일 이내 선금지급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나. 선금 일부를 정산한 경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3항]

- 기납대가 지급에 따라 선금을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발생이자 만큼이 증액 또는 확보되어야 한다.

㉔ 지급확약서 징구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1항]

-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채권확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호의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는
-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 받기위하여
-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① 국가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④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 ⑤ 다음의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선금의 사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다음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 ②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 방식에 한함)의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선금배분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으로부터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선금의 정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산출>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액과 세출예산이 복합된 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금액 중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부분급(기성대가 지급)시의 선금정산 산정은 세출예산금액에 대한 동 부분금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질의회신, 회제 125-830, '81.9.14]

⑧ 반환청구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

가. 반환청구 대상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선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3)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제3항]

나. 이자청구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으로 한다.
-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지급일부터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 미지급액에 대한 공제

- 선금잔액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라. 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반환청구

- 계약금액의 감액에 따라 선금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되는 비율만큼 반환청구 하여야 한다.
- 다만, 지급된 선금이 최대 선금 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9 선금지급조건 명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체결 시에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9조]

제 3 절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목적

-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체결 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

나. 법적 성격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의무사항이다.
-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동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다. [질의회신, 회제45101-475, '93.5.31]

<조정신청에 대한 회계질의>

계약금액조정 신청 시 어떠한 상태의 신청을 동 조건에서 규정한 신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단순히 조정 요구 공문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 수 없다. [회계45107-51, '95. 1. 13]

다. 계약금액 조정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아래 조정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정방법>

- ①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②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의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 및 제70조의 5]
 - 단,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조정요건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다음 2가지 요건(경과 기간, 조정률)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이 날이「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이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조정요건>

- 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되고
- 나)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는 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 제조금액)에 대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100이상 증감될 때

-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상기조정요건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상기조정요건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2) 다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가) 당초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되고

나) 잔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100이상 증감된 때 조정한다.

3)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 4]

-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 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①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 ② 물품구매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 ③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 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조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 조정기준일은 상기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유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상기 ③항에 해당)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증빙서류에 포함될 내용>

- ①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 ②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 등 입찰시 또는 계약 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 ③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 ④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 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라. 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적용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 따라서 제조 개시 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 변동적용대가 및 조정률 산출 시 제외한다.
-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요인(폭풍·홍수·전쟁·화재·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마. 공정예정표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산출은 계약금액조정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범위를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공정 예정표를 계약체결 또는 제조개시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제출받아 승인 등 조치를 한다.

-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당초공정예정표를 기준하거나 그 책임 있는 기간만큼을 공정예정표에 반영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체결 시 품목조정률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액을 산출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

1) 등락률 산출

- 가)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률을 산출한다.
- 나) 등락률은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등락률 산출>

$$\text{등락률} = \frac{\text{물가변동당시 가격} - \text{입찰당시 가격}}{\text{입찰당시 가격}}$$

2) 등락폭 산출

- 가) 계약단가가 입찰당시 산정가격이하인 경우
 - 등락폭=계약단가×등락률
 - ※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 나) 물가변동당시 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 가격보다 높을 경우
 - 등락폭은 이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 다) 물가변동당시 가격이 입찰당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0”으로 한다.

<비목별 등락폭 산출>

- ① 물가변동 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계약단가인 경우
 - 등락폭=계약단가×등락률×수량
- ② 물가변동 당시가격> 계약단가> 입찰당시가격인 경우
 - 등락폭=(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수량
- ③ 계약단가> 물가변동 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인 경우
 - 등락폭=0

3) 품목조정률 산출

- 품목조정률은 상기 등락폭에 수량(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품목 또는 비목별 금액의 합계액을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품목조정률산출>

$$\text{품목조정률} = \frac{(\text{각 품목 또는 비목별 수량} \times \text{등락폭}) \text{의 합계액}}{\text{계약금액}}$$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4) 계약금액 증감액 산출

- 계약담당공무원은 품목조정률이 3/100이상으로 확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의 증감액을 산출한다.
- 계약금액의 증감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계약금액 증감액산출>

- 계약금액 증감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

-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다음 공식에서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다.

<선금지급시 계약금액 증가액 산출>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 선금급률= $\frac{\text{선금금액}}{\text{계약금액}}$

※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 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체결 시 지수조정률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된 때에는 이날 및 매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지수조정률이 3/100이상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감액을 산출한다.
-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 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②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③ 국가계약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 ④ 기타 ①호 내지 ③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1) 사전 준비사항

가) 비목군 분류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에 다음과 같이 품류별로 분류하여 비목군을 확정한다.
 - 노무비
 - 한국은행발표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세분류 지수가 아님)표상의 품류
 - 수입 물가지수표상의 품류

나) 제조공정 예정표 징구

-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 개시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제조공정 예정표를 사전 징구한다.

2) 지수조정률 산출

가) 각 비목군의 가중치 산출

- 조정기준일 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각 비목군별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다.

[계약체결시 분류한 비목군 기준]

- 비목군별 가중치 = 각 비목별 금액(재료+노무+경비) / 합계액
- 기타 비목군 가중치 = 1 - 각비목별 가중치의 합

나) 지수변동률 산출

- (1) 노무비 지수변동률 산출은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물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계약시점 가격의 평균치를 물가변동시점의 가격 평균치로 나누어 산출한다.

$$\text{○ 노무비 지수변동률} = \frac{\text{조정기준일당시의 노임단가 평균치}}{\text{계약체결시의 노임단가 평균치}}$$

- (2) 재료비 및 경비에 대한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도시가스 및 농림·수산물 비목군별 지수변동률 산출은 물가변동시점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를 계약시점의 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text{○ 각 비목군별 지수변동률} = \frac{\text{조정기준일의 각 비목군별 품류지수}}{\text{계약체결시의 각 비목군별 품류지수}}$$

- (3) 산재보험료 지수변동률은 당해업종에 해당하는 노동부고시 산재보험료율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text{○ 산재보험료 지수변동률} = \frac{\text{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text{계약체결시 산재보험료율}}$$

- (4) 기타 비목군에 대한 지수변동률 산출은 상기 5개 비목군(노무비,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도시가스 및 농림·수산물)별 가중치에 물가변동시점의 해당지수를 곱한 수치의 합을 계약시점의 해당지수를 곱한 수치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text{○ 기타 비목군 지수변동률} = \frac{(\text{조정기준일의 각비목군별 품류지수} \times \text{가중치}) \text{의 합}}{(\text{계약체결시의 각비목군별 품류지수} \times \text{가중치}) \text{의 합}}$$

다) 지수조정률 산출

- 지수조정률은 각 비목군별 지수변동률에 각 비목군의 해당 가중치를 곱한 수치를 모두 합하여 1을 뺀 것이 된다.

<지수조정률 산출>

- 지수조정률 = (각비목군별 지수변동율 × 해당 비목군별 가중치)의 합 - 1

3) 계약금액 증감액 산출

- 상기 지수조정률이 3/100이상 증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의 증감액을 산출한다.

<계약금액 증감액 산출>

- 계약금액의 증감액은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계약금액 증감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율

- 선금공제는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때와 같다.

아. 계약금액의 증액 시 처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약금액 증액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규격 및 물량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가. 대상

당초 계약된 물품의 규격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로서 당초계약 금액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또는 비율을 정한 것은 없으나 그 성질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을 말한다.

<설계변경 대상>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 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가리킵니다.
- 따라서 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고 계약금액도 3배 이상으로 증액되었다면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회제 125- 1216, '84.4.24]

나. 적용기준

- 물품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규격 및 수량변경에 따른 단가적용과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며
-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준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

다. 적용단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 1)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하여야 할 단가는 아래와 같다.

<규격 및 물량변경시 적용단가>

- 1) 계약단가(계약체결 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단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단가 적용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내용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3) 정부에서 규격 및 물량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시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다만, 계약당시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격 및 물량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계약금액의 증감액 산출 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재료비 증가에 따른 제경비 증액분은 당초 계약서상의 산정방식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회신, 회제 45101-431, '96.3.11]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가. 대상

- 물품의 규격 또는 수량이 변경되는 것 이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납품장소 변경 등)의 계약내용(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계약기간)·운반거리(납품장소)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국가계약규칙에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제66조 제2항]
-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을 기준 한다.

다. 발주기관의 우월적 거래관행 개선

- 1) 일방적 납품기한 연기억제 및 비용보상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 사정에 의하여 납품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계약목적물의 제조가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납품연기에 따른 보관·관리비등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범위 안에서 수요기관과 예산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금액의 부당한 감액·환수금지

-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요구할 수 없다.
 - ① 개산계약을 체결하여 정산하는 경우
 - ②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여 사후원가 검토하는 경우
 - ③ 계약상대자가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하여 고가계약 되었음이 확인되어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 ④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경우
 - ⑤ 설계변경(규격·물량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경우
 - ⑥ 기타 계약내용(납품장소 또는 납품기한 등)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경우

라. 회계질의 회신 발취

-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은 공사의 경우이나 이는 물품계약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발취하였음.
 - ① 실비산정기준의 간접노무비의 범위
[회계 45107 1528, '95.8.22]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실비산정기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 이 경우 간접노무비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9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현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2항)에 의거 직접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② 설계공기 산정 착오시 공기연장 가능 여부

[회제 2210-2537, '86.6.19]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공사기간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③ 고가로 설계되어 계약된 경우 환수조치 가능 여부

[회제 125-421, '89.2.17]

- 정부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제 4 절 검사·검수 및 납품

Ⅰ 검사·검수 개요

가. 관련 용어 정의

- 1)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구매규격·시방서) 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2)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성적은 검사에 활용된다.
- 3) “검수”라 함은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4)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계약건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로 지정한 임직원은 검사공무원으로 본다.
- 5)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샘플링검사방식)에 따라 표본(시료)을 채취하여 그 표본(시료)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전문기관검사”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8) “점검공무원”이란 제8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나. 검사공무원²⁾의 범위

- 조달물자에 대한 납품검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제14조]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 ② 계약담당공무원
 - ③ 검사사무를 위임받은 당해 소속공무원
 - ④ 지정된 전문검사기관 및 동 기관이 검사담당자로 임명한 임직원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

2)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감독공무원이 있는데, 이는 제조나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를 지정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는데, 검사와 다른 점은 감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검사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이다.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검사)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문 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및 제54조 제1항 제2호]

다. 검사 기준

- 검사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① 당해물품의 설치·사용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시·군 조례 등
 - ② 계약조건, 구매규격서(사양서), 설치시방서 등 계약문서상의 요구내용
 - ③ 2단계입찰 또는 규격·가격입찰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제안서)
 - ④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계약된 경우에는 품질 등의 표시서
 - ⑤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합의된 조건 및 규격 등의 내용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

라. 검사 요령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 ①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 ②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6조의 2,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표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법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위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 면제 대상>

- ①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표시품)
-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ISO인증품)
- ③ 조달사업법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물품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기준 제2장]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으로서 조달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총액 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①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표시품)으로 인증유효기간내의 물품
 -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ISO인증품)의 경우에는
 -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생산설비, 6시그마혁신, 녹색경영 분에 한함)의 수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 ③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 납품검사 면제신청 제외 물품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기준 제4조]
상기 면제신청 대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동 업무처리기준 별표 1에 해당되는 품명은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서 제외한다.

- 납품검사 면제신청자의 결격 사유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기준 제15조]
상기 면제신청 대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 면제 신청(신청)에서 제외한다.
 - ① 최근 3년 간 5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물품. 단, 당해 기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함³⁾.
 - ② 최근 3년 이내에 조달청의 납품검사,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상 통보받은 업체
 - ③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 ④ 최근 3년 이내에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제2013-14호)’ 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업체

② 검사의 종류 및 절차

가. 검사의 종류 [품질관리특수조건 제7조]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위한 검사는 ① 조달청 검사, ② 전문기관 검사, ③ 수요기관검사로 구분한다.

나. 검사 종류별 검사·검수 요청 절차

1) 조달청 검사 [품질관리특수조건 제8조]

- 조달청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조달품질원 또는 지방조달청에 검사를 요청한다.
-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 조달청 검사는「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 전문기관 검사[품질관리특수조건 제9조]

- 전문기관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한다.

3) (예시) 만약, A업체가 최근 3년 기준으로 7건의 납품실적이 있으나, 그 납품실적이 최근 2년에만 있거나 최근 3년 중 두 번째 연도에는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신청할 수 없음

-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3) 수요기관 검사

- 수요기관 검사는 아래 검사 및 검수절차에 따른다.

다. 검사 및 검수 절차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1조]

- 1)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2)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 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 요청한다.
 -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 3) 수 개의 수요기관에 분할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납품요구)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검사담당기관에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담당기관의 요구에 따라 각 개별기관의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검사기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9조]

- 계약상대자로 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결과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위 검사기간을 계산한다.

마. 납품일자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1조 제4항]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조달물자에 대하여 납품일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날로 한다.
 - 가)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 내 검사를 요청한 경우
 - ① 납품기한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 ② 납품기한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 ③ 납품기한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 ④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 나)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 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검수를 요청한날
 - 다) 수개 기관에 분할납품조건으로 계약 또는 납품 요구하였을 때에 검사기관에 일괄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검수를 요청한 날

③ 검사조서의 작성 [국가계약법 제14조 제2항]

- 검사공무원은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제14조 제2항 단서, 국가계약령 제56조]
 - ①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계약
 - ②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

④ 시운전 조건부 납품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가. 시운전 검사

- 시운전 조건부계약의 검사는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함께 실시한다.

-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나. 납품기한과 시운전 기간

-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 기간은 지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명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 납품과 납품영수증 발행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 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물품납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행하되 시운전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물품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 발행한다.

라. 시운전

-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물품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 － 다만,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성능이행 보증금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제2항(하자보증금면제 및 지급각서제출) 및 제4항(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시운전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성능이행 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성능이행 보증금 귀속 사유>

- ①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 한 경우
- ②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 ③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 ④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 5 절 대가 지급

① 납품서류 확인 [구매업무처리규정 제62조 및 제64조]

-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5통(선고지 품목은 2통) 및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 요청한다.

<납품서 확인사항>

- ①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재사항
- ② 검사관의 인감(조달청 검사에 한한다)
- ③ 계약물품의 규격 및 납품수량
- ④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 ⑤ 원산지에 관한 사항
- ⑥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적립 사항
- ⑦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 사항
- ⑧ 유보액 및 유보율에 관한 사항
-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계약담당과장은 동 업무를 조달등록팀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등록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가지급 의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2조 구매업무처리규정 제64조 }

가. 종결서류 작성

- 1)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결서류를 작성한다.
- 2) 조달등록팀장(계약담당과장)은 상기 종결서류를 작성한 때에는 지급결의서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한다.

나. 납품대가 지급기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2조의2 〕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에게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대금지급을 청구한다.
- 납품대가는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 지급시 대금지급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 단,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상기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조달청에서는 위 대가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 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다. 기성(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기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제4항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4항 〕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다음의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기납 대가지급 기한>

- 검사완료 전에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검사완료 전 청구를 허용한 때) :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 검사완료 후에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 대가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라. 대가 청구내용이 부당한 경우 처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6항 〕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대가지급 기간(5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대가지급 대상액**1) 납품대가**

- 가)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가는 계약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납품대가에서 공제할 금액>

- ①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 ② 선금잔액
- ③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 ④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또는 기타 설치·시운전 미필 등 계약금액 일부를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하자보수보증금(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나) 위 공제 금액 중 사후원가검토조건에 따른 계약금액 지급유보액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입찰보증금 납부)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갈음 할 수 있다.

다)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제6조]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하며, 성능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을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 보증기간은 납품검사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로 하며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을 수요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납품대가 전액을 지급한다.

참고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납품영수증을 수요기관에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성(기납)대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대가 청구를 받아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 정산액 만큼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기성대가에서 공제할 금액>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

③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지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 부담 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 개시 후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대가지급 지연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가지급 지연 이자>

$$\text{이자} = \text{미지급금액} \times \text{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 \times \text{지연일수}$$

④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3,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원가 계산하는 물품제조 및 용역에 해당)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제조 및 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나. 입찰공고시 안내

-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①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②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 ③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②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 ④ 기성 및 계약대가 지급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다. 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 ②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당해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입찰공고에 고지한 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절차에 따라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한다.
 - 이 경우 현장인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 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 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 다만, 당해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①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선금의 사용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 6 절 지체상금[국가계약법 제26조]

① 의의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당초 계약서에 정한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은 지체상금의 성격을 당해지체에 대한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약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귀책사유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⁴⁾의 입장이다.
-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부과 대상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이행)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계약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지체일수 산정

가. 지체일수 산정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포함)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에 있어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대법원, 99다57126, 2002.1.25. 등

-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
-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입회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6항]

나. 조달청 지체일수 산정방법 [물품계약특수조건 제10조]

- 1)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에 정한 대로 검사를 요청한 경우
 - ① 납품기한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납품기한내 검사요청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 ③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 2)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 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또는 수개 기관에 분할납품조건으로 중앙기관에 일괄 검사한 경우
 - ①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 후 검수요청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검수요청 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 ③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 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지체일수 산정 예>

구 분	상기 “1)” 항 해당	상기 “2)”, “3)”항 해당
지체일수 산정	(1) 납품기한이 10일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1) 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 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 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 요청한 경우 : 5일 지체 (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2)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3)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3)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 요청하여 16일에 검사 완료하고 20일에 검수 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하고, 15일에 검사 불합격하여 시정 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10일 지체	(4)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하고, 15일에 검사 불합격하여 시정 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 요청한 경우: 12일 지체

④ 지체상금 면제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제1항 다목]

다음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 만큼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폭풍, 홍수·전쟁·화재·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4)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 5) 계약상대자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한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 6)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 7)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는 뒷면 제9항 회계질의 회신 내용 참조

⑤ 지체상금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 계약의 성질별 지체상금률은 다음과 같다.

<지체상금률>

- 물품의 제조 및 구매(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포함) : 1000분의 0.75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 1000분의 1.25

6] 징수대상액 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4조]

가. 지체상금 산출기준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 계속계약의 경우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나. 적용계약금액

- 위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품으로서 인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분할납품이 가능한 경우>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3항]

-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한 경우
- ② 계약상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

다. 징수 대상액

<징수 대상액 산출>

$$\text{징수대상액} = (\text{계약금액} - \text{기납금액}) \times (\text{지체일수} - \text{면제일수}) \times \text{지체상금률}$$

7] 징수방법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5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1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나. 징수된 지체상금은 수요기관에 전액 반환한다. [조달사업령 제5조]

⑧ 지체상금 과다시 처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5항 및 제6항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할 때 처리>

- ① 계약당사간에 계약목적물이 국가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③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계약 미이행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 유지

제 7 절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의의

- 계약의 해제라 함은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 계약의 해지라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일정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법적 행위를 의미한다.

② 계약의 해제 및 해지대상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6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미이행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한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계약해제·해지사유>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6조>

- ①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③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 ④ 장기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⑥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 ⑦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해지[물품계약일반조건 제27조]

- ① 위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③ 계약해제 또는 해지 시 조치사항

가. 계약상대자에 대한 통지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내용증명 등) 한다.

나. 대가지급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항]

-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 선금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우선 공제하여야 하며
- 지체상금 징수대상인 경우에는 이 지체상금을 상제한 후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회신, 회제125-3671, '86.9.29]

다. 선금반환청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 1) 선금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한다.
- 3) 선금반환청구에 대하여는 본장 제2절 제8항을 참조한다.

라.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반환 [물품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

- 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조치 시킨다.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제8장 제2절 제8항 참조)
- 2)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즉시 반환 조치한다.

마. 부정당업자 제재

국가계약법 제2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제8호 가목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8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재기간 : 계약불이행 시 6개월

※ 기타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청문절차, 제재기간 결정 등은 뒤편 제9절 부정당업자 제재 편을 참고

바.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제·해지 시 비용 지급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항]

○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 보증금도 동시에 반환)

- ①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선금지급액 공제)
- ②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제 8 절 부정당업자 제재

1] 의의

- 부정당업자의 제재란 정부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제1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정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고,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나, 정부계약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와 관한 분쟁이다.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처분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절차 등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또한, 판례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성을 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합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광주지법 2003구합278] 대법원에서도, “침해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7두13791 판결]

②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칙(조달청 훈령)
- 행정절차법(청문절차 관련)

③ 제재대상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 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제재받는 자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제재한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 시킨 조합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대하여도 당해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제재 및 제재 효력 적용 시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부정당사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또한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⑥ 제재기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및 제3항]

가. 세부제재기준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사유별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2. 개별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2년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년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8개월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6개월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4개월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개월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년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1년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8개월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3개월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년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1년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8개월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개월

3.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1년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6개월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3개월
4.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낙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6개월
5.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1년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8개월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8개월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6개월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개월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4개월
6.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2년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7.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6개월
8.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6개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개월
9. 영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자)	
가.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2년
나.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1년 6개월
다.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1년
10. 영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개월
11.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개월
12. 영 제76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3개월
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6개월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3개월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개월
다.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3개월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로서 해당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1개월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3개월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1개월
14. 영 제76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6개월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3개월
15. 영 제76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3개월
16. 영 제76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8개월
17. 영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1년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6개월
18. 영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19. 영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2년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나. 제한의 가중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 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 ① 해당 자격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제한경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 ① 해당 자격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경감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7] 과징금 부과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동 시행령 제76조의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 부과 대상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 ② 국내·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 ③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 ④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 ⑤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는 상기 사유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독점 규제나 하도급 관련 법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③ 경쟁 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협정하였거나 담합한 자
 - ④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또는 변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 제출한 자
 - 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⑥ 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⑦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방해한 자
 - ⑧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 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⑩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사전에 누출 금지로 지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세부 부과기준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상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 미체결 시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 미체결 시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상기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국가계약규칙 제77조의2 별표3]

<개정 2021. 7. 6.>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10%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5%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4%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3%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2%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10%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5%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1.5%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10%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5%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1.5%
3.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5%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3%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1.5%
4.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5%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4%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4%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3%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2%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2%
5. 영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10%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7.5%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5%
6.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3%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1.5%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0.5%
다.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1.5%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0.5%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1.5%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0.5%
7. 영 제76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5%
8. 영 제76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4%
9. 영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신체상의 피해를 가한 자	5%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자	3%
10. 영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1.5%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이 경우	0.5%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1. 영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	10%

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	--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의 경우 연평균 계약금액에 위 표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위 표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
5. 비고 제4호의 연평균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총 개월 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1개월이 되지 않는 잔여일수는 총 개월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6.>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별표 4)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30%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5%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12%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9%

마. 부실별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6%
바. 부실별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3%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30%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15%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12%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4.5%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30%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15%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12%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4.5%
3.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15%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9%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또는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4.5%
4.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30%
나. 담합을 주도한 자	15%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낙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9%

5.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자	15%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12%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12%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9%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6%
6.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30%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5%
7.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기준에 의함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9%
8.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30%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5%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9%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4.5%
9. 영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30%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22.5%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15%
10. 영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15%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11.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12. 영 제76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4.5%
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9%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4.5%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5%
다.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4.5%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로서 해당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1.5%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4.5%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1.5%
14. 영 제76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9%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9%
15. 영 제76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4.5%
16. 영 제76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12%

17. 영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15%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9%
18. 영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4.5%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1.5%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9. 영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30%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의 경우 연평균 계약금액에 위 표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위 표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
5. 비고란 제4호의 연평균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총 개월 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1개월이 되지 않는 잔여일수는 총 개월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설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3]

- 1)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둔다.
- 2)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5]
 - 법 제27조의3에 따라 구성되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①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다만, 조달청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
 - ② 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이내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사람
 - 다) 정부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소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라. 과징금 부과 세부 절차

1) 심의 요청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2항, 동 시행령 제76조의8]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②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 ③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 심의요청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9]

-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심의·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마. 과징금 부과 및 납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3]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받으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4]

- 부정당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 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③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⑧ 부정당업자 제재결정

가. 제재 전 조치사항

1) 이행최고 및 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 계약담당과장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청문실시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치한다.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 ① 2회 이상의 이행최고 공문 발송(내용증명 등 특수우편물 이용)
 - 필요한 경우에는 청문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 ② 계약해제·해지
- ③ 입찰 또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2) 청문실시 또는 의견 진술 청취 [행정절차법]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문절차 [행정절차법 제21조]

가) 청문통지

부정당업자제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양식에 의거 청문 통지를 하여야 하며, 청문 주재자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1) 청문통지는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내용증명 등 특수우편물 이용)으로 청문의 사유(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및 법적근거)·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한다.

(앞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처 분 의 원 인 된 사 실			
처 분 하 고 자 하 는 내 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청문 실시	기관명		담당부서명
	주 소	전화번호 :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시간)	
	장 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기관의 장)

인

(뒷면)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청문통지서 수취인의 주소〉

- 청문통지서는 입찰서(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되
- 주소·불명으로 회송된 경우에는 다음 주소를 확인하여 그 주소로 재발송하고
 - ① 법인 : 법인등기부상 주소
 - ② 개인 : 주민등록표상 주소
- 출타등 사유로 회송된 경우에는 재 우송한다.

나) 의견청취

청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 진술서 확인·날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4) 계약심사협의회 심사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제3호]

- 소관국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결정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협의회(위원장 조달청 차장)에 심사 요청한다.
- 심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상정 하루 전에 안건을 위원정수에 3부를 추가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단, 약식안건에 대하여는 회의를 생략하고 내부위원의 서명으로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심사의뢰시 안건에 명시할 사항〉

1. 안건명
2. 의결주문
3. 제안이유
4. 주요골자
5. 주요토의사항
6.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 약식안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계약체결 또는 이행 불이행), 제14호(적격심사서류 등 미제출 또는 심사포기자)에 해당하는 안건

나. 제재결정

- 협의회 간사는 협의회에서의 심사결과를 처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담당부서는 심사결과와 업무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제재사실에 대한 관계기관 통지 및 공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10항]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①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③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④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 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27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① 업체(상호)명.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등) 및 사업자등록번호
- ② 제9항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
조 달 청

우편번호, 주소 : (전화번호) 담당자 :

문서번호			
발신일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부 정 당 업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주 소		
	대 표 자		주민 등록번호
영 업 종 목 (세 부 품 목)	주 소		
	영 업 종 목		면허·등록번호
제 재 내 용	제 재 근 거		
	해 약 연 월 일		
	제 재 연 월 일		만 료 연 월 일
	제 재 기 간	- - - - -	
(제재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			
(기타 참고사항)			
조 달 청 장			

10 제재 효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1항]

가. 타 기관 적용범위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나. 부정당업자와의 계약

-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년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0항]

- 2)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체가 상호 등을 변경하여도 면허(등록)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재효력은 제재기간 동안 승계된다.

11 부정당업자 관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계약규칙 제77조제4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

<입찰참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여부 확인사항>

- ① 업체명(상호)
- ② 입찰참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③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 ④ 관계법령상의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 ⑤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과 여부

- 공사 또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자는 물품구매 계약시도 동 제재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가. 의의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조세 포탈 등의 범칙행위자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한 자에게만 국가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국가계약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고, 제재기간도 사유에 따라 1개월에서 2년까지 차이가 크게 나지만,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배제는 동 사유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조치 없이 획일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②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③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 상기 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라. 입찰참가 제한받는 자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조합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대하여도 당해 사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마. 구매추진 시 확인 절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 계약담당공무원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상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보 증 금

제 1 절 입찰보증금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① 의의

- 입찰보증금은 본래 입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조치한다.
- 하나, 실질적으로 입찰 보증금은 계약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보다는 개별 입찰 건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지급각서 포함)로서 입찰참가 신청에 갈음한다는 데서 제도의 의의⁵⁾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단서]

② 납부대상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③ 납부면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가. 면제 대상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국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관련 계약법규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매 입찰시마다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하면 입찰자나 계약담당공무원 모두에게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납부로서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하게 하여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 경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5)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6) 기타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
-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 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6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조달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금액에 관계없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99. 12. 24부터시행) [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2항 단서]

- ①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 ②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③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지급확약서 징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4항, 업무처리규정 제26조 제2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에 따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 전자입찰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입찰서를 송신하면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제출되므로 별도로 접수받지 않는다.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4조 제3항]

4) 납부금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가. 납부 기준금액

- 입찰보증금은 당해 입찰자가 입찰하는 금액의 5/100 이상이어야 한다.
-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100 이상이어야 한다.

<입찰보증금의 산출>

- 총액계약 = 입찰금액 × 5/100 이상
- 단가계약 = 입찰단가 ×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5/100 이상
- 희망수량입찰 = 입찰단가 × 희망입찰수량 × 5/100 이상
- 장기계속계약 = 총 제조입찰금액 × 5/100 이상
(계속비계약 포함)

나. 납부금액의 증액 [구매업무처리규정 제26조 제3항]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다. 입찰집행 시 확인사항

입찰보증금에 따라 투찰가능금액 범위가 결정되므로 입찰집행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20을 곱한 금액과 투찰금액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질의 회신>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라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 하였다면, 입찰보증금 납부의 미달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회제 48107-668. '93. 7. 9)

⑤ 납부 절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가. 납부 형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의한 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5) 제1호의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나. 공동계약시 보증금 납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

- 공동계약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다. 보증금 납부 형태별 업무처리 시 주의사항

1)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3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2) 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4조]

- 보증금을 국가계약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 보증금을 국채 중 등록국채로 납부할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위에 따라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신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

- 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 등”이라 한다)로 납부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 보증보험증권 등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보증인의 명의를 대한민국정부(발주기관)일 것
 -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입찰보증서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4) 정기에금증서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6조]

- 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정기에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에금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 질권설정동의서의 제출, 등록 국채의 보관, 질권 설정에 관한 규정은 상기 2) 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관련 사항을 준용한다.

5)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7조]

- 보증금을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 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미리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점에 납입하여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와 함께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국가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각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유가증권취급점은 정부보관 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와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 권면액, 기호, 번호, 장수등과 상장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부보관 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의 비고란에 해당 주식의 소유자(기명식 주식의 경우에는 최후의 양수인)의 성명을 주식별로 기재하고 해당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8조]
 -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라. 보증기간 중의 의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0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 중 당해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상법 제652조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 상법 제657조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상법 제680조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⑥ 입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4조]

가. 의의

- 전자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보증금 등 제반 보증금을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입찰집행 절차가 상당히 신속하고 간편하게 되었다.
- 전자조달법 제5조에 따라 계약사무(입찰보증금 수납 포함)를 처리할 때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법령 포함)은 수기 납부를 전제로 하여 모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 표준입찰공고문 역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기 납부를 상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관련 법령 개정을 물론 표준입찰공고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전자적 납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 전자 납부 대상

-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보증기관 중 조달청과 협의된 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다. 납부 절차

-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보증기관 중 조달청과 협의된 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지급확약서(각서)는 전자입찰로 집행 시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제출되므로 별도로 접수받지 않는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증서 수납에 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입찰일이 변경된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낙찰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낙찰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당해 입찰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증서 수납에 협약” 제7조에 따라 보증사 또는 입찰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송신한 입찰보증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문서로 사전에 통보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전자보증서는 채권자명을 통해 보증의 대상인 입찰을 자동으로 확인해 전송되므로 입찰공고 시 채권자명을 각 기관장명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7 국고귀속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

가. 대상

- 1)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 소정의 기한 :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제외 [물품입찰유의서 제17조]
- 2) 2인 이상을 수급인으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그중 1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수급인 모두의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시킨다. [질의회신, 회계 1210-3279, '83.11.12]
 -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는 당해 제재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한다.
- 3) 낙찰자가 자격미달 등으로 원인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낙찰도 무효가 되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

<회계질의회신>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동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입찰자체가 무효이므로
- 당해낙찰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할 사유가 없다.

나. 조치사항

- 1)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의 경우에도 같다.

가)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과 관계수입 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한다.

나) 상장유가증권으로 납부한 경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권을 정부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토록 한다.
- 등록국채에 대하여는 유가증권 취급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한다.

다) 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

- 관계수입징수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한다.

라) 정기에금증서 등인 경우

- 관계수입징수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당해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하도록 한다.

마) 보증금의 면제 또는 일부 면제한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시 청구한 지급확약문서를 갖추어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세입징수관은 당해 낙찰자로 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다.

- 2) 계약상대자 등으로 부터 징수된 입찰보증금은 당해 수요기관 수입으로 한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5조]
- 3)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5조]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그 낙찰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⑧ 입찰보증금의 반환 및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 입찰보증금은 해당 입찰이 끝나,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입찰자의 청구에 따라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제3항]
-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 신청서에 의하여 대체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제 2 절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2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2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3조 내지 제64조
- 물품계약일반조건 제8조 및 제9조

1) 의의

-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계약이행을 계약자로부터 보증받기 위함이며 계약불이행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납부시키는 물적 담보로서
- 현행 계약보증금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계약불이행이 발생되면 약정한 계약보증금액을 손해에 대한 별도의 입증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국고에 귀속시킨다. 라고 규정하고, 불이행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이외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은 위약벌이라기 보다는 손해배상의 예정⁶⁾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2000. 12.12. 선고 99다4634 판결).
- 정부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는 계약보증금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금이다. [회제 125-373, '90.2.15]

6)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98조제1항).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목적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은 실제로 곤란하며 또한 이에 따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게 되므로 이런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고 다툼을 예방하여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하고, 또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제2항), 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당사자의 경솔·무경험 등을 이용하는 폭리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104조).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손해배상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에 따른 배상액을 채권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나, '위약벌'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 배상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납부금액

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체결 전에 납부 받아야 할 계약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약보증금산출>		
○ 계약보증금 = A × B		
구 분	적용금액(A)	계약보증금율(B)
총액계약 (계속비 계약)	계약금액	10 / 100
장기제조계속계약	총제조부기금액	
단가계약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 × 계약단가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제조부기금액의 10/10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서 일괄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계속비계약은 총 제조금액이 계약금액이므로 당연히 총액계약과 같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한다)

나. 용역 계약이행보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

○ 용역계약의 경우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100이상 납부하는 방법
- ②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 공사(용역)이행보증서

－ 해당 공사(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40/100 (예정가격의 70/10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50/10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 따라서, 용역계약의 경우는 물품 구매(제조)계약과 같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이행보증을 하도록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만일,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강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납부형태 [물품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4항]

계약보증금의 납부형태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형태와 같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계약보증금의 경우 입찰보증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0분의 10이상이라고 하여 100분 20이상 또는 100분의 50이상 등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납부하는 자가 100분의 10이상을 충족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임

나.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3호 나목]

<계약보증서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4] 납부면제

가. 면제대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 6)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7)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8)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청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 및 제37조 제4항 물품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2항 〕

- 1)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로 하여금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2)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에서 삭제된 경우로서 계약내용의 일부가 수정되었을 때에는 수정된 내용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함. [질의회신, 회제 125-2191, '90.9.11]

⑤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물품입찰유의서 제19조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 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보증금 변동

가. 보증기간 변경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1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 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①당초의 보증기한 내에 ②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③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한 보증보험증권 등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②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나. 조치사항

1) 국고귀속조치

- 계약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절차는 입찰보증금의 경우와 같다. [국가계약규칙 제64조제1항]
-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51조 제3항]

2) 계약해제·해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계약보증금의 수요기관 반환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5조]

- 계약보증금을 징수한 경우는 당해 수요기관에 반환 조치한다.

4)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할 때 처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행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 추가 납부하는 보증금에 대한 납부형태, 면제(지급각서), 납부 절차 등은 기존 보증금을 준용한다.

다. 국고귀속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

<국고 귀속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

- 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계약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된다. [회제 2210-2191, '86.5.19]
- ②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계약금액이 감액되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감액할 수 없다. [회계1210-364, '79.2.26]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계약보증금 추징이나 국고귀속문제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회계 1210-1941, '79.12.1]
- ④ 도서구입계약 체결당시에는 납품가능한 도서목록으로 확인된 도서였으나 이후 계약이행과정에서 일부도서목록이 관계당국에 의하여 판매금지 되었거나 폐간 품절되어 납품이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때에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회계 1210-2276, '77.10.4]
- ⑤ 계약수행을 과다 납품 지시한 경우 [회계 125-348, '82.2.1]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나,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예상량의 증감으로 수량조절을 할 경우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의거 계약된 수량의 1할 범위 내에서 증감조절이 가능하다고 보나,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계약 수량을 훨씬 초과한 과다한 추가 납품 지시서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납품 불이행시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⑥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하여 입찰자체가 무효인 경우
 - ㉠ 입찰자체가 무효이므로 당해 낙찰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 또한 국고귀속 할 사유가 없다고 봄. [회계 125-990, '81.5.16]
 - ㉡ 계약을 체결한 후에 동계약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하였다면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는 해당되지 않을 것임.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함. [회계 45107-509, '95.4.14]

9] 부정당업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2항)

가. 의의

종전에는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으면 일정기간(1개월~2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데 그쳤으나, 조달청은 불성실 조달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11.4.1일부터 부정당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였다.

나. 대상

-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
-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다. 추가 납부액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 납부액>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②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20 ③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5 ④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내용을 구매결의 및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3 절 하자보수보증금

1] 의의

- 국가계약법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일정기간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로서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 따라서 보증의 성격상 물품(용역) 구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조항 설정은 다소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물품 중 현장설치를 해야 하는 등 물품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일정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계약자의 하자보증의무를 확보하고 있다.

<물품구매 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규정 준용여부>

- ①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
- ② 다만, 물품의 성질상 보다 특수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질의회신, 회계 1210.3-253, '91.1.30

2] 대상 [물품의 하자보수보증제도 도입, '96.2.1 (조달청)]

- 물품은 시설공사와는 달리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 책임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 어렵고, 설사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라도 용도와 성질이 다양한 수많은 종류의 물품에 대해 각각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규격서나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일정기간 하자보수보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수용기관에서 하자보수보증 조건을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계약 특수조건(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명시)으로 반영하여 운영한다.

[하자보수보증 대상 물품명(예시)]

- ① 인명과 관련되는 물품
 - 의료장비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주차설비
 - 전동차 등
- ② 시스템장비
 - 수처리장비
 - 보일러, 소각로, 냉난방기, 송풍기
 - 선박
 - 역무자동화설비
 - 변전설비
 - 신호설비 등

③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의2]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정한 기간과 수요기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 상기 별표 1은 '14.11.4 부로 삭제되었고, 동 표와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와 관련된 기간임.
-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 결정은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수요기관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하자기간이 다른 복수물품은 품명별 하자기간)까지이다.
-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 제1항]
-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 제2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의2 제2항]

나. 하자보수의무

- 1) 하자보수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경우(공사의 경우)는 계약자의 하자보수 책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① 기기부품이 동 부품의 품질보증 유효기간을 경과한 후 정상적 마모에 의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시설운영에 관한 유지 보수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회신, 회계 45101-1323, '96. 6. 17]
 - ② 시공 상의 잘못이 아닌 발주자의 관리소홀 등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하자보수책임이 없다.[질의회신, 회계 45107-434, '95.3.30]
 -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목적물의 일상 관리를 위한 점검보수가 필요한 경우 당해 점검보수는 계약서상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책임임. [질의회신, 회계 125-4190, '86.11.20]
- 2)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도 계약 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년도 차수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하고 매년도 계약 체결된 계약 목적물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한 전체계약이 완료된 후에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질의회신, 회계 45101-10 42, '93.9.25]
- 3)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 제3항]
- 4)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 제4항]

-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 제5항]
- 6)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자는 제외한다.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제7항]
- 7)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제6항]

4) 하자보증금 납부

가. 하자보증금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제1항,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제1항]

물품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나. 하자보증금 납부 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 하자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하자보증금 면제대상>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제8항 단서]

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 구매업무처리 규정 제59조제1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금 납부 형태

입찰보증금 납부 형태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하자보수보증금은 납품검사 완료일(시운전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토록 조치하며, 늦어도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최종납품대가 지급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치 않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미지급대가에서 공제·예치할 수 있다. [질의회신, 회계 2210-4672, '86.12.27]
-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회신, 회계 45107-449, '96.3.11]

바. 하자보수보증금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을 준용한다.

㉔ 하자보수금액의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국가계약법 제18조 제3항,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63조]

- 하자보수보증금도 계약보증금과 같이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고에 귀속됨은 물론이나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잔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비용이 과다 소요될시 손해배상 가능여부>

하자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해석되므로 실제의 손해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하자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케 한 이상 동 초과액에 대하여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감오일 142.03-4000, '64. 8. 5]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 다만,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개별 납품요구건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제4항]
-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제5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에 관한 절차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⑥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가. 하자보수보증금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되고 보증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제5항]
- 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은 정부 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거 5년으로 보아야 한다. [질의회신, 회제 125 -3249, '86.8.22]

7] 부정당업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추가 납부(업무처리규정 제59조 제2항)

가. 의의

종전에는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으면 일정기간(1개월~2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데 그쳤으나, 조달청은 불성실 조달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11.4.1일부터 부정당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였다.

나. 대상

-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
-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다. 추가 납부액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액>

- ①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 ②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7
- ③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9
- ④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하자보수보증금 추가납부 내용을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론에서 실무까지 알기 쉽게 풀이한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

집필진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수팀

[교수]

김공진, 김연일, 김영민, 문수호, 박수천,
윤경수, 이인호, 정진성, 조용만, 최도환, 최찬모

[직원]

강소연, 강승호, 김병기, 김용현, 곽동호, 성혁,
송병태, 황상원

편 집 윤경수, 권유민

초 판 2020년 8월

개정판 2025년 3월